

고등군사법원
육·해·공군 군사법원

2018 군사법원 연감

[2018. 1. ~ 2018. 12.]



머리말

2017년 최초 발간 이후 매년 발간하는 군사법원 연감은 지난 1년간의 군사법원 운영내역과 통계자료를 정리·수록하여 군사법원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법원 연감은 2018년 연말을 기준으로 고등군사법원 및 각 군 군사법원의 인원 현황, 군사법행정의 운영 내역, 각종 통계자료 및 군사법원 주요 판례 등을 수록한 군사법원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특히 고등군사법원은 각 군 군사법원의 군형사소송 절차를 국방부 차원에서 통일하여 각 군 군사법원 업무의 일관성을 기함으로써 군사법원 재판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사법원 재판사무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여 11월부터 시행하였고,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군사법원이 참여하여 ‘명예훼손 등 범죄군’ 양형기준 설정에 순정 군형사범인 ‘상관명예훼손 등 범죄군’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군사법원이 2018년 한 해 동안 국민 및 장병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군사법원 연감을 통하여 상세히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법원 연감은 책자 이외에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에 전자문서(한글파일, PDF파일) 형태로 게시하여 군사법원 관계자를 비롯한 모든 이용자들이 군사법원 연감을 보다 쉽게 접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대 고등군사법원장
준장 이 동 호
(2019. 1. 1. ~ 현재)



우리 군사법원은 2017년 7월부터 심판관제도의 예외적 운영, 관할관 감경 범위의 제한 등 개선된 새로운 제도를 시행중에 있고 재판의 독립성 측면에서 한층 진일보하였으나, 우리 군이 강도 높게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과제 중에 다시금 ‘군사법개혁’이 포함되어 군사법원은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사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통해 부여된 권한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의롭고 올바르게 재판하고, 재판의 결과와 절차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일반 국민 및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군사법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 군사법원 구성원들 모두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군내 최후의 인권보장기관으로서 모든 장병들의 고유한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군기질서 확립이라는 군사법기관의 목적에 맞도록 엄정하게 군사법원을 운영함으로써 ‘정의롭고, 도덕적이며, 전문적인’ 군사법원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군사법원을 지지해 주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님께 감사드리고, 국민과 장병들에게 신뢰받는 군사법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각 군 군사법원장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유용한 군사법원 연감이 되도록 자료수집, 발간 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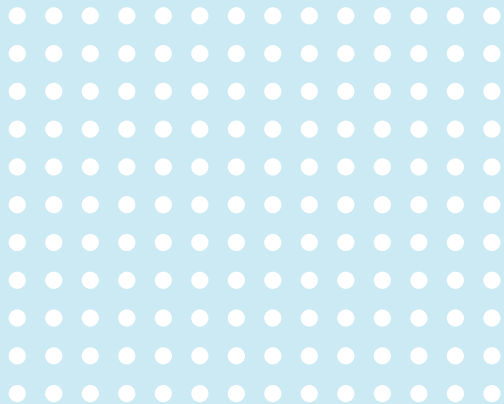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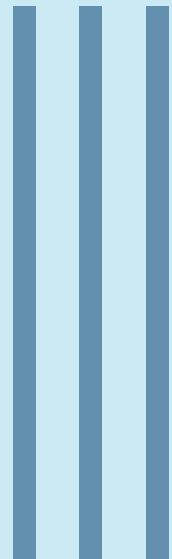
고등군사법원장 육군 준장 이 동 호

목 차

■ 군사법원 청사 전경	3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3
□ 육군 군사법원	4
□ 해군 군사법원	5
□ 공군 군사법원	7
■ 법원장 및 주요 직위자	11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1
□ 육군 군사법원	12
□ 해군 군사법원	13
□ 공군 군사법원	14
■ 군사법원 부대기	17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7
□ 육군 군사법원	18
□ 해군 군사법원	19
□ 공군 군사법원	20
■ 연간 발자취[화보]	23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3
□ 육군 군사법원	33
□ 해군 군사법원	39
□ 공군 군사법원	44

■ 군사법원 월간 주요 행사표	49
■ 연간 군사법원 운영	53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53
□ 육군 군사법원	64
□ 해군 군사법원	72
□ 공군 군사법원	76
■ 2018년 사건 통계현황	79
□ 고등군사법원	82
□ 국방부/각 군 군사법원	100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16
□ 육군 군사법원	132
□ 해군 군사법원	148
□ 공군 군사법원	164
■ 2018년 주요 판례	183
□ 고등군사법원	183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98
□ 육군 군사법원	200
□ 해군 군사법원	205
□ 공군 군사법원	208
■ 군사법 관련 법령 현황	213
■ 2018년 주요 개정 형사법 관계법령	219

군사법원 청사전경





군사법원 청사 전경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청사 전면]



[대법정 내부]



[소법정 내부]

□ 육군 군사법원



[청사 전면]



[법정 내부]

□ 해군 군사법원



[청사 전면]



[법정 내부]

○ 해병대



[청사 전면]



[법정 내부]

□ 공군 군사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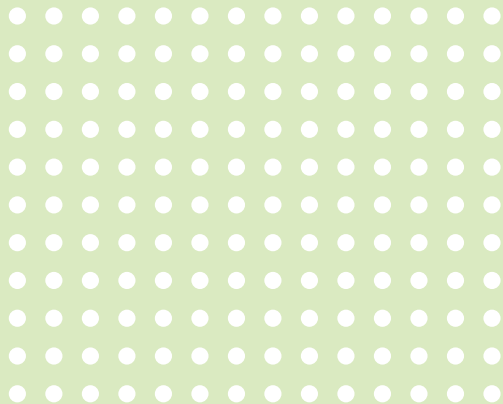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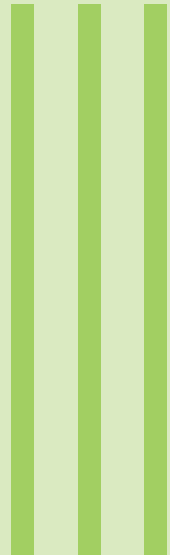


[청사 전면]



[법정 내부]

법원장 및 주요직위자





법원장 및 주요 직위자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장



11대 법원장 준장 홍 창 식
(2017. 1. 1. ~ 2018. 12. 31.)

○ 주요 직위자



고등1부장
육군대령 이태휘



고등2부장
해군대령 신동욱



보통부장
육군대령 김진기



재판연구부장
공군중령 권상진



국선번호부장
육군소령 김희진



행정처장
3호 양의찬

□ 육군 군사법원

○ 육군군사법원장



16대 법원장 대령 김 상 환
(2016. 12. 29. ~ 2018. 12. 26.)

○ 주요 직위자



재판1부장
중령 이재용



재판2부장
소령 이은숙



재판3부장
중령 이상재



재판4부장
대령 서재중



재판연구부장
대위 김다현



국선변호부장
소령 장연주



행정과장
3급 김명순

□ 해군 군사법원

○ 해군본부 군사법원장



13대 법원장 대령 옥도진
(2018. 1. 2. ~ 2019.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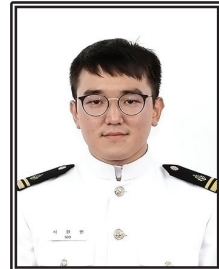
○ 주요 직위자



선임군판사
소령 이준우



군판사
소령 박소은



국선변호담당
중사 서현민



행정과장
중위 이의진



주임원사
원사 정원덕

□ 공군 군사법원

○ 공군군사법원장



123대 법원장 대령 김 종 대
(2018. 1. 23. ~ 현재)

○ 주요 직위자



재판1부장
공군대령 김종대



재판2부장
공군중령 이형일



선임군판사
공군중령 정기화



국선변호부장
공군대위(진) 류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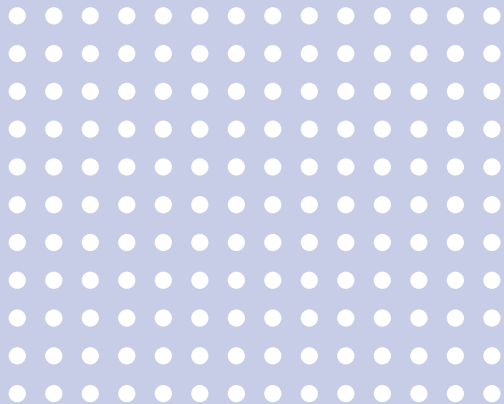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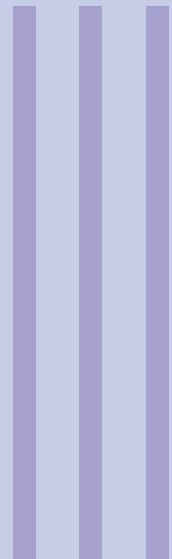


행정과장
공군준위 염규중



합의재판사무담당
4급 김종만

군사법원
부대기



■ 군사법원 부대기

□ 고등군사법원



○ 제정일자: 2000. 6. 29.

○ 규 격: 163cm × 88cm

○ 표식설명

- 단순·명료한 디자인: 공명정대한 고등군사법원을 의미
- 자주빛 바탕: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고결함을 상징
- '법원' 붉은색 글씨: 엄정한 재판권의 행사를 표상(생명, 힘, 정열, 사랑)

□ 육군 군사법원



○ 제정일자: 2000. 7. 1.

○ 표식설명

- 자주색 바탕: 법무병과 상징
- 흰색 도안: 청렴
- 원: 21세기 통일 한국 염원
- 칼: 군사법 엄정함, 정의
- 저울: 군사법원의 공정성, 형평성
- 2000: 군사법원 창설년도

□ 해군 군사법원



- 제 정 일 자: 2008. 11.
- 창 안 자: 군판사 대위 박 성 완
- 부 대 기 설 명
 - 의의: 대한민국 해군의 법치주의 실현기관으로서 엄정한 법적용과 집행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해군의 군법질서 유지와 지휘권 확립에 기여함을 의미함
 - 앵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해군조직의 안정을 도모
 - 앵카내의 동그라미와 훗줄: 군내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해군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
 - 테두리 무궁화: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켜나가자는 의미
 - 테두리 무궁화 색깔(청색): 차가운 이성을 상징
 - 테두리 무궁화내의 칼: 정의를 실현하는 힘을 상징
 - 앵카 동그라미 안의 저울: 엄정한 정의의 기준

□ 공군 군사법원



○ 도안 의의

- 높아진 공군의 위상에 발맞추어 법무병과로서 더욱 진보할 수 있는 건전한 기반이 되고자 군사법원의 신념을 새긴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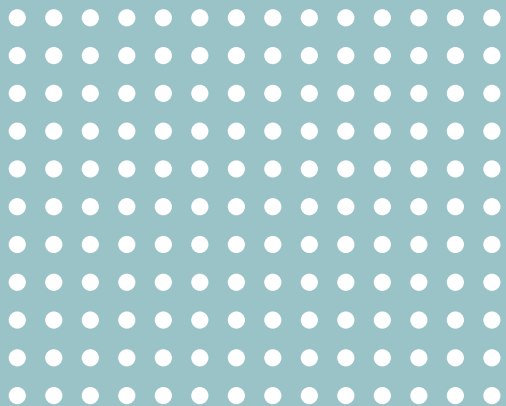
○ 부분별 의의 및 설명

- 저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
- 하단의 법전: 법에 근거한 공명정대한 재판
- 햇불: 시시비비를 가려내어 정의의 등불을 밝히는 법원을 상징
- 칼: 범죄를 엄단하고 부정을 척결하여 군내 기강 확립의 의지
- 테두리의 월계수: 법질서 확립에 기반하여 공군의 영공수호에 일조하고자 하는 신념

○ 부대 임무

- 공명정대한 재판을 통한 법질서 확립
- 군내 준법의식 고취 및 각종 범죄 엄단·예방

연간 발자취
[화 보]





연간 발자취[화보]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법무병과원 신년인사 (2018. 1. 2.)



전군 군사법원서기 간담회 (2018. 1. 24.)



평창 동계올림픽 참관 (2018. 2. 12.)



호주 공무 국외출장 (2018. 3. 11. ~ 17.)



공판 군검사 간담회 (2018. 3. 23.)



변호인 간담회 (2018. 4. 2.)



교도관 및 정병 간담회 (2018. 4. 12.)



부모 직장체험 행사 (2018. 5. 8.)



전군 군판사 직무교육[사법연수원] (2018. 5. 14. ~ 18.)



호주 군법무관 방문 (2018. 5. 30.)



대법원 양형위원회 방문조사 (2018. 6. 26.)



전군 군판사 회의 (2018. 9. 5.)



전군 군사법원서기 직무교육[법원공무원교육원] (2018. 9. 5. ~ 7.)



퇴직군무원 초청행사 (2018. 10. 19.)



제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2018. 11. 9.)



예비역 준·부사관 초청행사 (2018. 11. 16.)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초청행사 (2018. 11. 19.)



보통군사법원 지도방문 (2018. 11. 22.)



한미교류행사[평택 미군부대] (2018. 11. 26.)



고등군사법원장 이·취임식 및 전역식 (2018. 12. 21.)

□ 육군 군사법원



각군 군사법원-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식 (2018. 3. 20.)



군판사 임명장 수여식 (2018. 4. 18.)



육본 군사법원 전반기 Workshop (2018. 6. 15.)



국선번호 세미나 (2018. 7. 20.)



1군 지역 군사법원 순회간담회 (2018. 6. 20.)



2작전사 지역 군사법원 순회간담회 (2018. 8. 9.)



군사법원 현판 제작 (2018. 9. 10.)



양형토론회 및 성범죄세미나 (2018. 11. 7.)



3군지역 군사법원 순회간담회 및 5군단 법정 개소식 (2018. 11. 22.)



법원서기 세미나 및 속기사 간담회 (2018. 11. 26.)



육군 군사법원 하반기 워크숍 (2018. 12. 11.)



2작사 신축법정 개소식 (2018. 12. 12.)

□ 해군 군사법원



해군 제3함대사령부 법정 개소식 기념 (2018. 2. 8.)



해군 제3함대사령부 법정 개소식 기념 (2018. 2. 8.)



해군 군사법원 창설 18주년 기념 (2018. 6. 29.)



해군 군사법원 창설 18주년 기념 (2018. 6. 29.)



해군 군판사 회의 및 법원서기 직무교육 (2018. 7. 12. ~ 13.)



해군 군판사 회의 및 법원서기 직무교육 (2018. 7. 12. ~ 13.)



해군 전시·사변 군사법원 소산 이동 재구축 훈련 (2018. 11. 1. ~ 2.)



해군 전시·사변 군사법원 소산 이동 재구축 훈련 (2018. 11. 1. ~ 2.)

해군본부 군사법원, 비상사태 대비 모의재판 실시 해당부대 장병들 참여로 훈련 효율성 높여



해군본부 군사법원이 지난 1~2일 3함대사령부 군항 부두에서 실시한 '비상사태 대비 군사법원 재구축 훈련'에서 모의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부대 제공

해군본부 군사법원은 지난 1~2일 3함대사령부 군항 부두에서 비상사태 대비 군사법원 재구축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시·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법원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숙달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해군본부 군사법원 재판1부 등 7명이 비상사태를 가정해 사건 발생 부대인 3함대사령부로 이동해 군사법원을 재구축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현장에서는 3함대 소속 3기지전대, 헌병대대, 지휘통신대대, 항만지원대 등 관련 부서도 함께 참가해 관련 설비를 갖추는 등 본부 요원들과 호흡을 맞췄다. 이후 군항 부두에 설치된 군사법원에서는 '전시 경계 중대장이 초병을 공격한 사람을 적으로 오인해 사살한 사건'을 주제로 모의재판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훈련에는 해당부대 장병들을 방청객으로 참여시켜 군법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훈련의 효율성을 높였다. 최승희 기자

해군 전시·사변 군사법원 소산 이동 재구축 훈련 (2018. 11. 1. ~ 2.)

□ 공군 군사법원



각군 군사법원-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식 (2018. 3. 20.)



법원창설 18주년 기념식 (2018. 6. 29.)



속기사 임용 (2018. 7. 1.)



'18 알래스카 RF-A 훈련참가 (2018. 9. 26. ~ 1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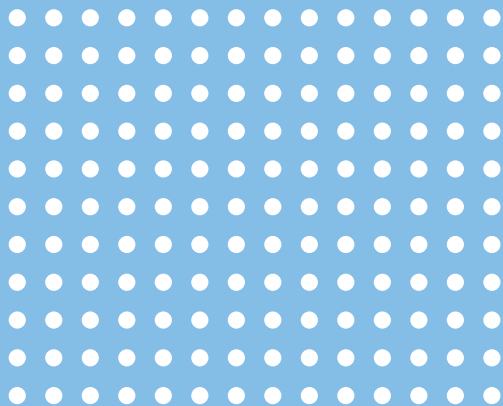


제15회 항공우주법세미나 (2018. 11. 15.)



2018 법원 업무분석회의 (2018. 12. 20.)

군사법원
월간 주요
행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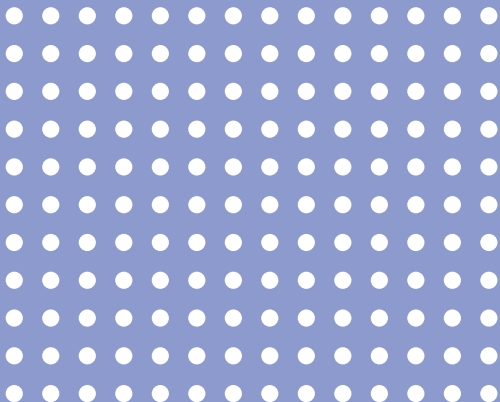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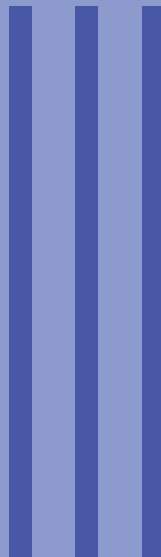


군사법원 월간 주요 행사표

1월	<p>2일 [국방부] 법무병과원 신년인사</p> <p>8~12일 [공 군] 증인지원관 교육</p> <p>24일 [국방부] 전군 군사법원서기 간담회</p>
2월	<p>8일 [해 군] 제3함대사령부 법정 개소식 기념</p> <p>12일 [국방부] 평창 동계올림픽 참관</p> <p>17일 [육 군] 2017년 육해공군 군사법원 판결집 발간</p> <p>28일 [육 군] 민간법원 재판방청(대전지법)</p>
3월	<p>11~17일 [국방부] 호주 공무 국외출장</p> <p>12일 [육 군] 군판사 임명 전 직무교육</p> <p>12일 [육 군] 군판사 자격심사위원회</p> <p>20일 [각군공통] 각군 군사법원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 체결</p> <p>23일 [국방부] 공판 군검사 간담회</p> <p>28일 [육 군] 국선변호장교 모범사례집 발간</p>
4월	<p>2일 [국방부] 변호인 간담회</p> <p>12일 [국방부] 교도관 및 정병 간담회</p> <p>18일 [육 군] 군판사 임명장 수여식</p>
5월	<p>8일 [국방부] 부모 직장체험 행사</p> <p>9~10일 [해 군] 예하부대 군사법원 지도방문(해병대 1사단)</p> <p>10~11일 [해 군] 예하부대 군사법원 지도방문(작전사령부)</p> <p>14일 [육 군] 군판사 국방부 연계 직무교육</p> <p>14~18일 [국방부] 전군 군판사 직무교육(사법연수원)</p> <p>24~25일 [해 군] 예하부대 군사법원 지도방문(1함대사령부)</p> <p>30일 [국방부] 호주 군법무관 고등군사법원 방문</p>
6월	<p>6일 [육 군] 육군 군사법원 전반기 Workshop</p> <p>20일 [육 군] 2군단 군사법원 순회간담회</p> <p>21일 [육 군] 8군단 군사법원 순회간담회</p> <p>26일 [국방부] 대법원 양형위원회 방문조사(상관명예훼손 범죄군)</p> <p>29일 [육 군] 군사법원법 2018년 개정판 발간</p> <p>29일 [해 군] 군사법원 창설 제18주년 행사</p> <p>29일 [공 군] 제19주년 법원창설기념 행사</p>

7월	<p>1일 [공 군] 속기사 임용</p> <p>12일 [해 군] '18년 군판사·법원서기 회의 및 직무교육</p> <p>16일 [육 군] 대법원 양형연구회 창립총회 참석</p>
8월	<p>7일 [육 군] 육규 181 재판사무 규정 개정</p> <p>8일 [해 군] 예하부대 군사법원 지도방문(해병대사령부)</p> <p>9일 [육 군] 53사단(2작사 파견 군사법원) 방문</p> <p>10일 [육 군] 2작사군사법원 순회간담회</p>
9월	<p>5일 [국방부] 전군 군판사 회의</p> <p>5~7일 [국방부] 전군 군사법원서기 직무교육(법원공무원교육원)</p> <p>10일 [육 군] 군사법원 현판 및 법정 안내판 제작</p> <p>14일 [육 군] 2군단 신축법정 설계용역보고</p> <p>26일 [공 군] 알래스카 RF-A 훈련참가(10. 24.까지)</p>
10월	<p>19일 [국방부] 퇴직군무원 초청행사</p>
11월	<p>1일 [육 군] 대전지법 재판방청</p> <p>1~2일 [해 군] 해군 전시·사변 군사법원 소산 이동 재구축 훈련</p> <p>7일 [육 군] 군판사 양형토론회 및 성범죄세미나</p> <p>9일 [국방부] 제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로스쿨생)</p> <p>15일 [공 군] 제15회 항공우주법 세미나</p> <p>16일 [국방부] 예비역 준·부사관 초청행사</p> <p>19일 [국방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초청행사</p> <p>19일 [육 군] 대법원 양형연구회 교류</p> <p>22일 [국방부] 각 군 보통군사법원 지도방문</p> <p>22일 [육 군] 5군단 신축 군사법원 개소식</p> <p>26일 [국방부] 한미 군사법기관 교류행사(평택)</p> <p>26일 [육 군] 법원서기 세미나</p>
12월	<p>11일 [육 군] 육군 군사법원 하반기 Workshop</p> <p>12일 [육 군] 2작사 신축 군사법원 개소식</p> <p>20일 [공 군] 연간 업무분석회의</p> <p>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이·취임식 및 전역식</p> <p>26일 [육 군] 서성훈 군사법원장 취임</p>

연간
군사법원
운영





연간 군사법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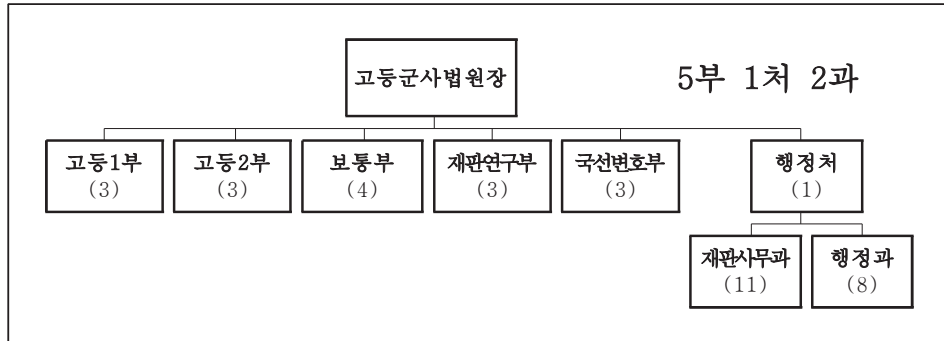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연혁

194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군 과정 미 군법회의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특별/약식 군법회의(단심제 + 판결심사제도) ○국군조직법상 군법회의 설치 근거 마련
195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경비법(미 군법회의 제도) 체제하 군법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 - 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
195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법회의 헌법적 근거 마련(제2차 헌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에 관한 상고사건 대법원 관할 - 군법회의 구성과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함
196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법회의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심제도(보통군법회의 → 고등군법회의 → 대법원) - 군 특수성 반영을 위한 제도(관할관, 심판관)준치 - 소송절차는 일반 형사소송절차 반영 : 사법기관성 강화
198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개칭(제9차 헌법 개정) ○군사법원법 제정(법무사 → 군판사)
199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법원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군사법원 통합(국방부, 육·해·공군 → 국방부) - 재판부 구성(심판관, 군판사)상 군판사 비율 상향 - 구속영장발부권: 관할관(지휘관) → 군판사
200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군사법원 창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분리
200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판중심주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형사소송법제도에 따른 인신구속제도, 증거조사방식 등
2016. 1. 6. (2017. 7. 7.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법원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

○ 일반현황

• 기구도



• 정원

구 분	총 계	장 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전 시	40	20	0	8	12
평 시	37	17	0	8	12

• 주요 보직자

직 책	계 급	성 명	임관기수	비고
법 원 장	육군준장	홍 창 식	법무#58	군법10
고등1부장	육군대령	이 태 휘	법무#64	군법13
고등2부장	해군대령	신 동 욱	해법무#20	군법13
보통부장	육군대령	김 진 기	법무#58	군법10
재판연구부장	공군중령	권 상 진	공법무#22	군법14기
국선번호부장	육군소령	권 민 상	법무#82	
행정처장	3급	양 의 찬	'13년 임용	3사#19
재판사무과장	5급	이 도 선	'97년 임용	
행정과장	6급	김 진 영	'03년 임용	

○ 직원 보직현황

부서	직책	보 직 자		비 고	
		계 급	성 명		
지휘부	법원장	육군준장	홍창식		
고등1부	부 장	육군대령	이태휘		
	고등군판사	육군중령	양재도		
	고등군판사	해군중령	구영우		
고등2부	부 장	해군대령	신동욱		
	고등군판사	육군중령	최정윤		
	고등군판사	공군소령	서대봉		
보통부	부 장	육군대령	김진기		
	보통군판사	육군소령	이민우		
	보통군판사	공군소령	김민정		
	영장전담군판사	육군소령	정 신		
재판연구부	부 장	공군중령	권상진		
	재판연구관	해군대위	박종한		
	외국법령연구관	육군중위	신동천		
국선연구부	부 장	육군소령	권민상		
	국선변호장교	해군대위	윤석범		
	국선변호장교	공군대위	정중원		
행정처	재판사무과	행정처장	3급	양의찬	
		재판사무과장	5급	이도선	
		재판사무담당	6급	양홍승	
		군사법원서기	육군상사	한영식	
		군사법원서기	해군상사	서상우	
		군사법원서기	육군상사	강은정	
		군사법원서기	공군중사	박승훈	
		군사법원서기	7급	김교성	
		사건접수담당	육군상사	김화연	
		영장담당서기	해군중사	양승진	
		속기사	8급	이영하	
	법무통합체계담당	9급	이윤희		
	행정과	행정과장	6급	김진영	
		법무행정담당	9급	홍선미	
		인사담당	9급	허은혜	
		재정담당	육군상사	손병택	
		군수/보급담당	공군중사	한진의	
		법령자료담당	7급	백숙현	
지휘부행정담당		7급	안은영		
전산정보담당	7급	김유라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고등부

- '신속한 공판사건 처리'를 위한 노력

- 피고인 전역 등으로 '이송'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피고인 주소지 관할 민간법원으로 이송
- 관련 사건 계속 중 별건 기소 등으로 '병합' 사유 발생 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신속한 병합 결정
- 공판계속 중 새로운 증거발견 및 신청 시 새로운 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 신속 지정

-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판결의 전문성 확보

- 2018년 대법원에 상고되어 선고한 34건 중 파기 사건은 1건에 불과하여 파기율 2.9%
- 파기 판결의 경우 이유(법령의 적용, 법리 오인)의 문제가 아닌 형식상 문제로 인한 것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해 각군 군사법원 지도방문 시 사례전파,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를 통해 군사재판의 신뢰성 제고

- 2018년 사건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존중하여 판결함으로써 형의 선고에 있어 예측가능성 제공하여 피고인의 불안감 조기 해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대다수 균형범법)에 대해서는 법정형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판결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양형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재판만족도 평가'를 통한 소송관계인의 소통 활성화

- 판결의 내용 뿐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신뢰받는 군사법원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재판에 참여한 피고인, 군검사, 피해자, 방청객 등에 대하여 무기명 설문지를 통한 의견 수렴
- 법정 앞 2개소에 고객의견함 설치 및 국군교도소 방문 상담 시 재판진행에 대한 무기명 설문 조사 병행

● 보통부

- 군사재판의 신뢰성 및 신속성 제고

군사재판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집중심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 보장을 위한 '구공판 사건 160일 이내 사건 처리 및 약식사건 신속처리'를 추진하여, 군사재판의 신뢰성 및 신속성을 제고

① '집중심리제'의 정착 노력

-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하여 다툼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기일 간격을 짧게 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극명히 다투는 경우 많은 증인이 신청되는데 이러한 경우 집중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짧은 기간에 연속한 증인신문으로 이전 기일에 심리된 내용에 대한 기억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실제적 사실관계 발견에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음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검찰단에서 기소하는 방산비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등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므로,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인 증인신문 및 기일지정으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함
- 2018년 공판 진행한 총 35건 사건 중 8건에 대하여 집중심리 진행함

② 구공판사건 160일 이내 처리 및 약식사건 신속처리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피고인에 대한 불안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기소된 이후 160일 이내 사건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를 달성하고자 30일 이내 첫 기일 지정 및 집중심리제를 통해 신속하고도 정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였음
- 약식사건 접수 시로 부터 14일 이내 사건 처리
- 2018년 선고한 구공판 사건 17건 중 11건에 대하여 160일 이내 처리하였고, 약식사건 50건 중 34건 기간 내 처리함

● 재판연구부

- 균형법상 주요 범죄유형 양형기준 마련으로 군사재판의 공정성 확보

- 2017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준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8. 7월부터 재판연구부장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순정 군사범죄 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함.
- 2018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명예훼손범죄의 양형기준에 균형법 상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범죄를 포함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였고, '19년 3월 최종의결 예정임.
- 균형법 상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범죄의 양형기준 마련 시 군사법원 판결 전수조사를 통해 양형인자를 추출하고 양형기준안 검토 후 각 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군사법원의 의견 반영
- 향후 지속적으로 균형법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 제고에 노력할 것임

- 주기적 판례연구 및 군판사 직무교육 실시로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

- 매월 1-2회 총 15회의 판례세미나를 개최하여 판례연구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토론과 교육을 통해 공유하여 군판사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018년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美 디지털증거 압수 수색에 관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벌금형 분리선고 판결문 기재례 등 참석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필요에 따른 토론주제를 선별하여 효용성을 높이고, 해외 군사법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자료 축적 및 공유
- '18. 5. 14. ~ 18. 사법연수원에서 전군 군판사 38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재판, 형사증거법, 영장실무, 양형 등 민간법원 실무 현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

- 전군 군판사 회의, 각 군 보통군사법원 지도방문 및 군사법원 공보 발간으로 소통 강화

- '18. 9. 5. 전군 군판사 회의를 통해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군 특수성 반영한 양형인자 도출 등에 대한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전군 군판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내 양형인자에 대한 전군 군판사들의 최초 논의 장 마련

- '18. 11. 22. 각 군 보통군사법원과의 원활한 업무협조·인적교류 강화 및 군사법원 운영관련 개선사항 수렴을 위한 각 군 군사법원 지도방문을 통하여 '18. 11. 1. 시행된 「군사법원 재판 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통일된 군형사소송절차 준수 강조 등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공감대 형성
- 분기단위로 군사법원(고등, 각 군) 주요판결, 재판참고자료, 각 군 주요실시 및 예정사항 등을 담은 「군사법원 공보」를 작성하여 2018년 4분기(제6호)까지 공유함으로써 최근 법령 및 판례 경향 소개를 통한 재판의 효율성 제고, 고등군사법원 및 전군 군판사 소통의 장 마련

- 대외 교류활동 다양화를 통해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법원장 등 3명이 공무해외출장(3. 11. ~ 17)을 통해 호주 군사법기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군 사법제도를 소개하고 호주의 군사법제도 및 군 사법행정 분야에 관한 내용을 연구·분석하여 우리 군 사법제도 발전을 도모함.
- 그 외 11. 26. 법원장 등 8명이 미군 평택기지(미8군 법무실 및 군사법원)를 방문하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면담(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면담(3회)을 실시하여 군사법원에 대해 널리 알림으로써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함. 특히, 법원장과 각 부장들이 대법원 「양형연구회」 활동[창립총회(7. 16), 정기총회(11. 19.), 학술 심포지엄 참석(2회)]을 통해 전문가들과 교류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군사법원의 신뢰성을 제고함.

● 국선변호부

- 분야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 운영 및 충실도 평가

- 서울 지방변호사회에 국선변호인 추천 의뢰하여 신청자 중 최종 선정된 60명(군법무관 출신 19명, 사법시험 24명, 변호사시험 17명)과 국선변호부 소속 군법무관 3명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및 인트라넷에 공개
- 피고인이 국선변호 신청 시 해당 명부를 함께 제공하여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
- 재판부 평가서(50점), 피고인 평가서(50점)의 반영률을 1:1로 하여 합산된 평가 점수는 당해 연도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과 다음 연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 갱신 과정에서 반영

- 국선변호인의 충실한 국선변호 유도

- 재판부 및 피고인 평가를 통하여 국선변호인의 충실한 국선변호를 유도하고 부적격 국선변호인은 명부 갱신 시 배제함
- 민간 국선변호인의 군사법원 및 군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8. 2.에 민간 국선변호인 대상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민간 국선변호인들에게 배부
- 우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장관 감사장 수여(연1회)
 - * 감사장 훈격 개선 : 법원장 표창 → 장관 표창('18년부터 시행)
 - * 우수국선변호인에게 자긍심 고취 : '18년 우수국선변호인(변호사 박철수, 류치환)
- 전년도 대비 재판부 및 피고인 평가 점수 3.83점 증가('17년 79.34 → '18년 83.17점)

- 국군교도소 수용자 정기 면담 강화

- 매주 2회에 걸친(화, 목) 국군 교도소 화상면담 및 매월 1회 방문 면담을 통해 피고인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
- 적극적인 수용자 면담으로 면담건수 전년도 대비 14% 증가(233건 → 267건)
-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판결 주요 내용과 의미, 상소 여부 등 관련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

- 법률상담 건수 지속 증가

- 신속하고 친절한 법률상담을 통해 장병들의 권익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
- 빠른 피드백을 통하여 인트라넷 법률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16년 169건 → '17년 302건 → '18년 323건(전년 대비 21건 증가))

● 행정처

- 최고 군사법원의 위상과 역할 정립

- 보통군사법원에 대한 사법행정 지도·감독 체계화
 -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권한 위임 및 관련 규정 개정
 - 보통군사법원에 대한 사법행정 지도·감독 정례화
 - * 보통군사법원 지도방문(연1회) 실시
 - * 월1회 보통군사법원 판결선고 현황 및 법원정보체계 입력현황 파악 각군 공유
- 군사법원 사법행정 표준화
 - 전 군사법원에 적용될 수 있는 예규 등 제·개정
 - * 군사보안업무예규 국선번호인 운영예규 등 7개 예규 개정 : '18. 3.
 - * 「군사법원 재판사무에 관한 훈령」 제정 : '18. 11. 1.부
 -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발간물 및 발간 주기 등 확정
 - * 사법연감(연1회), 군형사법 연구집(연1회), 법원공보(분기별) 등
- 국내 유관 기관 및 외국 군사법 기관 간 교류 증대
 - 대법원, 사법연수원, 주한 미군, 외국 군사법원 방문·교류
 - * 선진 외국 사법제도 교류위한 실질적인 공무출장

- 최고 군사법원으로서의 전문성 강화

- 군판사·군사법원 서기 선발 기준 및 교육 강화
 - 군판사 유경험자, 우수 인력 군판사로 선발
 - 육군종합행정학교 군판사교육, 법관연수원 대외기관 위탁교육
- 군사법원 전사업무 내실화 및 상무정신 함양
 - 전시 군사법원 운영계획 발전
 - * 자체 충무계획 및 계엄사 사법과 지원요원 임무수행철 보완, 우발상황 대비 작전지속지원 방침 및 절차 보완
 - 합참 군사상황 브리핑 참석 통해 군사준비태세 관심 제고
 - 개인화기 사격 및 비상소집 훈련 내실화
 - * 자격사격(최초) : 7. 16. / 제15특수임무 비행단 실내사격장
 - * 국방부 훈령에 따라 분기별 불시 비상소집 훈련 실시
 - '18년 전비태세검열 결과 후속조치과제 100% 추진으로 유공자 표창(합참의장1, 검열단장1)

- 효율적 업무수행 위한 조직 및 시설 보강

- 보통부 심판관제도 실질적 폐지에 따른 군판사 보강
 - 보통부장 계급상향(중령 → 대령), 보통군판사 공군소령 보강(+1) : '18.1.1.부
- 재판의 품격을 담보하는 시설개선 지속 관심
 - 국방부 검찰단 이전에 대응한 시설 이용계획 수립
 - * 군사법원 역사관, 도서실, 민원실 등 확대
 - 민원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정 시설 및 환경개선
 - * 민원인 및 불구속 피고인 휴게실 공간 마련, 변호인의 구속피고인 접견장소 마련, 법정지역 내/외 벽면도색 등

- 친근하고 쉽게 다가가기 위한 '열린법원'

- 인터넷 및 인트라넷 홈페이지 내실화·정보공개 확대
 - 재판일정 및 무죄판결 공시(인터넷/인트라넷)
 - 군사법원 발간물 공유(인트라넷)
 - * 군사법원 공보, 증인지원관 직무매뉴얼, 국선변호업무 안내서 수록
 - * 주요판결(매월), 판례연구자료, 판결요지집(eBook), 군사법논집(eBook), 미국 군사법 논집 수록
 - 법원 일정 공유(인트라넷)
 - * 일정표(일), 주간계획표(주), 회의자료(주/월), 군사법원 연감 수록
 - 양형기준 토론 관련 자료 공유(인트라넷)
-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제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실시
 - 예비 법조인에게 군사법절차를 이해시키고 열린 군사법원 구현
- 법률상담(인터넷/인트라넷) 활성화
 - 인트라넷 법률 상담 시 질의 내용에 대한 신속한 답변 제공(2 근무일 내)
 - 법률상담제도 홍보 활동 : 법률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인트라넷 및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너 설치

- 원활한 재판운영을 위한 재판관계자 정례 간담회 실시

- 공판 군검사, 변호인, 군사법원서기, 정병 간담회
 - 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지위의 사람들과 고등군사법원 재판부가 함께 재판진행 간애로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해결책 제시
- 역대법원장, 장기근무 퇴직직원(준·부사관, 군무원) 초청행사
 - 고등군사법원 장기근무 퇴직자를 대상으로 초청하여 군사법원 개선사항 등 의견 청취
 - * 군 외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발전 방향 논의

- 전군 군사법원 소통을 위한 군사법원 발간물 발행 및 공유

- 군사법원 공보 발간(분기별)
- 국선변호업무 안내서 발간(4월)
- 법원 홈페이지 공유
 - 주요판결, 판례연구자료, 판결요지집(eBook), 군사법논집(eBook) 등
 - 양형기준 토론 관련 자료 공유
- 군사법제도 및 군사법원 활동 홍보 강화
 - 군사법원 및 군사법제도 홍보 책자 발간(국내 및 외국인용)
 - 대변인실과 유기적 협력 통해 법원 활동상 홍보 강화
 - 군사법원 연감 발간
 - 군사법원 공보 발간(분기별)
 - 국선변호인 가이드북 제작(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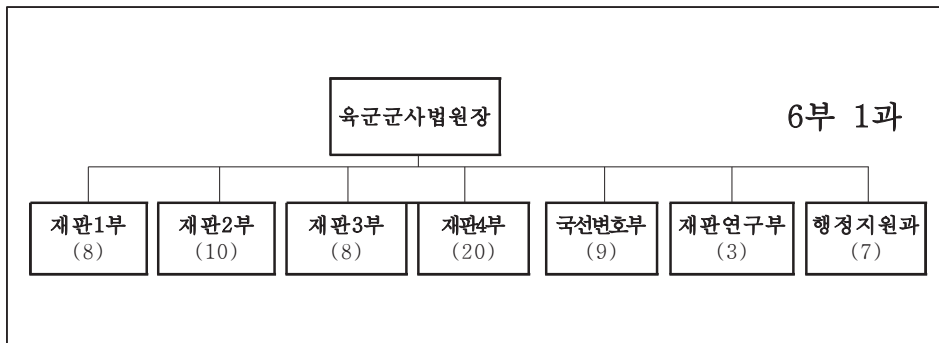
- 재판방청/법정견학 만족도 평가

- 국민과 장병들의 군사법제도 이해증진을 통한 군의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하여 군사법정 견학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준법의식 고취 및 군법교육 효과로 군내 범죄 예방에 기여
- 법정견학 홍보를 위하여 2018년 연 1회 국방일보 홍보기사 게재 및 연 2회(1월, 7월) 이상 국직부대 및 기관에 법정견학 홍보 공문을 발송하여 더 많은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2018년 법정견학 총 28회 563명(2017년 총 33회 577명) 실시

□ 육군 군사법원

○ 일반현황

• 기구도



• 정원

구 분	총 계	장 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
전 시	164	83	1	55	6	19
평 시	66	37	1	22	6	0

• 주요 보직자

직 책	계 급	성 명	임관기수	비고
법 원 장	대령	김 상 환	법무#66	군법14
재판1부장	중령	이 재 용	법무#68	군법16
재판2부장	소령	이 은 숙	법무#75	사시49
재판3부장	중령	이 상 재	법무#66	군법14
재판4부장	대령	서 재 중	법무#54	군법8
국선변호부장	소령	장 연 주	법무#75	사시49
재판연구부장	대위	김 다 현	법무#88	변시6
행정과장	3급	김 명 순	'86년 임용	공채

○ 직원 보직현황

● 장교 및 행정지원과

부서	직 책	보 직 자		비고
		계 급	성 명	
지휘부	법원장	대령	김상환	
재판1부	부 장	중령	이재용	
	군판사	소령	한지용	
	군판사	소령	박수정	
	군판사	소령	박은숙	
재판2부	부 장	소령	이은숙	
	군판사	소령	추대성	
	군판사	소령	김태홍	
	군판사	소령(진)	이혜경	
재판3부	부 장	중령	이상재	
	군판사	소령	서태우	
	군판사	소령	오윤경	
	군판사	소령	김지현	
재판4부	부 장	대령	서재종	
	군판사	중령	이상혁	
	군판사	중령	윤현정	
	군판사	소령	성은경	
	군판사	소령	최종욱	
	군판사	소령	강미림	
	군판사	소령	백경훈	
	군판사	소령	이미정	
	군판사	소령	우상욱	
국선변호부	부 장	소령	장연주	
	국선변호장교	대위	엄수연	
	국선변호장교	대위	이지수	
	국선변호장교	대위	김훈찬	
	국선변호장교	대위	최서준	
	국선변호장교	대위(진)	박성종	
	국선변호장교	대위(진)	권준우	
	국선변호장교	대위(진)	오정환	
재판연구부	부 장	대위	김다현	
	재판연구장교	소령	서지현	
	재판연구장교	대위	김기범	
	재판연구장교	대위	박근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3급	김명순	
	재정장교	대위	박종범	
	행정/통계담당	7급	서은희	
	전자법정운용원	8급	이라리	

● 법원서기 및 속기사

부서	직책	보직자		비고
		계급	성명	
재판1부	법원서기	준위	오은화	
	법원서기	중사	박미화	
	법원서기	중사	문혜림	
	법원서기	중사	박혜진	
	법원서기	중사	채소령	
재판2부	법원서기	상사	장승환	
	법원서기	중사	백혁	
	법원서기	중사	송영통	
	법원서기	중사	윤준필	
	법원서기	중사	안승률	
	전자법정운용원	8급	권윤주	
재판3부	법원서기	상사(진)	홍지희	
	법원서기	중사	이경찬	
	법원서기	중사	김진섭	
	전자법정운용원	계약8호	우은채	
재판4부	법원서기	상사	이지원	
	법원서기	중사	위보라	
	법원서기	중사	사혜진	
	법원서기	하사	류지성	
	법원서기	중사	김아영	
	법원서기	중사	엄상진	
	법원서기	중사	남상욱	
	법원서기	상사	김영화	
	법원서기	중사	박경록	
	전자법정운용원	8급	김영일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군판사 임명**

군판사 임명식은 2018년 4월 18일 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되었다. 2017년 이전에 임명된 군판사 11명을 제외하고 총 10명의 군판사가 새롭게 임명되었다. 2017년과 동일하게 육군본부 보통 군사법원을 비롯하여 1군사·2작사의 재판부장들은 중령급으로 임명하였으며 추가적으로 3군사 재판부장은 대령으로 임명하여 상급 부대 군사법원의 무게감을 더하였다. 또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판사는 전원 영관급 법무장교로 임명하여 군사법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 **재판 관련 법원 구성원 직무교육**

- **군판사 임명 전 종합행정학교 교육**

2018년 육·해·공군 군판사 보직 예정자 및 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육군 주관 하에 2018년 3월 12일부터 2018년 3월 16일까지 종합행정학교에서 군사재판실무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군판사의 재판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육군군사법원 재판부장 및 고등군사법원 군판사의 풍부한 경험을 통한 강의와 국선변호장교, 군검사의 입장에서 본 군사법원에 대해 강의를 함께 병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판업무 수행능력이 강화되는 한편 다양한 관점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소통하는 군판사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군판사 직무교육**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국방부 주관으로 사법연수원에서 군판사들에 대해 2018년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군판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디지털증거에 대한 최신경향부터 양형기준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 전반에 관하여 현직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재판연구관 등의 초빙강의를 통해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교양강의와 토론을 통해 군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문소양을 취득하고, 업무관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 **육군 군사법원 양형토론회 및 성범죄세미나**

2017년 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법정(53사단 법정)에서 실시된 양형세미나에 이어 2018년 강원도 양양의 8군단 보통군사법원 법정에서 군판사 양형토론회 및 성범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7년 양형토론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2018년 양형토론회는 성범죄 양형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군인등강제추행,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할 수 있었고, 군의 특수성에 맞는 양형인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더불어 양성평등 문제점과 군판사 직무수행간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국선변호인 직무교육**

2018년 7월 20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회의실에서 육군 국선변호장교(총 15명)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2018년 국선변호인 직무교육은 전·후반기에 2회 이루어진 2017년 직무교육과 달리 후반기 국선변호장교 임명자 수가 적어 전반기에 1회 이루어졌다. 국선변호인 직무교육은 국선변호활동 간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기회의 장이 되었고, 군사령부와 군단급에 분산되어 근무하므로 함께 논의하지 못하였던 국선변호장교의 발전방향 및 문제점에 대해 토의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17년부터 국선변호장교업무를 수행한 장교뿐만 아니라 초임 국선변호장교들이 고르게 참석하여 다양한 방향과 측면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군사법원소속으로 각 군사 및 군단급에 파견되어 업무를 하는 것에서 오는 애로사항이 많았다.

한편, 법무법인 동화의 이혜정 변호사가 ‘국선변호업무 일반’에 대하여 강의를 해주었고, 국선변호인의 증거단핵에 관한 역할, 업무의 비중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사선변호사와 다른 국선변호의 역할에 대해 국선변호장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항소심에서 바라본 국선변호인’(고등군사법원 군판사 해군중령 구영우)에서는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응용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 군사법원서기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 교육

2017년에 이어 2018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고등군사법원 주관의 법원서기 직무교육이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열렸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들이 직접 강의를 하여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졌다. 2018년 11월 26일에는 육군본부 제1분청 소법정에서 법원서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지역군사법원으로 개편될 경우 법원서기 배치에 관한 문제 및 법원서기의 군무원 전환 관련 부분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고, 소송기록 작성중 주요 하사사례를 중심으로 업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세미나에는 법원서기 총 21명 중 준위 오은화 등 18명이 참석하였다.

- 속기사 간담회 및 속기실무과정 위탁교육

법원서기세미나와 함께 속기사 간담회가 2018년 11월 26일 육군본부 제1분청 대법정에서 개최되었다. 속기사 간담회에서는 속기사 업무토의와 애로사항 건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속기실무과정이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이루어져 민간법원 속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글맞춤법 등 직무교육을 군사법원 속기사들이 받을 수 있었다.

● 군사법원 소통강화

- 야전 지역 군사법원 순회 간담회

야전지역 군사법원요원의 업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재판부별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재판2부는 2군단과 8군단을 2018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재판3부는 2작전사령부 및 53사단을 8월 8일부터 9일까지, 재판4부는 5군단을 11월 22일 방문하였다. 순회 간담회에서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법률시행간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부별 재판을 방청하고, 법원서기 간담회를 함께 하였다.

- 유관기관 교류협력 및 민간 학술행사 참여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2018년 3월 20일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은 육·해·공군 군사법원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군사법원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실무수습 및 군사법률강의 등을 지원하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각군 군사법원에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등의 시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대전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은 유능한 법조인력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형연구회 참석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점이 되어 양형연구회가 2018년 7월 16일 창립되었고, 11월 19일에는 ‘음주와 양형’이라는 주제로 양형토론이 개최되었다. 육군 군사법원도 양형기준에 따라 재판을 하는 법원으로서 양형기준 설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바 양형연구회의 일원이 되어 양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양형연구회 창립회 및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 군사법원 관련 제도 개선

- 육군규정 181 「재판사무 규정」개정

육군 181 「재판사무 규정」 중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개정을 진행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에 나타난 군판사 및 법원서기 파견근거를 육군규정에 명문화 한 것과, 군판사 복장 중 군사법원을 나타내는 마크가 있는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으로 복장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및 부대개편에 따른 「군사법원 운영 조정 지시」 하달

지상작전사령부 창설로 인하여 기존 재판2부의 소재지였던 1군사령부가 해체되고 36사단, 1군지사, 55사단의 예속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1군사령부에서 처리하던 사건에 관한 운영을 조정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10일 「지작사 창설에 따른 군사법원 운영 조정 지시」를 하달하여 지작사 창설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또한 부대개편에 따라 사라진 26사단과 26사단 부지로 이동하는 8사단의 재판지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8·26사단 재판지원 조정 지시」를 하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 신속한 재판 강화

장기미제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병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7년과 같이 월 1회 이상 공판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1년이상 지속되는 사건이 민간법원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나타내게 되었다.

●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관련 법원 요원 운용 및 관할 조정

- 육군 군사법원 요원 운영

1군사에서 근무 중이던 군판사는 재판2부의 소재지를 2군단에 두기로 함에 따라 2군단 군사법원으로 보직을 조정하였고, 1군사에서 근무 중이던 법원서기 2인 중 1인은 2군단으로, 나머지 1인은 3군단으로 보직을 조정하여 각 보통군사법원별 처리사건이 균형을 이루도록 힘썼다.

- 보통군사법원 설치부대 변경

지작사 창설 및 1군사, 3군사 해체로 인하여 군사법원법 제6조 별표에 나타난 보통군사법원 설치부대를 변경하였다.

- 재판지원 및 세부관할 주요 변경

· 재판지원

지리적인 문제 및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지작사보통군사법원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2군단에 소재하고 있는 재판2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여 1군사에서 계속 중인 사건 및 36사단, 1군지사의 향후 재판은 재판2부에서 2군단 군사법정을 이용하여 처리하되 지작사 군사법원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 관할 변경

수도군단에서 지작사로 예속이 바뀌는 55사단의 경우 지작사 보통군사법원과의 예속관계 및 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작사 군사법정을 이용하여 지작사 군사법원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 1군사 군사법원 보관 부책 등의 이관

2017년 개정군사법원에 따른 시행조치를 준용하여 군사법원 재판사무 예규에 따라 1군사 기록물을 지작사 법원서기를 통하여 이관토록 준비하여 보관 부책등의 유실이 없도록 하였다.

● 연구 및 발간 활동

- 「법원서기 업무 매뉴얼」 발간

2018. 11. 23. 육군본부 군사법원 법원서기 준위 오은화의 집필로 「법원서기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법원서기 업무 매뉴얼」은 군사법원법과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등 각종 법률을 참고하여 법원서기 업무시 언제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발간한 것으로, 초임 법원서기부터 숙달된 법원서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법원서기분야의 군사법원 연구기능을 확대하고 법원서기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군사법원법 2018년 개정판」 발간

2013년 발간되어 군판사뿐만 아니라 군검사 및 군선변호사의 업무를 위해 활용되었던 「군사법원법」이 5년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육규가 변경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도래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경부터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2018년 6월경 「군사법원법 2018년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개정 군사법원법 책자는 현행법과 모순이 되거나 필요함에도 수록되지 못한 내용과 2017년 7월 7일부로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수의 최신판례를 수록하여 군사법제도의 이해를 돕는데 한층 더 기여를 하고 있다.

- 「국선변호 모범사례집」 발간

국선변호장교는 대부분 국선변호인 경험이 없는 초임장교가 임명되는 실정이므로, 실제 국선변호업무 간 활용할 수 있는 사례집의 발간이 시급하였다. 따라서 군인등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다양한 무죄사례와 주요 범죄에 관한 모범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전시군사법 관련 연구 및 예비역 군판사 매뉴얼 작성

2017년 개정군사법원법 시행에 따라 2018년 KR기간 동안 전시임무수행철 보완작업을 실시하였다. 사단급 군사법원을 설치보류하고 군단급 이상 군사법원에서 평시 재판을 하는 만큼 전시 및 계엄시를 대비하여 군사법원 설치보류해제 부대를 사단급 군사법원으로 설정하였다. 이외에도 개정군사법원 시행등으로 변화하는 군사법제도에 따라 전시임무의 혼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종 명칭의 수정을 가하였다. 한편 예비역 군판사의 동원훈련시 사용할 수 있는 교재의 미비로 인하여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완하고자 '예비역 군판사 교육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시에 소집된 예비역 군판사가 빠른 시일내 업무에 투입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주간 판례연구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중요·최신판례에 대한 연구를 2018년에도 지속하여 통하여 군판사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뇌물죄와 부정청탁금지법의 비교와 같이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이나 그 적용범위가 모호한 죄간의 비교를 통하여 군판사 업무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균형법상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 등 군사법원과 관련된 중요판례, 구속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공하여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재판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 법원 신축예산 및 군사법원 신축부지 확보 노력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찰부와 군사법원은 상호 독립기관으로 군 사법기관의 실질적·외형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의 신축을 위해 예산획득을 노력한 결과 2017년에 2작사 법원 신축을 시작으로 2018년에 2군단 법원 신축예산을 최종 반영(29억원)하였다. 2020년 예산요구안에는 수도군단 법무부 및 법원 신축을 예산편성요구안에 반영하였고, '20~'24 국방중기계획에 육·해·공군 군사법원 신축, 전자법정시스템 및 법정비품입비를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20~'24 국방중기계획에는 법원신축 사업예산 12,441백만원, 확대사업 10건(순회재판여비, 증인소환비, 국선번호료 등)을 요구(5개년, 15건, 2,481백만원) 및 반영하여 '19~'23 국방중기계획 대비 2,841백만원(23.5%증가)을 증액하여 군사법원 예산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육·해·공군군사법원 신축을 위한 부지도 확보하여 육·해·공군 군사법원 신축 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 재판지원 차량 확보 및 법정시설 개선운용

2018년도에는 승합차 2대와 승용차 2대를 각각 확보하여 재판3·4부에는 승합차를 1·3군단에는 승합차를 배부하였다. 또한 노후된 재판지원 차량은 매년 1~2대를 재투자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신차로 교체할 나갈 예정이다.

- 행정지원과 편제 보강 노력

행정과는 2018년 조직진단결과로 2018년 12월 1일부로 과 명칭이 행정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변경되었으며, 전자법정운용담당 4명도 재판1, 2, 3, 4부 소속에서 행정지원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또한 기획자료관리담당 직책 명칭도 행정/통계담당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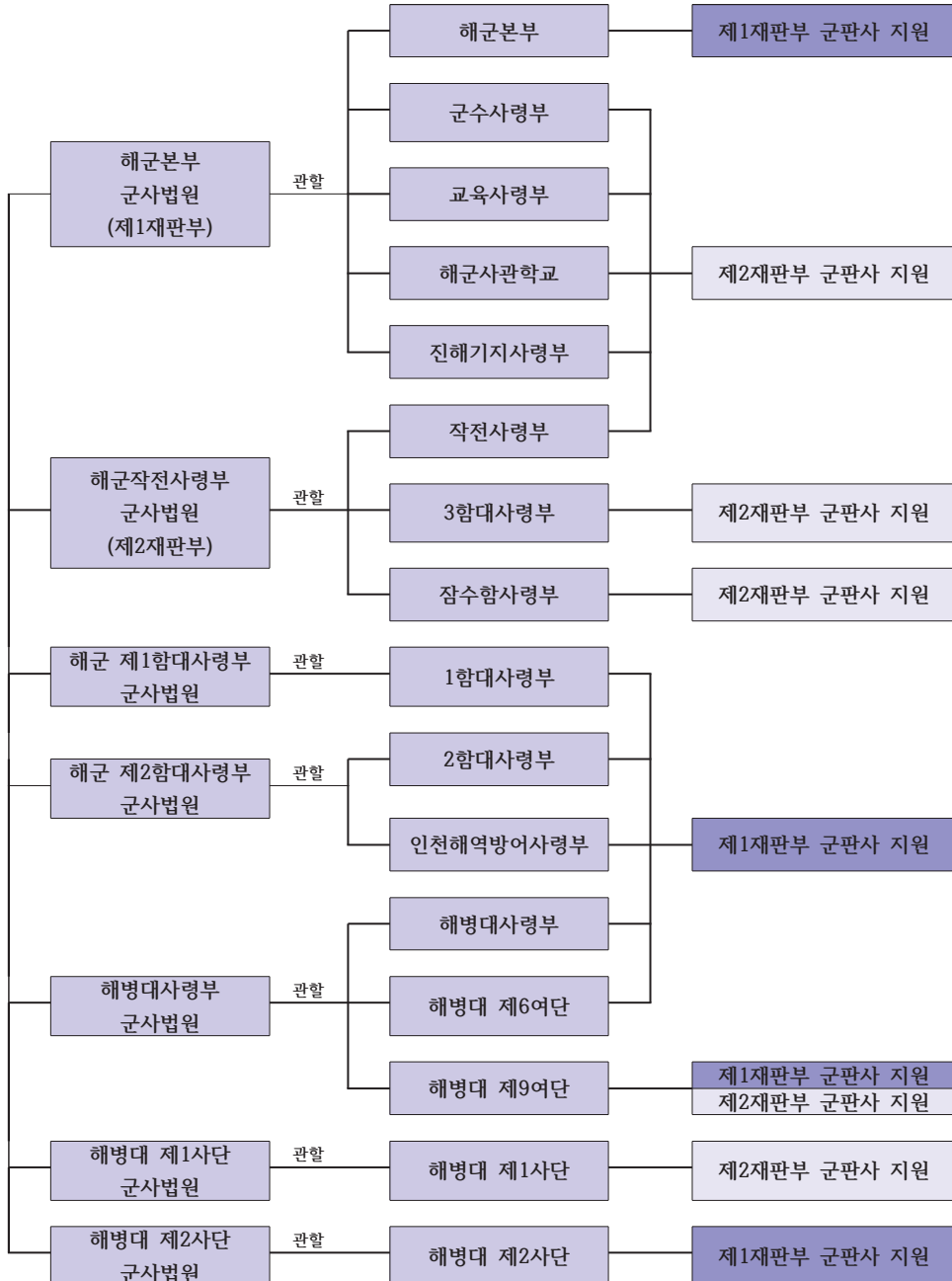
- 비품구입 및 법복구매

부대비품비 7,146만원 예산을 배정받아 9개 법원에 자동천공기, 2개 법원에 문서인증기(전동 페이드기), 1군단에 의자 2종 등을 구매하여 보급하였으며, 5군단 신축에 따른 비품 구입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재배정하였고, 53사단 노후화된 비품 교체로 700만원을 재배정하였다. 피복비 1,845여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법복(단가 229,000원)은 군판사 9벌, 법원서기 4벌, 군검사 16벌을 5월에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법복과 함께 착용하는 와이셔츠(블라우즈)는 일괄 구매하여 군판사 및 법원서기, 군검사에게 각각 보급하였으며, 군판사 넥타이는 민간법원 판사 넥타이와 같은 디자인으로 육군군사법원 마크를 삽입하여 제작하여 모든 군판사에게 보급하였다.

□ 해군 군사법원

○ 일반현황

• 기구도



○ 직원 보직현황

부 대 명		직 책	보 직 자		비 고
			계 급	성 명	
해 본	군사법원 (제1재판부)	군사법원장	대령	옥도진	
		선임군판사	소령	이준우	
		군판사	소령	박소은	
		법원서기	원사	정원덕	
		법원서기	하사	유호재	
		법원서기	하사	박홍민	
		순회재판 지원서기	상사	백대훈	
		순회재판 지원서기	상사	김성원	
		행정담당	중사	이현재	
	(행정과)	행정과장	중위	이의진	
(국선변호부)	국선변호담당	중위	서현민		
작전사 (제2재판부)	제2재판부장	중령	하성호		
	제2재판담당1	(임)중령(진)	김민지		
	제2재판담당2	소령(임)	박광연		
	법원서기	상사	조경수		
	법원서기	하사	이찬희		
1함대	법원서기	중사	윤지현		
해병대사	국선변호부장	대위	이경원		
	법원서기	원사	김인천	겸직	
2함대	법원서기	원사	김인천	겸직	
1사단	법원서기	중사(진)	박현준		
2사단	법원서기	상사	안기양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공개재판 활성화('18. 1.)

- 공개재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 예하 군사법원이 재판일정을 부대 홈페이지 및 군 인트라넷, 인터넷 공지사항에 공지하도록 하고, 재판 방청결과를 매 분기 보고하게 함
- 재판안내 브로셔를 제작하여 부대 행정안내실 및 TMO에 배포함에 따라 재판방청객이 증가하였고, 이는 군사재판 진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됨
- 공개되지 않은 재판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결과 및 공개할 수 있는 재판의 내용에 대하여 언론보도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예정

● 군사법원 전자법정화 지속 추진('18. 1.)

- '17년 10월 증거조사절차 등의 공판사무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군 군사법정에 신규 영상녹화장비(실물화상기, 영상녹화용 PC, 증거 재생용 노트북 등)를 도입함에 따라 장비 운용 중 신규 장비에 대한 상황별 사용 절차 등의 사용방법을 체계화하고 이를 안내함에 따라 원활한 공판수행이 되었음
- 이에 따라, 도입된 장비를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관리하고, 군사법원 전자법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 계층 간 전자법정화를 위해 도입될 수 있는 장비 또는 발전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제시 받아 이를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군사법원 창설 18주년 기념행사 실시('18. 6.)

- '18. 6. 29. 해군 군사법정에서 군사법원 창설 18주년 행사를 기념하고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부대구조 개편과 실무적 운영 방안, 해군 군사법원 업무 규정 개정 초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를 함에 따라 해군 군사법원이 국방개혁 2.0 군사법개혁안에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
- 군사법원의 창설 역사를 되새기며 해군 군사법원의 한 일원으로써 자긍심을 가지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축복함

● '18년 군판사·법원서기 회의 및 직무교육 시행('18. 7.)

'18. 7. 12. 해군본부 군사법정에서 군판사·법원서기 회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現 군사법원에서 논의되어온 영정전담 군판사 미보직 상황 下 본안 재판부 구성에 대한 사항, 참고인과의 통화내용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수사 보고서의 증거능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문제사항을 개선시키고 각 법원 구성원들의 실무능력을 향상 시키어 각 부대간 통일된 절차수행을 도모하고 실무 지식을 함양 하는 계기가 됨

● **비상사태 대비 군사법원 재구축 훈련('18. 11.)**

'18. 11. 1. 3함대사령부 1부두에서 비상사태 대비 군사법원 재구축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전시·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법원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숙달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어 군사법원 소산 이동 재구축에 만전을 기함

● **군사법원 실무서 발간**

도서명	목적 및 결과	비고
'18년 군사재판 실무	군사재판 실무서를 발간함으로써 각 다른 예하부대의 업무를 통일시키고 순환보직에 의하여 법원의 업무를 처음 접하게 되더라도, 실무서에 의지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현재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 의하여 변화된 실무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된 실무서를 배부하여 즉시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018-07-10 발간
'18년 군사법원 주요법령 및 최신판례	주요 법령과 최신판례를 발간함으로써 매년 실무자들이 법원업무 시 변화된 양형, 판단조건 등의 변화된 트렌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017-10-30 발간
'18년 해군 군판사·법원서기 회의 자료집	당해 년도의 군판사·법원서기 회의에서 해군의 군판사·법원서기가 모두 모여 불필요한 업무절차를 배척하고 효율적인 공판수행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회의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여 이를 발간함으로써 한없이 발전에 부응하는 해군 군사법원의 의지를 담아냄	2018-12-26 발간

□ 공군 군사법원

부서	직책	현보직		비고
		계(직)급	성명	
지휘부	군사법원장	공군대령	김종대	
재판1부	재판1부장(겸직)	대령	김종대	
	보통법원판사	중령	정기화	
	보통법원판사	소령	신소열	
	재판연구관	중위	김한결	
	재판연구관	중위	김성훈	
	합의재판사무담당	4급	김종만	
	단독재판사무담당	상사	이정길	
재판2부	재판2부장	중령	이형일	
	보통법원판사	소령	방지혁	
	보통법원판사	소령	홍지연	
	재판연구관	중위	이일엽	
	합의재판사무담당	9급	이여진	
국선번호부	국선번호부장	대위(진)	류형우	
	국선번호장교	대위(진)	이준구	
		중위	최석원	
국선번호사무담당	원사	전용진		
행정과	행정과장	준위	염규중	
	행정담당	상사	김일환	
	속기사	8급	염혜정	
	속기사	8급	이기문	
	행정병	병병	배민기	
	재판지원운전병	상장	심창석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재판부

- 업무편중 해소 통한 재판신속성 강화
 - 재판 1·2부간 업무분장: 오산 이복 부대(8·10·18비) 사건을 2부로 이관
- 법원서기 임무수행 기회 확대 등 재판업무 효율성 제고
 - 비행단 공판사건은 해당 비행단 서기가 임무 수행
- 군사법원 예규 일괄 개정 작업
 - 예규 통폐합, 국방부 통일서식 사용, 예규별 담당자 지정 등
- 군판사 업무 매뉴얼 개정(군인사법, 아청법 개정사항 반영 등)
- 법원서기 업무전문성 강화
 - 전군 법원서기 직무교육, 증인지원관 교육, 법원정보체계 및 비실명화 작업 교육

● 장병 법률상담 등

- 법률상담
 - 장병(인트라넷, 전화, 방문) 법률상담 약 90건
 - 시민(계룡시청 격주 2시간) 법률상담 약 60건
- 법률산책(일반 법률상식 등) 인트라넷 공지 8회
 - 증여와 관련된 법률문제, 주택 매매 및 보유시 세금 등

● 제15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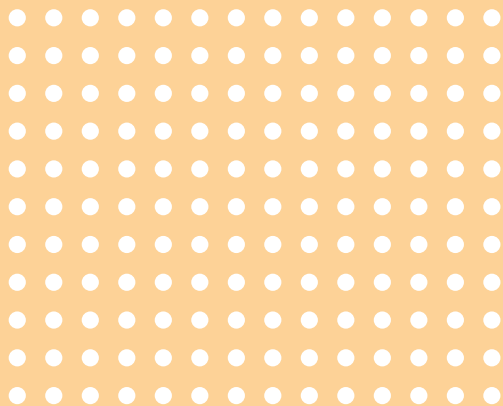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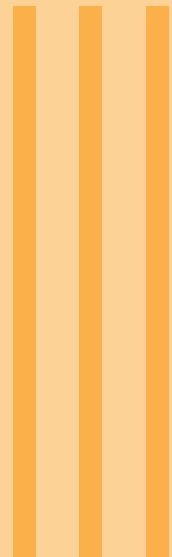
- 일자/장소/주관 : '18. 11. 15.(목) / 공군회관 / 참모총장
- 주제 : 군 항공우주법의 발전방향 (공역 및 무인항공기를 중심으로)
- 참석인원 : 약 300명

● 예하부대 법정 개선

- 법정 노후비품 교체 / 증인보호용 가림막 설치 등
 - 16개 부대 법정(총 5,000만 원 배정)



2018년
사건 통계현황



◆ 일러두기(사법연감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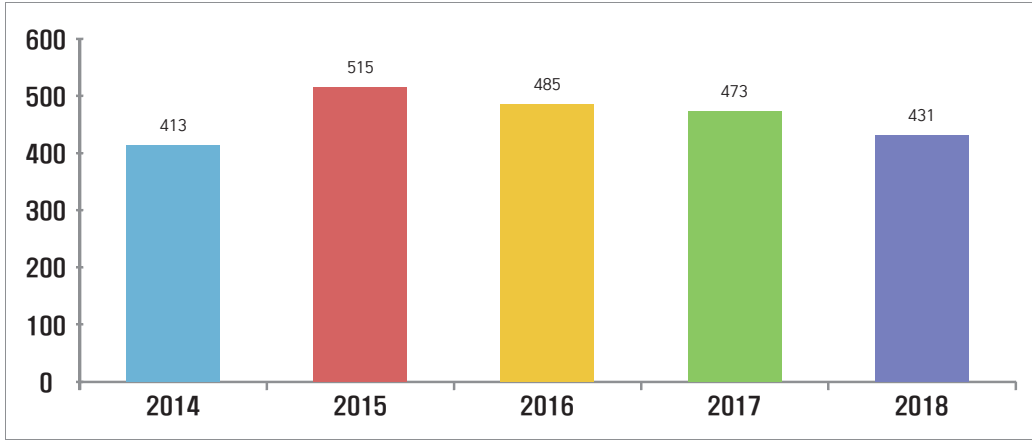
- 사건은 인원수(명)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접수”는 해당 연도에 새로이 접수된 사건을 의미함
- “처리”는 이월 사건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에 처리한 사건을 의미함
 - * 단, 육군의 경우 자체 사건통계시스템상 해당 연도 접수사건 기준으로 작성됨
- 약식사건 처분별 처리결과에서 ‘기타’는 공판절차회부와 이송만 기재하고, 정식재판청구는 별금에 기재함
- 경합사건의 죄명은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명만으로 기재함
-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형으로 기재함
- 기소죄명과 처분죄명이 다를 경우 접수에는 기소죄명을, 처리에는 처분죄명을 기준으로 각각 기재함
- 신분별 현황에서 ‘생도’는 민간인에 기재함
- 표 또는 도표 중 “기타”는 구분된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건수를 나타냄



고등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접수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명	413	515	485	473	431

○ 분석

- 2015년 이후 항소사건 접수 감소 추세
- 2018년 전년 대비 항소사건 접수 8.9% 감소

2. 2018년 항소사건 군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명 (비율)	431 (100)	29 (6.7)	324 (75.2)	29 (6.7)	49 (11.4)

2-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군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317 (100)	141 (6.1)	1,823 (78.7)	199 (8.6)	154 (6.6)
2014년	명 (비율)	413 (100)	11 (2.7)	358 (86.7)	27 (6.5)	17 (4.1)
2015년	명 (비율)	515 (100)	34 (6.6)	415 (80.6)	40 (7.8)	26 (5)
2016년	명 (비율)	485 (100)	31 (6.4)	369 (76.1)	47 (9.7)	38 (7.8)
2017년	명 (비율)	473 (100)	36 (7.6)	357 (75.5)	56 (11.8)	24 (5.1)
2018년	명 (비율)	431 (100)	29 (6.7)	324 (75.2)	29 (6.7)	49 (11.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항소사건 접수 중 육군 78.7%, 해군 8.6%, 공군 6.6%, 국방부 6.1% 차지
- 연도별 군별 접수 비율 유사, 2014년 이후 육군 사건 감소, 해군 및 공군 사건 증가 추세
- 2018년 육군 75.2%, 공군 11.4%, 해군 및 국방부 각 6.7%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공군 사건 증가, 국방부 및 해군 사건 감소

3. 2018년 항소사건 항소인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431 (100)	165 (38.3)	120 (27.8)	146 (33.9)

3-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항소인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317 (100)	1,043 (45)	552 (23.8)	722 (31.2)
2014년	명 (비율)	413 (100)	198 (47.9)	87 (21.2)	128 (31)
2015년	명 (비율)	515 (100)	257 (49.9)	109 (21.2)	149 (28.9)
2016년	명 (비율)	485 (100)	204 (42.1)	121 (24.9)	160 (33)
2017년	명 (비율)	473 (100)	219 (46.3)	115 (24.3)	139 (29.4)
2018년	명 (비율)	431 (100)	165 (38.3)	120 (27.8)	146 (33.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피고인 항소 45%, 군검사 항소 23.8%, 쌍방 항소 31.2%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피고인의 항소율 감소, 군검사의 항소율 증가 추세
- 2018년 항소사건 중 피고인 항소 38.3%, 군검사 항소 27.8%, 쌍방 항소 33.9%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피고인 항소율 감소, 군검사 및 쌍방 항소율 증가

4. 2018년 항소사건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431 (100)	90 (20.9)	147 (34.1)	174 (40.4)	16 (3.7)	4 (0.9)

4-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317 (100)	415 (17.9)	592 (25.6)	1,202 (51.9)	78 (3.4)	30 (1.3)
2014년	명 (비율)	413 (100)	51 (12.3)	86 (20.8)	263 (63.7)	13 (3.1)	0 (0)
2015년	명 (비율)	515 (100)	88 (17.1)	113 (21.9)	289 (56.1)	12 (2.3)	13 (2.5)
2016년	명 (비율)	485 (100)	87 (17.9)	132 (27.2)	238 (49.1)	17 (3.5)	11 (2.3)
2017년	명 (비율)	473 (100)	99 (20.9)	114 (24.1)	238 (50.3)	20 (4.2)	2 (0.4)
2018년	명 (비율)	431 (100)	90 (20.9)	147 (34.1)	174 (40.4)	16 (3.7)	4 (0.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병 51.9%, 준·부사관 25.6%, 장교 17.9%, 군무원 3.4%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장교 및 준·부사관 사건 증가, 병 사건 감소 추세
- 2018년 접수 중 병 40.4%, 준·부사관 34.1%, 장교 20.9%, 군무원 3.7%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준·부사관 사건 증가, 병 및 군무원 사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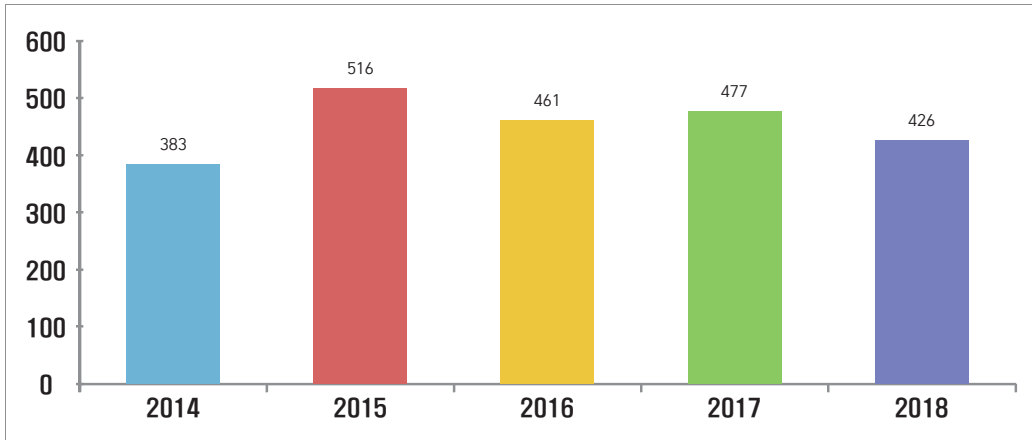
5. 2018년 항소사건 신분별·범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431	90	147	174	16	4
군형법 범법	간첩이적	0				
	군무이탈	6		6		
	상관에관한죄	12	3	5	4	
	군용물관련죄	4		3		1
	초병에관한죄	6	1	2	3	
	성범죄(군인등)	71	24	24	19	4
	기타	0				
주요형법 범법	내란소요죄	0				
	뇌물에관한죄	2	1			1
	문서인장죄	5	3	1		1
	살인의죄	2	1		1	
	과실치사상죄	1		1		
	절도강도의죄	6		1	5	
	사기횡령배임죄	38	5	11	19	3
풍속에관한죄	0					
교통 범법	교통법위반	12	2	6	4	
	도교법위반	13	3	4	5	1
	특가법(도주)	8		3	5	
성법 범법	형법위반	60	6	21	33	
	성폭법위반	26	1	7	18	
	아청법위반	12		1	11	
	성매매특별법	3	1	2		
폭력 범법	상해,폭행	39	7	24	8	
	상해등치사	0				
	폭처법위반	6		3	3	
군사기밀보호법	6	4				2
국가보안법	0					
기타	93	28	28	30	6	1

○ 분석

- 2018년 접수 중 성범죄(군형법 포함) 39.9%, 주요형법범 12.5%, 폭력범죄 10.4%, 교통범죄 7.6%,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6.5% 차지
- 신분별 주요 범죄 비율
 - 장교: 성범죄(군형법 포함) 35.6%, 주요형법범 11.1%
 - 준·부사관: 성범죄(군형법 포함) 37.4%, 폭력범죄 18.3%
 - 병: 성범죄(군형법 포함) 46.5%, 주요형법범 14.3%
 - 군무원: 주요형법범 31.2%, 성범죄(군형법 포함) 25%
 - 민간인: 군사기밀보호법 50%

6.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처리 결과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명	383	516	461	477	426

○ 분석

- 2015년 이후 항소사건 처리 감소 추세
- 2018년 전년 대비 항소사건 처리 10.6% 감소

7. 2018년 항소사건 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명 (비율)	426 (100)	33 (7.7)	324 (76.1)	38 (8.9)	31 (7.3)

7-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63 (100)	134 (5.9)	1,793 (79.2)	203 (9)	133 (5.9)
2014년	명 (비율)	383 (100)	17 (4.4)	328 (85.6)	28 (7.3)	10 (2.6)
2015년	명 (비율)	516 (100)	22 (4.3)	423 (82)	45(8.7)	26 (5)
2016년	명 (비율)	461 (100)	28 (6.1)	367 (79.6)	29 (6.3)	37 (8)
2017년	명 (비율)	477 (100)	34 (7.1)	351 (73.6)	63 (13.2)	29 (6.1)
2018년	명 (비율)	426 (100)	33 (7.7)	324 (76.1)	38 (8.9)	31 (7.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항소사건 처리 중 육군 79.2%, 해군 9%, 국방부 및 공군 각 5.9% 차지
- 연도별 군별 처리 비율 국방부 및 공군 증가, 육군 감소 추세
- 2018년 육군 76.1%, 해군 8.9%, 국방부 7.7%, 공군 7.3%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육군 및 공군 사건 증가, 해군 사건 감소, 국방부 사건 유사

8. 2018년 항소사건 구속 / 불구속 현황

구분	합계	구속	불구속
명 (비율)	426 (100)	88 (20.7)	338 (79.3)

8-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구속 / 불구속 현황

구분	합계	구속	불구속
5년 평균율	2,263 (100)	715 (31.6)	1,548 (68.4)
2014년	383 (100)	161 (42)	222 (58)
2015년	516 (100)	192 (37.2)	324 (62.8)
2016년	461 (100)	148 (32.1)	313 (67.9)
2017년	477 (100)	126 (26.4)	351 (73.6)
2018년	426 (100)	88 (20.7)	338 (79.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구속 사건 31.6%, 불구속 사건 68.4%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구속 사건 감소, 불구속 사건 증가 추세
- 2018년 항소사건 중 구속 사건 20.7%, 불구속 사건 79.3%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구속 사건 감소, 불구속 사건 증가

9. 2018년 항소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판결					항소취하	이송 등	1심 판결 파기율
		파기자판				항소기각			
		소계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명 (비율)	426 (100)	192 (45.1)	69 (16.2)	31 (7.3)	92 (21.6)	162 (38)	18 (4.2)	54 (12.7)	54%

※ 1심 판결 파기율 = 파기인원 / 판결인원 × 100 [항소취하, 이송 등 제외]

9-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판결					항소취하	이송 등	1심 판결 파기율	
		파기자판				항소기각				
		소계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263 (100)	1,021 (45)	251 (11)	148 (6.5)	622 (27.5)	832 (36.8)	128 (5.7)	283 (12.5)	55%
2014년	명 (비율)	383 (100)	213 (55.6)	45 (11.7)	37 (9.7)	131 (34.2)	125 (32.6)	10 (2.6)	35 (9.1)	63%
2015년	명 (비율)	516 (100)	238 (46.1)	44 (8.5)	28 (5.4)	166 (32.2)	175 (33.9)	42 (8.1)	61 (11.8)	58%
2016년	명 (비율)	461 (100)	175 (38)	40 (8.7)	17 (3.7)	118 (25.6)	183 (39.7)	35 (7.6)	68 (14.8)	49%
2017년	명 (비율)	477 (100)	203 (42.6)	53 (11.2)	35 (7.3)	115 (24.1)	187 (39.2)	23 (4.8)	64 (13.4)	52%
2018년	명 (비율)	426 (100)	192 (45.1)	69 (16.2)	31 (7.3)	92 (21.6)	162 (38)	18 (4.2)	54 (12.7)	5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1심 파기 45%, 항소기각 36.8%, 이송 등 12.5%, 항소취하 5.7%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1심 파기 중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증가, 양형 감경 감소 추세
- 2018년 항소사건 중 1심 판결 파기율 54%, 전년 대비 파기율 증가

10. 2018년 항소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426 (100)	79 (18.5)	133 (31.2)	193 (45.3)	19 (4.5)	2 (0.5)

10-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63 (100)	389 (17.2)	549(24.3)	1,230 (54.4)	76 (3.4)	19 (0.8)
2014년	명 (비율)	383 (100)	55 (14.4)	71 (18.5)	244 (63.7)	11 (2.9)	2 (0.5)
2015년	명 (비율)	516 (100)	63 (12.2)	120 (23.3)	314 (60.9)	15 (2.9)	4 (0.8)
2016년	명 (비율)	461 (100)	99 (21.5)	99 (21.5)	249 (54)	8 (1.7)	6 (1.3)
2017년	명 (비율)	477 (100)	93 (19.5)	126 (26.4)	230 (48.2)	23 (4.8)	5 (1)
2018년	명 (비율)	426 (100)	79 (18.5)	133 (31.2)	193 (45.3)	19 (4.5)	2 (0.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병 54.4%, 준·부사관 24.3%, 장교 17.2%, 군무원 3.4%, 민간인 0.8%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병 사건만 감소, 타 신분은 계속 변동
- 2018년 병 45.3%, 준·부사관 31.2%, 장교 18.5%, 군무원 4.5%, 민간인 0.5%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준·부사관 사건 증가, 장교 및 병 사건 감소

11. 2018년 항소사건 범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군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타
명 (비율)	426 (100)	26 (6.1)	62 (14.6)	36 (8.5)	163 (38.3)	61 (14.3)	6 (1.4)	72 (16.9)

11-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범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군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63 (100)	278 (12.3)	338 (14.9)	170 (7.5)	822 (36.3)	366 (16.2)	30 (1.3)	259 (11.4)
2014년	명 (비율)	383 (100)	90 (23.5)	51 (13.3)	27 (7)	124 (32.4)	69 (18)	7 (1.8)	15 (3.9)
2015년	명 (비율)	516 (100)	60 (11.6)	79 (15.3)	37 (7.2)	182 (35.3)	108 (20.9)	4 (0.8)	46 (8.9)
2016년	명 (비율)	461 (100)	55 (11.9)	72 (15.6)	36 (7.8)	163 (35.4)	84 (18.2)	9 (2)	42 (9.1)
2017년	명 (비율)	477 (100)	47 (9.9)	74 (15.5)	34 (7.1)	190 (39.8)	44 (9.2)	4 (0.8)	84 (17.6)
2018년	명 (비율)	426 (100)	26 (6.1)	62 (14.6)	36 (8.5)	163 (38.3)	61 (14.3)	6 (1.4)	72 (16.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성범죄(군형법 포함) 36.3%, 폭력범죄 16.2%, 주요형법범 14.9%,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2.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성범죄 증가, 군형법범 및 폭력범죄 감소 추세
- 2018년 항소사건 중 성범죄(군형법 포함) 38.3%, 주요형법범 14.6%, 폭력범죄 14.3%,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6.1%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폭력범죄 증가,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감소

12. 2018년 항소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426 (100)	0 (0)	63 (14.8)	115 (27)	109 (25.6)	7 (1.6)	58 (13.6)	74 (17.4)

※ 이송 등: 이송(54), 항소취하(18), 자격정지(1), 공소기각(1)

12-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263 (100)	1 (≒0)	479 (21.2)	647 (28.6)	423 (18.7)	93 (4.1)	208 (9.2)	412 (18.2)
2014년	명 (비율)	383 (100)	0 (0)	102 (26.6)	128 (33.4)	56 (14.6)	32 (8.4)	20 (5.2)	45 (11.7)
2015년	명 (비율)	516 (100)	1 (0.2)	121 (23.4)	155 (30)	80 (15.5)	18 (3.5)	38 (7.4)	103 (20)
2016년	명 (비율)	461 (100)	0 (0)	102 (22.1)	122 (26.5)	74 (16.1)	20 (4.3)	40 (8.7)	103 (22.3)
2017년	명 (비율)	477 (100)	0 (0)	91 (19.1)	127 (26.6)	104 (21.8)	16 (3.4)	52 (10.9)	87 (18.2)
2018년	명 (비율)	426 (100)	0 (0)	63 (14.8)	115 (27)	109 (25.6)	7 (1.6)	58 (13.6)	74 (17.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집행유예 28.6%, 자유형 21.2%, 재산형 18.7%, 무죄 9.2%, 선고유예 4.1%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재산형 및 무죄 증가, 자유형 및 선고유예 감소 추세
- 2018년 항소사건 중 집행유예 27%, 재산형 25.6%, 자유형 14.8%, 무죄 13.6%, 선고유예 1.6%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재산형 및 무죄 증가, 자유형 및 선고유예 감소

13. 2018년 항소사건 범죄별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합계	426	0	63	115	109	7	58	74	
민사범죄	간접이적	0							
	군무이탈	6		3	2		1		
	상관에관한죄	11			9			2	
	군용물관련죄	4		1	2	1			
	초병에관한죄	5		1	4				
	성범죄(군인등)	53		10	19	3	4	6	11
	기타	0							
주주	내란소요죄	0							
	뇌물에관한죄	8		2	2		3	1	
	문서인장죄	12		2	1	2		7	
	살인의죄	1		1					
	과실치사상죄	1						1	
	절도강도의죄	7		1	2	2		1	1
	사기횡령배임죄	34		9	9	8		3	5
	풍속에관한죄	0							
교도	교특법위반	14		1		11		2	
	도교법위반	13		1	2	6	1	1	
	특가법(도주)	9		1	3	2	1	2	
형법	형법위반	59		8	21	16		7	7
	성폭법위반	34		7	5	13	1	1	7
	아청법위반	13		2	4	1		1	5
	성매매특별법	4				3			1
폭	상해, 폭행	50		6	13	17	1	3	10
	상해등치사	0							
	폭처법위반	10		1	1	2		4	2
	군사기밀보호법	6				4		2	
국가보안법	0								
기타	72		6	12	22		16	16	

○ 분석

- 성범죄(군형법 포함) 38.2%, 주요형법범 14.8%, 폭력범죄 14.1%,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6.1% 차지
- 성범죄(군형법 포함)의 경우 집행유예 30%, 재산형 22%, 자유형 16.5%, 무죄 9.2% 차지
- 주요형법범의 경우 자유형 23.8%, 집행유예 및 무죄 각 22.2%, 재산형 19% 차지

14. 2018년 항소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합계	426	0	63	115	109	7	58	74
장교	장성	0						
	영관	50		6	7	18		16
	위관	29		3	12	5		5
준·부사관	133		16	41	33	4	21	18
병	193		35	52	47	2	10	47
군무원	19		3	2	6	1	6	1
민간인	2			1				1

○ 분석

- 장교 사건의 경우 재산형 29.1%, 무죄 26.5%, 집행유예 24%, 자유형 11.3% 차지
- 준·부사관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30.8%, 재산형 24.8%, 무죄 15.7%, 자유형 12% 차지
- 병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26.9%, 재산형 24.3%, 자유형 18.1%, 무죄 5.1% 차지
- 군무원 사건의 경우 재산형 및 무죄 각 31.5%, 자유형 15.7%, 집행유예 10.5% 차지
- 민간인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50% 차지

15. 2018년 항소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63 (100)	0 (0)	1 (1.6)	3 (4.8)	4 (6.3)	40 (63.5)	15 (23.8)

15-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79 (100)	0 (0)	13 (2.7)	46 (9.6)	62 (12.9)	247 (51.6)	111 (23.2)
2014년	명 (비율)	102 (100)	0 (0)	2 (2)	9 (9)	15 (15)	56 (56)	20 (20)
2015년	명 (비율)	121 (100)	0 (0)	7 (5.8)	10 (8.3)	13 (10.7)	61 (50.4)	30 (24.8)
2016년	명 (비율)	102 (100)	0 (0)	3 (3)	18 (18)	12 (12)	44 (44)	25 (25)
2017년	명 (비율)	91 (100)	0 (0)	0 (0)	6 (6.6)	18 (19.8)	46 (50.5)	21 (23.1)
2018년	명 (비율)	63 (100)	0 (0)	1 (1.6)	3 (4.8)	4 (6.3)	40 (63.5)	15 (23.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1년 이상 3년 미만 51.6%, 3년 이상 25.2%, 1년 미만 23.2%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3년 미만 증가 추세
- 2018년 1년 이상 3년 미만 63.5%, 1년 미만 23.8%, 3년 이상 12.7%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1년 이상 3년 미만 증가, 3년 이상 감소

16. 2018년 항소사건 처리일수

구 분	합계	사건처리 일수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명 (비율)	426 (100)	49 (11.5)	15 (3.5)	43 (10.1)	86 (20.2)	99 (23.2)	60 (14.1)	28 (6.6)	21 (4.9)	11 (2.6)	14 (3.3)

16-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처리일수

구 분		합계	사건처리 일수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63 (100)	308 (13.6)	191 (8.4)	281 (12.4)	446 (19.7)	406 (17.9)	297 (13.1)	143 (6.3)	90 (4.0)	48 (2.1)	53 (2.3)
2014년	명 (비율)	383 (100)	59 (15.4)	42 (11)	57 (14.9)	65 (17)	55 (14.4)	42 (11)	27 (7)	14 (3.7)	5 (1.3)	17 (4.4)
2015년	명 (비율)	516 (100)	95 (18.4)	65 (12.6)	71 (13.8)	92 (17.8)	75 (14.5)	55 (10.7)	30 (5.8)	21 (4.1)	5 (1)	7 (1.4)
2016년	명 (비율)	461 (100)	60 (13)	38 (8.2)	49 (10.6)	81 (17.6)	85 (18.4)	82 (17.8)	29 (6.3)	13 (2.8)	14 (3)	10 (2.2)
2017년	명 (비율)	477 (100)	45 (9.4)	31 (6.5)	61 (12.8)	122 (25.6)	92 (19.3)	58 (12.2)	29 (6.1)	21 (4.4)	13 (2.7)	5 (1.0)
2018년	명 (비율)	426 (100)	49 (11.5)	15 (3.5)	43 (10.1)	86 (20.2)	99 (23.2)	60 (14.1)	28 (6.6)	21 (4.9)	11 (2.6)	14 (3.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처리 중 120일 이내 34.5%, 121일 이상 210일 이내 50.8%, 211일 이상 14.7%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120일 이내 감소, 121일 이상 증가 추세
- 2018년 처리 중 120일 이내 25.1%, 121일 이상 210일 이내 57.5%, 211일 이상 17.4%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120일 이내 처리 감소, 120일 이상 210일 이내 처리 유사

17. 2018년 항소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354 (100)	160 (45.2)	119 (33.6)	41 (11.6)	194 (54.8)

※ 이송 등 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17-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853 (100)	925 (49.9)	674 (36.4)	251 (13.5)	928 (50.1)
2014년	명 (비율)	338 (100)	195 (57.7)	147 (43.5)	48 (14.2)	143 (42.3)
2015년	명 (비율)	413 (100)	219 (53)	163 (39.5)	56 (13.6)	194 (47)
2016년	명 (비율)	358 (100)	174 (48.6)	126 (35.2)	48 (13.4)	184 (51.4)
2017년	명 (비율)	390 (100)	177 (45.4)	119 (30.5)	58 (14.9)	213 (54.6)
2018년	명 (비율)	354 (100)	160 (45.2)	119 (33.6)	41 (11.6)	194 (54.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50.1%,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72.9%
- 연도별 분석결과 사선변호인 선임률 증가,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감소 추세
- 2018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54.8%,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74.4%
- 2018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률 유사,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증가

18. 2018년 항소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승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승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승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승	
합계	163	5	8	5		3		2	4	13	12	3	9		7	18	28	18	1	3			22				1	1						
군형법위반	48	3	7			2		2	2	5		3	4		1	4	6						8											
형법위반	59		1	1		1			1	6	5			5	3	7	14	10			1		4											
성폭법위반	38	2		4					1	2	4				1	5	3	7	1	1		6				1								
아청법위반	14										1				2	2	5			1		3												
기타	4										2							1				1												

18-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승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승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승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승
5년 평균율	합계	822	25	51	31	1	25	0	10	35	66	30	19	29	1	17	126	150	53	6	29	0	107	0	5	3	1	2	0	0	0	0	
	군형법위반	263	13	37	0	0	11	0	5	12	47	0	17	10	1	6	19	41	0	1	1	0	38	0	3	0	1	0	0	0	0	0	
	형법위반	235	6	8	7	1	5	0	0	7	10	10	2	16	0	6	30	53	23	2	10	0	36	0	1	0	0	2	0	0	0	0	
	성폭법위반	214	6	5	17	0	4	0	4	12	7	12	0	2	0	1	54	35	20	2	7	0	23	0	1	2	0	0	0	0	0	0	
	아청법위반	96	0	0	6	0	1	0	0	4	2	5	0	1	0	4	23	21	8	1	11	0	9	0	0	0	0	0	0	0	0	0	
	기타	14	0	1	1	0	4	0	1	0	0	3	0	0	0	0	0	0	2	0	0	0	0	1	0	0	1	0	0	0	0	0	
2014년	소계	124	4	10	5	1	4		2	6	7		6	3		1	23	32	8	2	4		5										
	군형법위반	31	1	6			2			1	3		5			1	8	3					1										
	형법위반	32	1	1	1	1				1	2		1	3			6	9	2		1		3										
	성폭법위반	40	2	3	1				2	2	2						7	13	5	1	1					1							
	아청법위반	18			2					2							2	7	1	1	2												
	기타	3			1		2																										
2015년	소계	182	6	5	5		7		12	17	3	3	2		1	5	38	41	8	1	7		17			2	1			1			
	군형법위반	69	3	4			3		6	13		3				1	3	4	16		1		11			1							
	형법위반	42	3		1		1			1	1	1		1		1	8	11	3	1	3		4			1				1			
	성폭법위반	41		1	3		1			4	1	1					16	9	3				2										
	아청법위반	26			1					1	2			1		1	10	5	2		3												
	기타	4					2					1															1						
2016년	소계	163	4	15	6		5		8	11	7	6	5		1	28	23	5		8		29								1			
	군형법위반	56	4	11			3		1	3	10		5	1		2	7					9											
	형법위반	44		3	1					1		2	1	3		4	10	2		2		14								1			
	성폭법위반	42			4		2			3	1	3		1		17	5	1		1		4											
	아청법위반	20			1					1		2				5	1	2		5		2											
	기타	1		1																													
2017년	소계	190	6	13	10		6		5	5	18	8	1	10		3	19	26	14	2	7		34			3							
	군형법위반	59	2	9			1		2		16		1	5		1	1	9		1		9				2							
	형법위반	58	2	3	3		3			3	1	2		4		2	5	9	6	1	3		11										
	성폭법위반	53	2	1	5		1		2	2	1	4		1		9	5	4		4		11				1							
	아청법위반	18			2		1					2				4	3	3				3											
	기타	2							1										1														
2018년	소계	163	5	8	5		3		2	4	13	12	3	9		7	18	28	18	1	3		22			1	1						
	군형법위반	48	3	7			2		2	2	5		3	4		1	4	6				8								1			
	형법위반	59		1	1		1			1	6	5		5		3	7	14	10		1		4										
	성폭법위반	38	2		4					1	2	4				1	5	3	7	1	1		6				1						
	아청법위반	14										1				2	2	5			1		3										
	기타	4										2							1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군형법위반 31.9%, 아청법위반 11.6% 차지, 병 57.2%, 준·부사관 23.9%, 장교 17.3%, 군무원 1.3% 차지, 집행유예 33%, 자유형 22.6%, 재산형 14.2%, 무죄 10.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범죄별 군형법위반 증가, 아청법위반 감소 추세, 신분별 준·부사관 증가, 장교 및 병 감소 추세, 처분별 집행유예·재산형·무죄 증가, 자유형 감소 추세
- 2018년 군형법위반 29.4%, 아청법위반 8.5% 차지, 전년 대비 형법위반 증가
- 2018년 병 55.2%, 준·부사관 29.4%, 장교 14.1% 차지, 전년 대비 준·부사관 증가, 장교 및 병 감소
- 2018년 집행유예 30%, 재산형 22%, 자유형 16.5%, 무죄 9.2% 차지, 전년 대비 집행유예 증가, 자유형·재산형·무죄 감소

19. 2018년 항소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재판결과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2 (100)	0 (0)	1 (50)	0 (0)	0 (0)	0 (0)	1 (50)

19-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재판결과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9 (100)	3 (15.8)	11 (57.9)	0 (0)	0 (0)	2 (10.5)	3 (15.8)
2014년	명 (비율)	2 (100)	0 (0)	2 (100)	0 (0)	0 (0)	0 (0)	0 (0)
2015년	명 (비율)	4 (100)	0 (0)	2 (50)	0 (0)	0 (0)	0 (0)	2 (50)
2016년	명 (비율)	6 (100)	1 (16.7)	5 (83.3)	0 (0)	0 (0)	0 (0)	0 (0)
2017년	명 (비율)	5 (100)	2 (40)	1 (20)	0 (0)	0 (0)	2 (40)	0 (0)
2018년	명 (비율)	2 (100)	0 (0)	1 (50)	0 (0)	0 (0)	0 (0)	1 (5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집행유예 57.9%, 자유형 15.8%, 무죄 10.5% 차지
- 2018년 집행유예 50%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민간인 사건 대폭 감소

20. 2018년 항소사건 무죄 선고 현황(22명)

사건번호	계급	죄명	1심 선고결과	2심 무죄 선고 사유	비고 (상고결과)
2016노15	대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징역2년, 일부 무죄	각 공문서는 모두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음	2018. 2. 7. 군검사 상고
2016노28	중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징역1년		2018. 2. 7. 군검찰 상고
2017노22	소령	무고, 위증	벌금1,000만원, 무고의 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으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	2018. 7. 12. 상고기각
2017노152-1	준위	허위공문서작성 등	벌금500만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 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8. 4. 27. 군검사 상고
2017노194-1	이병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벌금50만원	피고인들은 당시 싸움을 말렸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관된 변소를 선뜻 거짓으로 배척하기도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	—
2017노194-2	이병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벌금50만원		—
2017노215	5급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일부 무죄	국가○○정보체계의 결산보고서에 예비군 중대 구입물품에 대한 예산 집행 명목과 금액을 허위로 입력하고 이를 저장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2017노222	소령	무고	벌금200만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의 고의로 허위사실로써 피해자를 고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018. 11. 9. 상고기각
2017노226	중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벌금500만원, 일부 무죄	피고인에게는 각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음	—
2017노254	하사	군인등강제추행	징역6월, 집행유예1년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 넣은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17노272	중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	벌금500만원	피고인이 당시 접촉사고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사건번호	계급	죄명	1심 선고결과	2심 무죄 선고 사유	비고 (상고결과)
2017노330	중위	무단이탈	벌금300만원,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무죄	영내대기 명령이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하여진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정된 장소를 이탈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018. 11. 30. 상고기각
2017노351	일병	군무이탈	징역6월	피고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움	2018. 4. 24. 상고기각
2017노422	일병	공연음란	벌금200만원	목적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확히 보지는 못한 채 추측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17노429	중위	업무상과실치상	벌금700만원	작업의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결과와의 사이에까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2018. 8. 1. 상고기각
2018노5	대위	무고	벌금600만원	헌병수사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음	—
2018노75	원사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추행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항거할 여유가 없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2018. 11. 27. 군검사 상고
2018노93	중령	군기법위반 (인정된 죄명 군기누설)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위법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인이 사건 메모지를 제시받고 작성 또는 진술한 것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2018. 11. 20. 군검사 상고
2018노97	중령	뇌물수수	징역1년, 벌금2,000만원, 추징1,000만원	사업평가심의소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의 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그 공무원의 지위에서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사례금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후 수뢰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로는 처벌할 수 없음	—
2018노152	소위	준강간미수	무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였고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감음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18. 11. 12. 군검사 상고
2018노177	대령	군인등강간치상	징역8년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내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 내지 협박이나 피고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로 부족함	2018. 11. 14. 군검사 상고
2018노195	소령	군인등강간치상 등	징역10년	피해자의 진술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 내지 협박이나 피고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로 부족함	2018. 11. 22. 군검사 상고

21. 2018년 상고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항소심 판결인원	상고인원	상고율
명	354	173	48.9

21-1. 최근 5년간 상고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항소심 판결인원	상고인원	상고율
5년 평균율	1,853	742	40
2014년	338	101	29.9
2015년	413	128	31
2016년	358	168	46.9
2017년	390	172	44.1
2018년	354	173	48.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대법원 상고율 40%
- 연도별 분석결과 대법원 상고율 증가 추세
- 2018년 대법원 상고율 48.9%, 전년 대비 상고율 증가

22. 2018년 상고사건 처리 결과

구분	합계	판 결					상고취하	기타	2심 판결 파기율
		파 기							
		소계	파기환송	파기이송	공소기각 (파기자판)	상고기각			
명 (비율)	166 (100)	4 (2.4)	4 (2.4)	0 (0)	0 (0)	147 (88.6)	15 (9)	0 (0)	2.6

※ 2심 판결 파기율 = 파기인원 / 판결인원 × 100 [상고취하, 기타 제외]

22-1. 최근 5년간 상고사건 처리 현황

구분	합계	판 결					상고취하	기타	2심 판결 파기율
		파 기							
		소계	파기환송	파기이송	공소기각 (파기자판)	상고기각			
5년 평균율	784 (100)	33 (4.2)	30 (3.8)	1 (0.1)	2 (0.3)	637 (81.3)	114 (14.5)	0 (0)	4.9
2014년	124 (100)	13 (10.5)	10 (8.1)	1 (0.8)	2 (1.6)	87 (70.2)	24 (19.3)	0 (0)	13
2015년	168 (100)	11 (6.5)	11 (6.5)	0 (0)	0 (0)	130 (77.4)	27 (16.1)	0 (0)	7.8
2016년	158 (100)	4 (2.5)	4 (2.5)	0 (0)	0 (0)	134 (84.8)	20 (12.7)	0 (0)	2.9
2017년	168 (100)	1 (0.6)	1 (0.6)	0 (0)	0 (0)	139 (82.7)	28 (16.7)	0 (0)	0.7
2018년	166 (100)	4 (2.4)	4 (2.4)	0 (0)	0 (0)	147 (88.6)	15 (9)	0 (0)	2.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상고기각 81.3%, 파기 4.2%, 상고취하 14.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대법원 상고파기율 계속 5% 이상 되다가, 2016년 이후 감소 추세
- 2018년 2심 판결 파기율 2.6%, 전년 대비 증가
- 2018년 대법원 선고 전 상고취하 9%, 전년 대비 감소

23. 2018년 상고심 파기 환송 현황(4건)

사건번호	죄명	파기사유
2015노354-2	뇌물수수	사업평가심의소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의 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그 공무원의 지위에서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사례금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후수뢰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로는 처벌할 수 없음
2014노255	폭처법위반 등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집단·흥기등폭행)은 헌법재판소의 2015. 9. 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상습폭행)은 2016. 1. 6. 법률 개정으로 삭제 되었으므로 해당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음
2015노57-1	군기법위반등	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취지에 따라 민간법원과 재판권 분리 행사를 위해 파기환송
2018노123	사기 등	원심판결서에 재판관의 날인이 전부 누락되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어 파기환송

※ 법리오해: 1건, 법률개정: 1건, 재판권분리: 1건, 법률위반: 1건

24. 2018년 신청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타
명 (비율)	99 (100)	68 (68.7)	11 (11.1)	7 (7.1)	13 (13.1)

24-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29 (100)	318 (74.1)	38 (8.9)	28 (6.5)	45 (10.5)
2014년	명 (비율)	74 (100)	55 (74.3)	2 (2.7)	8 (10.8)	9 (12.2)
2015년	명 (비율)	83 (100)	55 (66.3)	11 (13.3)	6 (7.2)	11 (13.2)
2016년	명 (비율)	72 (100)	53 (73.6)	10 (13.9)	2 (2.8)	7 (9.7)
2017년	명 (비율)	101 (100)	87 (86)	4 (4)	5 (5)	5 (5)
2018년	명 (비율)	99 (100)	68 (68.7)	11 (11.1)	7 (7.1)	13 (13.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재정신청 74.1%, 보석청구 8.9%, 형사보상청구 6.5% 차지
- 2018년 재정신청 68.7%, 보석청구 11.1%, 형사보상청구 7.1% 차지
- 2018년 전년대비 보석 및 형사보상청구 증가, 재정신청 감소

25. 2018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 타			
	공소제기	기각	이송	계	허가	기각	계	인용	기각	이송	계	인용	기각	이송
70	2	64	4	9	1	8	5	4	1	0	12	3	8	1

25-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 타			
	계	공소제기	기각	이송	계	허가	기각	계	인용	기각	이송	계	인용	기각	이송
5년 평균	307	5	289	13	36	4	32	28	24	3	1	45	3	40	2
2014년	51	2	49	0	2	0	2	7	6	1	0	11	0	11	0
2015년	76	0	76	0	11	1	10	7	6	1	0	10	0	10	0
2016년	61	1	60	0	10	2	8	4	4	0	0	6	0	6	0
2017년	49	0	40	9	4	0	4	5	4	0	1	6	0	5	1
2018년	70	2	64	4	9	1	8	5	4	1	0	12	3	8	1

○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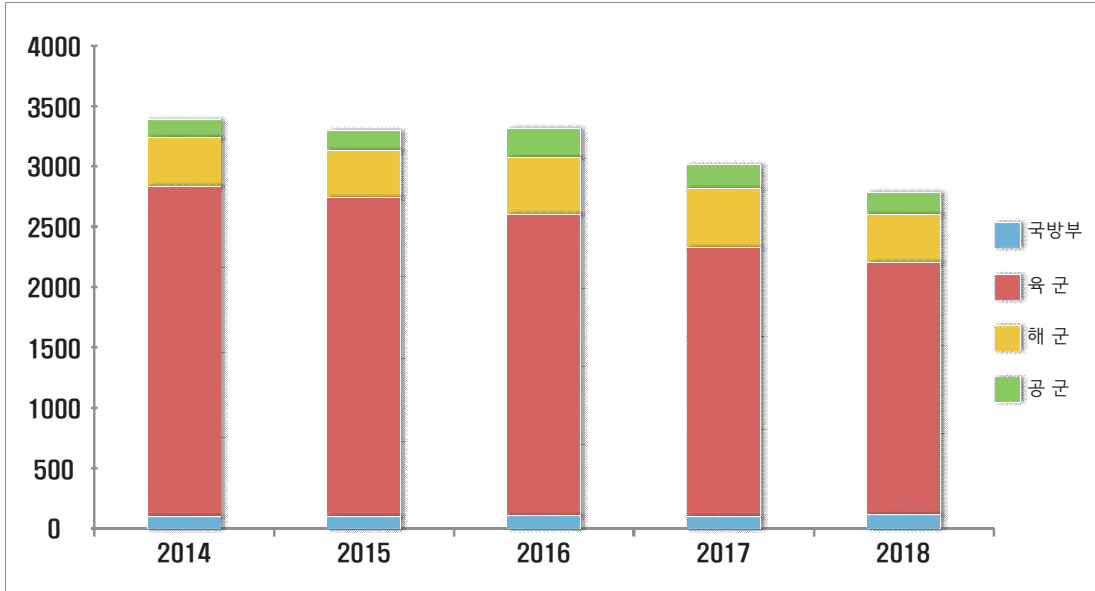
- 최근 5년 평균 재정신청 공소제기율 1.6%, 보석청구 허가율 11.1%, 형사보상청구 기각률 10.7%
- 2018년 재정신청 공소제기율 2.9%, 재정신청 이송률 5.7%(대법원 2016모1891 결정), 보석청구 허가율 11.1%, 형사보상청구 기각률 20%
- 2018년 전년 대비 재정신청 공소제기율, 보석청구 허가율, 형사보상청구 기각률 증가



보통군사법원 종합

□ 국방부/각 군 군사법원

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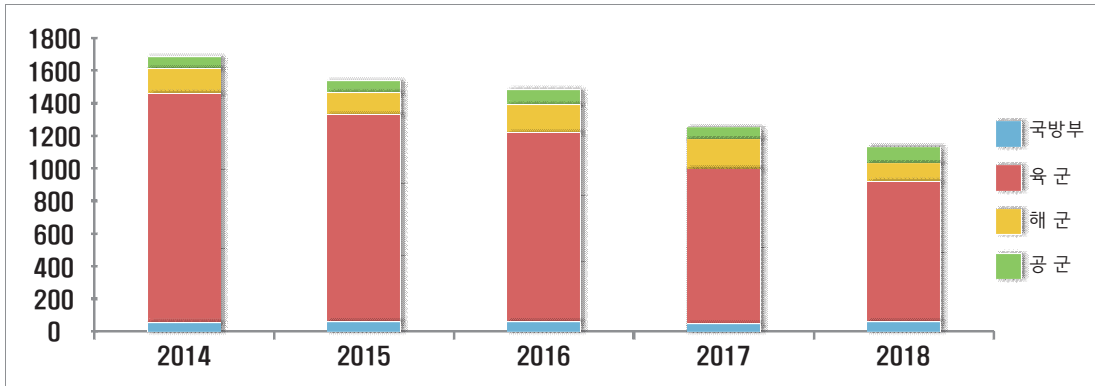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5,770 (100)		470 (3)		12,211 (77)		2,156 (14)		934 (6)	
	공판 약식	7,070 (100)	8,700 (100)	260 (4)	210 (2)	5,638 (79)	6,573 (76)	766 (11)	1,390 (16)	407 (6)	527 (6)
2014년	명 (비율)	3,385 (100)		89 (3)		2,741 (81)		404 (12)		151 (4)	
	공판 약식	1,680 (100)	1,705 (100)	52 (3)	37 (2)	1,402 (83)	1,339 (79)	157 (10)	247 (14)	69 (4)	82 (5)
2015년	명 (비율)	3,292 (100)		91 (3)		2,644 (80)		391 (12)		166 (5)	
	공판 약식	1,538 (100)	1,754 (100)	54 (4)	37 (2)	1,270 (82)	1,374 (79)	139 (9)	252 (14)	75 (5)	91 (5)
2016년	명 (비율)	3,308 (100)		97 (3)		2,499 (76)		474 (14)		238 (7)	
	공판 약식	1,479 (100)	1,829 (100)	54 (4)	43 (2)	1,162 (79)	1,337 (73)	171 (11)	303 (17)	92 (6)	146 (8)
2017년	명 (비율)	3,006 (100)		88 (3)		2,231 (74)		494 (17)		193 (6)	
	공판 약식	1,248 (100)	1,758 (100)	45 (3)	43 (2)	945 (76)	1,286 (73)	184 (15)	310 (18)	74 (6)	119 (7)
2018년	명 (비율)	2,780 (100)		105 (4)		2,096 (75)		393 (14)		186 (7)	
	공판 약식	1,126 (100)	1,654 (100)	55 (5)	50 (3)	859 (77)	1,237 (75)	115 (10)	278 (17)	97 (8)	89 (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형사사건 중 육군 77%, 해군 14%, 공군 6%, 국방부 3% 차지
- 전체 형사사건 감소 추세

2. 최근 5년간 공판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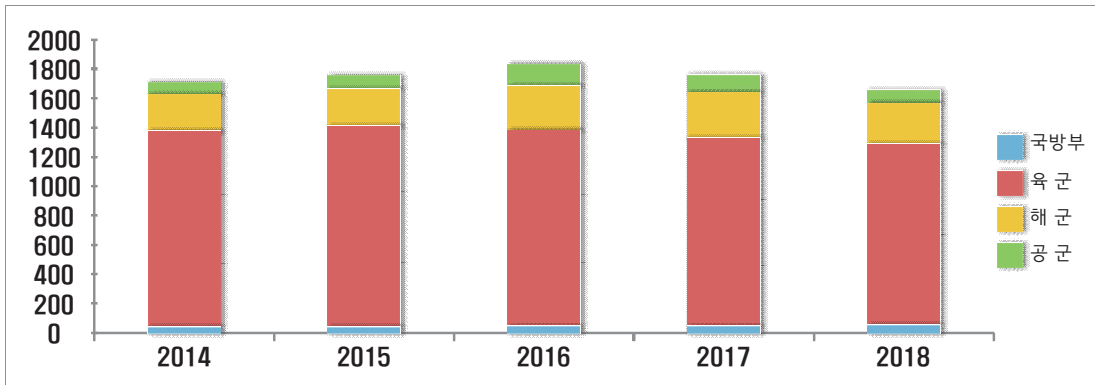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7,071 (100)	260 (4)	5,638 (79)	766 (11)	407 (6)
2014년	명 (비율)	1,680 (100)	52 (3)	1,402 (83)	157 (10)	69 (4)
2015년	명 (비율)	1,538 (100)	54 (4)	1,270 (82)	139 (9)	75 (5)
2016년	명 (비율)	1,479 (100)	54 (4)	1,162 (79)	171 (11)	92 (6)
2017년	명 (비율)	1,248 (100)	45 (3)	945 (76)	184 (15)	74 (6)
2018년	명 (비율)	1,126 (100)	55 (5)	859 (77)	115 (10)	97 (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공판사건 중 육군 79%, 해군 11%, 공군 6%, 국방부 4% 차지
- 육군 사건 감소, 공군 사건 증가 추세

3. 최근 5년간 약식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8,700 (100)	210 (2)	6,573 (76)	1,390 (16)	527 (6)
2014년	명 (비율)	1,705 (100)	37 (2)	1,339 (79)	247 (14)	82 (5)
2015년	명 (비율)	1,754 (100)	37 (2)	1,374 (79)	252 (14)	91 (5)
2016년	명 (비율)	1,829 (100)	43 (2)	1,337 (73)	303 (17)	146 (8)
2017년	명 (비율)	1,758 (100)	43 (2)	1,286 (73)	310 (18)	119 (7)
2018년	명 (비율)	1,654 (100)	50 (3)	1,237 (75)	278 (17)	89 (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약식사건 중 육군 76%, 해군 16%, 공군 6%, 국방부 2% 차지
- 육군 사건 감소, 국방부 사건 증가 추세

4. 2018년 형사사건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비율)	2,780 (100)	329 (13)	862 (23)	1,487 (60)	92 (3)	10 (1)
국방부 (비율)	105 (100)	57 (54.2)	18 (17.1)	12 (11.4)	18 (17.1)	0
육 군 (비율)	2,096 (100)	205 (9.8)	585 (27.9)	1,246 (59.4)	53 (2.5)	7 (0.3)
해 군 (비율)	393 (100)	38 (9.7)	173 (44)	170 (43.3)	11 (2.8)	1 (0.2)
공 군 (비율)	186 (100)	29 (16)	86 (46)	59 (32)	10 (5)	2 (1)

○ 분석

- 2018년 전체 형사사건 신분별 접수 중 병 60%, 준·부사관 23%, 장교 13%, 군무원 3% 차지
- 국방부의 경우 장교 54.2%, 육군의 경우 병 59.4%, 해군의 경우 준·부사관 44%, 공군의 경우 준·부사관 46%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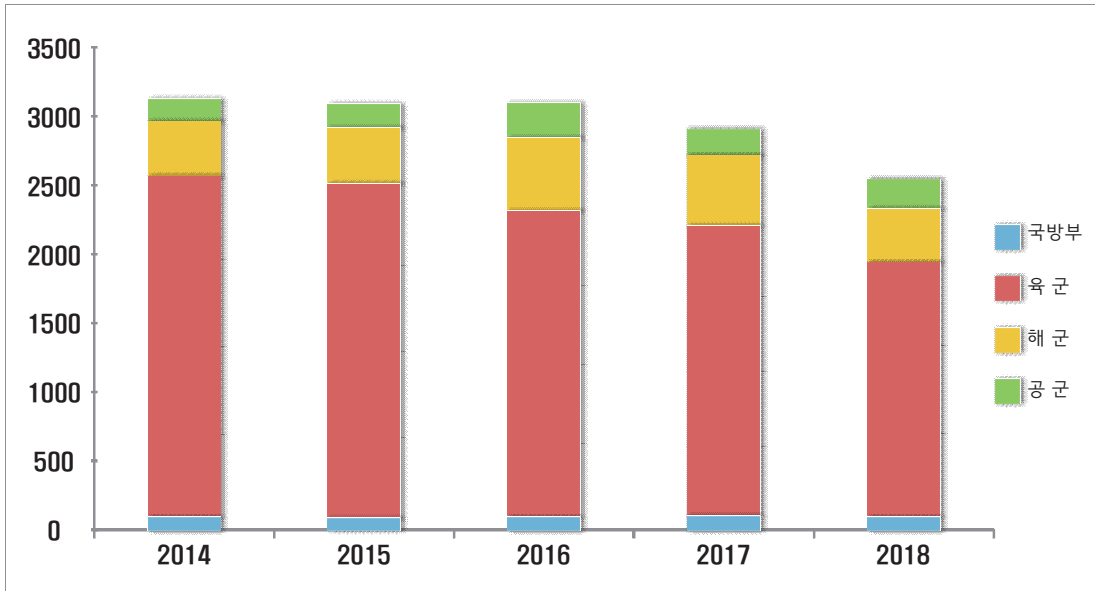
5. 2018년 형사사건 신분별·범죄별 접수 현황

구 분	죄 명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합계	2,780	329	867	1,482	92	10
	군형법(성범죄 제외)	218	14	53	144		7
	주요 형법	431	41	94	283	13	
	교통범죄	829	149	427	206	46	1
	성범죄(군형법 포함)	413	44	93	260	15	1
	폭력범죄	432	29	91	305	7	
	군기법/국보법	3	2	1			
기 타	454	50	108	284	11	1	
국방부	소계	105	57	18	12	18	0
	군형법(성범죄 제외)	3	3				
	주요 형법	27	16	6	1	4	
	교통범죄	29	14	8	2	5	
	성범죄(군형법 포함)	9		2	3	4	
	폭력범죄	10	4	1	2	3	
	군기법/국보법	1		1			
기 타	26	20		4	2		
육 군	소계	2,096	205	590	1,241	53	7
	군형법(성범죄 제외)	157	8	40	105		4
	주요 형법	303	19	46	233	5	
	교통범죄	589	95	290	172	31	1
	성범죄(군형법 포함)	319	35	57	220	6	1
	폭력범죄	329	18	63	246	2	
	군기법/국보법	1	1				
기 타	398	29	94	265	9	1	
해 군	소계	393	38	173	170	11	1
	군형법(성범죄 제외)	37	1	10	25		1
	주요 형법	67	2	23	41	1	
	교통범죄	157	26	99	25	7	
	성범죄(군형법 포함)	48	4	17	25	2	
	폭력범죄	60	3	13	43	1	
	군기법/국보법	1	1				
기 타	23	1	11	11			
공 군	소계	186	29	86	59	10	2
	군형법(성범죄 제외)	21	2	3	14		2
	주요 형법	34	4	19	8	3	
	교통범죄	54	14	30	7	3	
	성범죄(군형법 포함)	37	5	17	12	3	
	폭력범죄	33	4	14	14	1	
	군기법/국보법	0					
기 타	7		3	4			

○ 분석

- 2018년 전체 형사사건 범죄별 접수 중 교통범죄 30%, 폭력범죄 16%, 성범죄(군형법 포함) 15% 차지
- 전체 교통범죄 사건 중 국방부 4%, 육군 71%, 해군 19%, 공군 6% 차지
- 전체 폭력범죄 사건 중 국방부 2%, 육군 76%, 해군 14%, 공군 8% 차지
- 전체 성범죄(군형법 포함) 사건 중 국방부 2%, 육군 77%, 해군 12%, 공군 9% 차지

6.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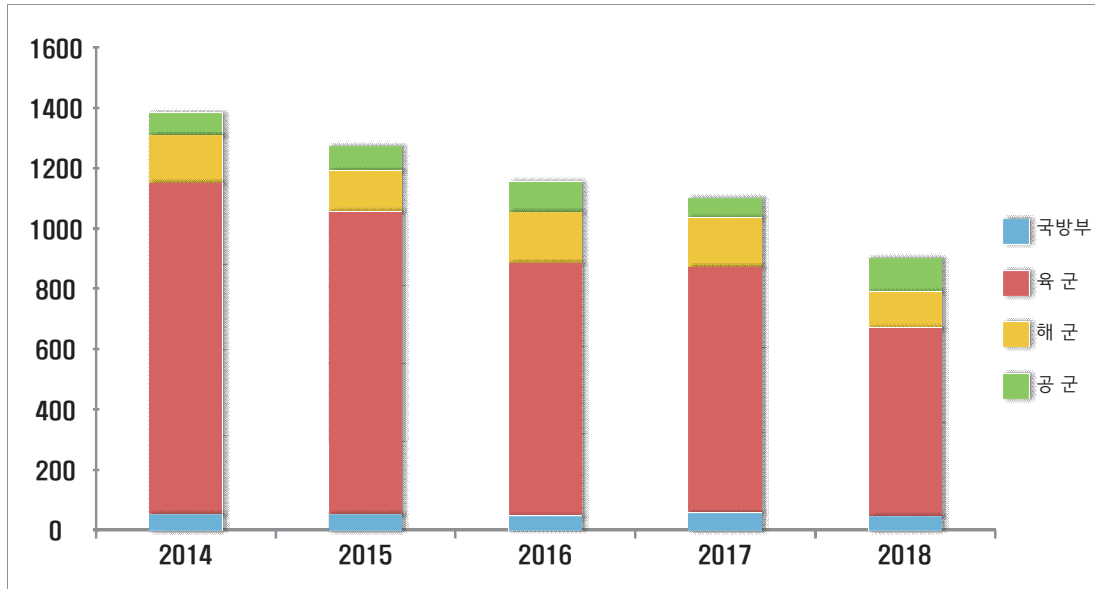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4,742 (100)		461 (3)		11,067 (75)		2,229 (15)		985 (7)	
	공판 약식	5,806 (100)	8,936 (100)	246 (4)	215 (2)	4,378 (75)	6,689 (75)	748 (13)	1,481 (17)	434 (8)	551 (6)
2014년	명 (비율)	3,122 (100)		94 (3)		2,470 (79)		397 (13)		161 (5)	
	공판 약식	1,384 (100)	1,738 (100)	50 (4)	44 (2)	1,098 (79)	1,372 (79)	159 (11)	238 (14)	77 (6)	84 (5)
2015년	명 (비율)	3,086 (100)		84 (3)		2,423 (79)		407 (13)		172 (5)	
	공판 약식	1,271 (100)	1,815 (100)	51 (4)	33 (2)	1,003 (79)	1,420 (78)	136 (11)	271 (15)	81 (6)	91 (5)
2016년	명 (비율)	3,093 (100)		92 (3)		2,220 (72)		530 (17)		251 (8)	
	공판 약식	1,153 (100)	1,940 (100)	46 (4)	46 (2)	838 (73)	1,382 (71)	168 (14)	362 (19)	101 (9)	150 (8)
2017년	명 (비율)	2,901 (100)		98 (3)		2,107 (73)		509 (18)		187 (6)	
	공판 약식	1,099 (100)	1,802 (100)	55 (5)	43 (2)	815 (74)	1,292 (72)	164 (15)	345 (19)	65 (6)	122 (7)
2018년	명 (비율)	2,540 (100)		93 (4)		1,847 (73)		386 (15)		214 (8)	
	공판 약식	899 (100)	1,641 (100)	44 (5)	49 (3)	624 (70)	1,223 (75)	121 (13)	265 (16)	110 (12)	104 (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형사사건 중 육군 75%, 해군 15%, 공군 7%, 국방부 3%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국방부·육군·해군 사건 감소, 공군 사건 증가

7. 최근 5년간 공판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5,806 (100)	246 (4)	4,378 (75)	748 (13)	434 (8)
2014년	명 (비율)	1,384 (100)	50 (4)	1,098 (79)	159 (11)	77 (6)
2015년	명 (비율)	1,271 (100)	51 (4)	1,003 (79)	136 (11)	81 (6)
2016년	명 (비율)	1,153 (100)	46 (4)	838 (73)	168 (14)	101 (9)
2017년	명 (비율)	1,099 (100)	55 (5)	815 (74)	164 (15)	65 (6)
2018년	명 (비율)	899 (100)	44 (5)	624 (70)	121 (13)	110 (1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공판사건 중 육군 75%, 해군 13%, 공군 8%, 국방부 4%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국방부·육군·해군 사건 감소, 공군 사건 증가

8. 2018년 공판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비율)	899 (100)	113 (12)	212 (24)	693 (61)	20 (2)	8 (1)
국방부 (비율)	44 (100)	27 (61)	6 (14)	3 (7)	7 (16)	1 (2)
육 군 (비율)	624 (100)	53 (8)	119 (19)	442 (71)	6 (1)	4 (1)
해 군 (비율)	121 (100)	15 (12)	41 (34)	62 (51)	2 (2)	1 (1)
공 군 (비율)	110 (100)	18 (16)	46 (42)	39 (35)	5 (5)	2 (2)

○ 분석

- 2018년 전체 공판사건 신분별 처리 중 병 61%, 준·부사관 24%, 장교 12% 차지
- 국방부의 경우 장교 61%, 육군의 경우 병 71%, 해군의 경우 병 51%, 공군의 경우 준·부사관 42% 차지

9. 2018년 공판사건 범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군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 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 타
합계 (비율)	899 (100)	154 (17)	162 (18)	77 (8)	248 (28)	124 (14)	5 (1)	129 (14)
국방부 (비율)	44 (100)	2 (5)	15 (34)	1 (2)	5 (11)	3 (7)	3 (7)	15 (34)
육 군 (비율)	624 (100)	105 (17)	104 (17)	51 (8)	171 (27)	88 (14)	1 (≒0)	104 (17)
해 군 (비율)	121 (100)	23 (19)	28 (23)	11 (9)	30 (25)	22 (18)	1 (1)	6 (5)
공 군 (비율)	110 (100)	24 (22)	15 (14)	14 (13)	42 (38)	11 (10)	0	4 (3)

○ 분석

- 2018년 전체 공판사건 범죄별 처리 중 성범죄(군형법 포함) 28%,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7%, 폭력범죄 14% 차지
- 전체 성범죄(군형법 포함) 사건 중 국방부 2%, 육군 69%, 해군 12%, 공군 17% 차지
- 전체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사건 중 국방부 1%, 육군 68%, 해군 15%, 공군 16% 차지
- 전체 폭력범죄 사건 중 국방부 2%, 육군 71%, 해군 18%, 공군 9% 차지

10. 2018년 공판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기타	
합계	합계	899	0	70	293	300	53	46	15	116	6	
	장교	장성	3		2	1						
		영관	50		11	8	11	1	9	2	7	1
		위관	58		2	11	27	8	3	1	5	1
	준·부사관	212		17	62	85	14	21	3	9	1	
	병	546		36	199	170	27	10	9	92	3	
	군무원	20		2	6	6	1	3		2		
민간인	10			6	1	2			1			
국방부	소계	44	0	13	5	9	0	7	0	10	0	
	장교	장성	0									
		영관	24		9	2	2		5		6	
		위관	3				3					
	준·부사관	6		2	1	1		1		1		
	병	3				1				2		
	군무원	7		2	1	2		1		1		
민간인	1			1								
육군	소계	624	0	39	205	208	36	26	12	98	0	
	장교	장성	2		1	1						
		영관	15			4	7		2	1	1	
		위관	36		2	7	16	6	3		2	
	준·부사관	119		7	37	47	9	10	2	7		
	병	442		29	153	135	21	9	9	86		
	군무원	6			1	2		2		1		
민간인	4			2	1				1			
해군	소계	121	0	14	42	47	5	8	3	2	0	
	장교	장성	1		1							
		영관	6		2		1		2	1		
		위관	8			2	4	1		1		
	준·부사관	41		5	10	19	1	5	1			
	병	62		6	29	22	2	1		2		
	군무원	2			1	1						
민간인	1					1						
공군	소계	110	0	4	41	36	12	5	0	6	6	
	장교	장성	0									
		영관	5			2	1	1				1
		위관	11			2	4	1			3	1
	준·부사관	46		3	14	18	4	5		1	1	
	병	39		1	17	12	4			2	3	
	군무원	5			3	1	1					
민간인	4			3		1						

○ 분석

- 2018년 전체 공판사건 처분별 처리 중 재산형 33%, 집행유예 32%, 자유형 8%, 선고유예 6%, 무죄 5% 차지
- 국방부의 경우 처분별 자유형 30%, 재산형 20%, 신분별 장교 61%, 군무원 16% 차지
- 육군의 경우 처분별 재산형 33%, 집행유예 32%, 신분별 병 71%, 준·부사관 19% 차지
- 해군의 경우 처분별 재산형 39%, 집행유예 35%, 신분별 병 51%, 준·부사관 34% 차지
- 공군의 경우 처분별 집행유예 37%, 재산형 33%, 신분별 준·부사관 42%, 병 35% 차지

11. 2018년 공판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합계	합계	929	401	249	127	61	50	21	5	8	4	3
	구 속	128	63	29	15	9	10	2				
	불구속	801	338	220	112	52	40	19	5	8	4	3
국방부	소 계	44	8	2	7	3	13	1	2	3	2	3
	구 속	7	1				6					
	불구속	37	7	2	7	3	7	1	2	3	2	3
육 군	소 계	654	286	202	93	38	25	10	0	0	0	0
	구 속	83	33	26	13	7	3	1				
	불구속	571	253	176	80	31	22	9				
해 군	소 계	121	66	24	12	7	6	3	0	3	0	0
	구 속	24	16	2	2	2	1	1				
	불구속	97	50	22	10	5	5	2		3		
공 군	소 계	110	41	21	15	13	6	7	3	2	2	0
	구 속	14	13	1								
	불구속	96	28	20	15	13	6	7	3	2	2	

○ 분석

- 2018년 전체 공판사건 처리일수 중 120일 이내 처리 84%(구속 84%, 불구속 84%)
- 120일 이내 처리 국방부 39%, 육군 89%, 해군 84%, 공군 70% 차지

12. 2018년 공판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합계 (비율)	70 (100)	0 (0)	1 (1.4)	6 (8.6)	11 (15.7)	35 (50)	17 (24.3)
국방부 (비율)	13 (100)	0 (0)	0 (0)	2 (15.4)	1 (7.7)	8 (61.5)	2 (15.4)
육 군 (비율)	39 (100)	0 (0)	0 (0)	2 (5.1)	5 (12.8)	20 (51.3)	12 (30.8)
해 군 (비율)	14 (100)	0 (0)	1 (7.1)	2 (14.3)	2 (14.3)	6 (42.9)	3 (21.4)
공 군 (비율)	4 (100)	0 (0)	0 (0)	0 (0)	3 (75)	1 (25)	0 (0)

○ 분석

- 2018년 전체 공판사건 자유형 처리 중 1년 이상 3년 미만 50%, 3년 이상 26% 차지
- 자유형 처리 중 1년 이상 3년 미만 국방부 61.5%, 육군 51.3%, 해군 42.9%, 공군 25% 차지
- 자유형 처리 중 3년 이상 국방부 23%, 육군 18%, 해군 36%, 공군 75% 차지

13. 2018년 공판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합계	합계	248	4	13	6	1	3		5	19	22	4	6	1	2	16	64	33	1	5		37	4	1	1		
	군형법위반	104	4	13		1	2		2	14		3	2		1	3	35		1	1		18	2	1	1		
	형법위반	74			2		1		2		10		3			8	15	19		2		11	1				
	성폭법위반	46			2				1	4	7	1	1	1		4	9	11				4	1				
	아청법위반	20			2					1	3				1	1	4	2		2		4					
	기타	4										2					1	1									
국방부	소계	5							1	1			1				1						1				
	군형법위반	2							1				1														
	형법위반	1															1										
	성폭법위반	1																					1				
	아청법위반	1								1																	
	기타																										
육 군	소계	171	1	7	5		3		2	7	11	3	2	1	1	14	48	25	1	5		34				1	
	군형법위반	68	1	7			2			7		2	1	1	1	3	25		1	1		16				1	
	형법위반	57			2		1		2		7		1			6	12	13		2		11					
	성폭법위반	30			2						2	1		1		4	8	9				3					
	아청법위반	13			1						1					1	2	2		2		4					
	기타	3									1						1	1									
해 군	소계	30	3	1					2	7		2			1	9	5										
	군형법위반	11	3	1					2							5											
	형법위반	11									3		1		1	2	4										
	성폭법위반	5									3		1					1									
	아청법위반	3									1						2										
	기타																										
공 군	소계	42		5	1	1			2	9	4	1	1	1	1	7	2				3	3		1			
	군형법위반	23		5		1			1	5		1				5					2	2		1			
	형법위반	5											1		1	1	1					1					
	성폭법위반	10							1	4	2					1	1				1						
	아청법위반	3			1						1			1													
	기타	1									1																

○ 분석

- 2018년 전체 성범죄 처리 중 신분별 병 63%, 준·부사관 24%, 장교 11%, 군무원 2% 차지, 처분별 집행유예 40%, 재산형 25%, 자유형 10% 차지
- 국방부의 경우 집행유예 40%, 재산형 20%, 육군의 경우 집행유예 36%, 재산형 24%, 해군의 경우 집행유예 40%, 재산형 40%, 공군의 경우 집행유예 57%, 재산형 17% 차지

14. 2018년 공판사건 무죄 현황

구 분	범죄유형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합계	41	11	18	9	3	0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7	2	4	1		
	주요 형법범	6	3	2		1	
	교통범죄	2		2			
	성범죄(군형법 포함)	13	3	4	5	1	
	폭력범죄	2		2			
	군기법/국보법	1	1				
기 타	10	2	4	3	1		
국방부	소계	7	5	1	0	1	0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	1				
	주요 형법범	3	2			1	
	교통범죄	0					
	성범죄(군형법 포함)	1		1			
	폭력범죄	0					
	군기법/국보법	1	1				
기 타	1	1					
육 군	소계	26	5	10	9	2	0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4		3	1		
	주요 형법범	2	1	1			
	교통범죄	1		1			
	성범죄(군형법 포함)	11	3	2	5	1	
	폭력범죄	0					
	군기법/국보법	0					
기 타	8	1	3	3	1		
해 군	소계	3	1	2	0	0	0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2	1	1			
	주요 형법범	0					
	교통범죄	1		1			
	성범죄(군형법 포함)	0					
	폭력범죄	0					
	군기법/국보법	0					
기 타	0						
공 군	소계	5	0	5	0	0	0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0					
	주요 형법범	1		1			
	교통범죄	0					
	성범죄(군형법 포함)	1		1			
	폭력범죄	2		2			
	군기법/국보법	0					
기 타	1		1				

○ 분석

- 2018년 전체 무죄 판결 중 신분별 준·부사관 44%, 장교 27%, 병 22%, 군무원 7% 차지, 범죄별 성범죄(군형법 포함) 32%,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7% 차지
- 전체 성범죄(군형법 포함) 사건 중 육군 84%, 국방부 및 공군 각 8% 차지

15. 2018년 공판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합계 (비율)	899 (100)	273 (30)	510 (57)	116 (13)
국방부 (비율)	44 (100)	31 (70.5)	3 (6.8)	10 (22.7)
육 군 (비율)	624 (100)	163 (26.1)	363 (58.2)	98 (15.7)
해 군 (비율)	121 (100)	31 (25.6)	88 (72.7)	2 (1.7)
공 군 (비율)	110 (100)	48 (44)	56 (50)	6 (6)

○ 분석

- 2018년 전체 공판사건 중 1심 확정 57%, 항소 30% 차지(이송 제외한 항소율 35%)
- 이송 제외한 항소율 국방부 91%, 육군 31%, 해군 26%, 공군 46%

16. 2018년 공판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합계 (비율)	273 (100)	104 (38)	58 (21)	111 (41)
국방부 (비율)	31 (100)	2 (6.4)	7 (22.5)	22 (70.9)
육 군 (비율)	163 (100)	78 (47.9)	37 (22.7)	48 (29.4)
해 군 (비율)	31 (100)	14 (45.2)	6 (19.3)	11 (35.5)
공 군 (비율)	48 (100)	10 (21)	8 (17)	30 (62)

○ 분석

- 2018년 전체 공판사건 항소인 현황 피고인 항소 79%, 군검사 항소 62%, 쌍방 항소 41%
- 피고인 항소율 국방부 77%, 육군 77%, 해군 81%, 공군 83%

17. 2018년 공판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 이송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합계 (비율)	721 (100)	492 (68)	113 (16)	379 (52)	229 (32)
국방부 (비율)	34 (100)	6 (17.6)	2 (5.9)	4 (11.7)	28 (82.4)
육 군 (비율)	511 (100)	384 (75.1)	87 (17)	297 (58.1)	127 (24.9)
해 군 (비율)	85 (100)	58 (68.2)	6 (7)	52 (61.2)	27 (31.8)
공 군 (비율)	91 (100)	44 (48)	18 (20)	26 (28)	47 (52)

○ 분석

- 2018년 전체 공판사건 변호인 현황 국선 68%, 사선 32% 차지
- 사선변호인 선임률의 경우 국방부 82.4%, 육군 24.9%, 해군 31.8%, 공군 52% 차지
- 국선변호인 중 변호사 선정률 국방부 33%, 육군 23%, 해군 10%, 공군 41% 차지

18. 2018년 약식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비율)	1,641 (100)	192 (12)	581 (35)	807 (49)	61 (4)	0 (0)
국방부 (비율)	49 (100)	20 (41)	10 (20)	10 (20)	9 (19)	0 (0)
육 군 (비율)	1,223 (100)	127 (10)	393 (32)	666 (55)	37 (3)	0 (0)
해 군 (비율)	265 (100)	27 (10)	126 (48)	103 (39)	9 (3)	0 (0)
공 군 (비율)	104 (100)	18 (15)	52 (54)	28 (26)	6 (5)	0 (0)

○ 분석

- 2018년 전체 약식사건은 신분별로 병 49%, 준·부사관 35%, 장교 12%, 군무원 4% 차지
- 국방부의 경우 장교 41%, 육군의 경우 병 55%, 해군의 경우 준·부사관 48%, 공군의 경우 준·부사관 54% 차지

19. 2018년 약식사건 범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군형법범 (정범죄 제외)	주요 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 타
합계 (비율)	1,641 (100)	32 (2)	225 (14)	705 (43)	101 (6)	287 (17)	0 (0)	291 (18)
국방부 (비율)	49 (100)	0 (0)	4 (8)	28 (58)	3 (6)	7 (14)	0 (0)	7 (14)
육 군 (비율)	1,223 (100)	18 (1)	162 (13)	492 (40)	79 (7)	213 (18)	0 (0)	259 (21)
해 군 (비율)	265 (100)	13 (5)	39 (15)	138 (52)	13 (5)	45 (17)	0	17 (6)
공 군 (비율)	104 (100)	1 (1)	20 (19)	47 (45)	6 (6)	22 (21)	0	8 (8)

○ 분석

- 2018년 전체 약식사건은 범죄별로 교통범죄 43%, 폭력범죄 17% 차지
- 전체 교통범죄 사건 중 국방부 4%, 육군 70%, 해군 19%, 공군 7% 차지

20. 2018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합계 (비율)	1,641 (100)	1,515 (92.3)	79 (4.8)	47 (2.9)
국방부 (비율)	49 (100)	46 (93.9)	3 (6.1)	0 (0)
육 군 (비율)	1,223 (100)	1,119 (91.5)	63 (5.1)	41 (3.4)
해 군 (비율)	265 (100)	251 (94.7)	8 (3)	6 (2.3)
공 군 (비율)	104 (100)	99 (95)	5 (5)	0 (0)

○ 분석

- 2018년 전체 약식사건 중 약식명령 92.3%, 공판절차 회부 4.8%, 이송 2.9% 차지
- 2018년 이송 제외한 공판절차 회부를 국방부 6%, 육군 5%, 해군 3%, 공군 5%

21. 2018년 영장사건 처리 현황

■ 구속영장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16	14 (87.5)	164	114 (69.5)	34	24 (70.6)	15	14 (93)	229	166 (72)

○ 분석

- 2018년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 72%
- 구속영장 발부율 국방부 87.5%, 육군 69.5%, 해군 70.6%, 공군 93%

■ 체포영장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1	0 (0)	27	24 (88.9)	5	5 (100)	5	5 (100)	38	34 (89)

○ 분석

- 2018년 전체 체포영장 발부율 89%
- 체포영장 발부율 국방부 0%, 육군 88.9%, 해군 100%, 공군 100%

■ 압수·수색영장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196	178 (90.8)	283	267 (94.3)	102	98 (96.1)	29	27 (93)	610	570 (93)

○ 분석

- 2018년 전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3%
-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국방부 90.8%, 육군 94.3%, 해군 96.1%, 공군 93%

22. 2018년 구속 관련 신청사건 처리 현황

■ 보석허가청구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6	2 (33.3)	5	1 (20)	1	0 (0)	1	0 (0)	13	3 (23)

○ 분석

- 2018년 전체 보석허가청구 인용률 23%
- 보석허가청구 인용률 국방부 33.3%, 육군 20%, 해군 및 공군 각 0%

■ 구속적부심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2	0 (0)	11	1 (9)	2	0 (0)	1	1 (100)	16	2 (13)

○ 분석

- 2018년 전체 구속적부심청구 인용률 13%
- 구속적부심청구 인용률 국방부 및 해군 각 0%, 육군 9%, 공군 10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 2018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명 (비율)	105 (100)	55 (52.3)	50 (47.6)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70 (100)	260 (55.3)	210 (44.6)
2014년	명 (비율)	89 (100)	52 (58.4)	37 (41.6)
2015년	명 (비율)	91 (100)	54 (59.3)	37 (40.7)
2016년	명 (비율)	97 (100)	54 (55.7)	43 (44.3)
2017년	명 (비율)	88 (100)	45 (51.1)	43 (48.8)
2018년	명 (비율)	105 (100)	55 (52.3)	50 (47.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55%, 약식 사건 45% 차지
- 전년 대비 공판 사건 비율 소폭 증가하였으나, 5년간 감소 추세

2. 2018년 형사사건 범죄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105		57		18		12		18			
	55	50	36	21	8	10	3	9	8	10		
일반 형법 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1		1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등)	2				2						
	기타	2		2								
주요 형법 범	내란소요죄											
	뇌물예관한죄	6		2		1			3			
	문서인장죄	5		5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의죄	1	1			1	1					
	사기공갈죄	6	2	3	1	2		1	1			
	횡령배임죄	5	1	4	1	1						
풍속에관한죄												
교통 범죄	교통법위반		6		2		2				2	
	도교법위반		2				1		1			
	도교법위반(음주)		21		12		5		1		3	
	특가법위반(도주)											
성 범죄	형법위반	3	2					1	2	2		
	성폭법위반	1	1							1	1	
	아청법위반											
	성매매특별법위반											
폭 력 범죄	상해폭행의죄	3	7	2	2	1	1	1			3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19	7	17	3			1	3	1	1		

○ 분석

- 2018년 접수 중 교통범죄 27.6%, 주요형법범 20%, 폭력범죄 9.5%,
성범죄(군형법 포함) 8.5%,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2.8%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100%

3. 2018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105 (100)	57 (54.2)	18 (17.1)	12 (11.4)	18 (17.1)	0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70 (100)	220 (46.8)	80 (17)	73 (15.5)	94 (20)	3 (0.6)
2014년	명 (비율)	89 (100)	30 (33.7)	15 (16.8)	20 (22.4)	23 (25.8)	1 (1.1)
2015년	명 (비율)	91 (100)	48 (52.7)	13 (14.2)	17 (18.6)	13 (14.2)	0 (0)
2016년	명 (비율)	97 (100)	47 (48.4)	19 (19.5)	11 (11.3)	19 (19.5)	1 (1)
2017년	명 (비율)	88 (100)	38 (43.1)	15 (17)	13 (14.7)	21 (23.8)	1 (1.1)
2018년	명 (비율)	105 (100)	57 (54.2)	18 (17.1)	12 (11.4)	18 (17.1)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현황은 장교, 군무원, 준·부사관, 병, 민간인 순임
- 연도별 분석결과 병 사건 감소 추세, 그 외 신분 계속 변동
- 2018년 접수 중 장교 **54%**, 군무원 17%, 준·부사관 17%, 병 11%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접수사건 소폭 증가 추세

4. 2018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55 (100)	36 (65.4)	8 (14.5)	3 (5.4)	8 (14.5)	0 (0)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60 (100)	136 (52.3)	32 (12.3)	45 (17.3)	44 (16.9)	3 (1.1)
2014년	명 (비율)	52 (100)	20 (38.4)	4 (7.7)	14 (26.9)	13 (25)	1 (1.9)
2015년	명 (비율)	54 (100)	33 (61.1)	4 (7.4)	13 (24)	4 (7.4)	0 (0)
2016년	명 (비율)	54 (100)	27 (50)	9 (16.6)	8 (14.8)	9 (16.6)	1 (1.8)
2017년	명 (비율)	45 (100)	20 (44.4)	7 (15.5)	7 (15.5)	10 (22.2)	1 (2.2)
2018년	명 (비율)	55 (100)	36 (65.4)	8 (14.5)	3 (5.4)	8 (14.5)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현황은 장교, 병, 군무원, 준·부사관, 민간인 순임
- 연도별 분석결과 병 사건 감소 추세, 그 외 신분 계속 변동
- 2018년 접수 중 장교 **65%**, 준·부사관 15%, 군무원 15%, 병 5%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접수사건 소폭 감소 추세

5. 2018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93 (100)	44 (47.3)	27 (29)	6 (6.4)	3 (3.2)	7 (7.5)	1 (0)	49 (52.7)	20 (21.6)	10 (10.7)	10 (10.7)	9 (9.7)	0 (0)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61 (100)	246 (57.2)	121 (26.2)	30 (6.5)	50 (10.8)	42 (9.1)	3 (0.6)	215 (46.6)	85 (18.2)	48 (9.9)	29 (6.2)	53 (11.4)	0 (0)
2014년	명 (비율)	94 (100)	50 (53.1)	16 (17)	5 (5.3)	16 (17)	13 (13.8)	0 (0)	44 (46.8)	12 (12.7)	12 (12.7)	7 (7.4)	13 (13.8)	0 (0)
2015년	명 (비율)	84 (100)	51 (60.7)	28 (33.3)	3 (3.5)	13 (15.4)	6 (7.1)	1 (1.1)	33 (39.2)	14 (16.6)	7 (8.3)	4 (4.7)	8 (9.5)	0 (0)
2016년	명 (비율)	92 (100)	46 (50)	28 (30.4)	3 (3.2)	9 (9.7)	5 (5.4)	1 (1)	46 (50)	21 (22.8)	11 (11.9)	3 (3.2)	11 (11.9)	0 (0)
2017년	명 (비율)	98 (100)	55 (56.1)	22 (22.4)	13 (13.2)	9 (9.1)	11 (11.2)	0 (0)	43 (43.8)	18 (18.3)	8 (8.1)	5 (5.1)	12 (12.2)	0 (0)
2018년	명 (비율)	93 (100)	44 (47.3)	27 (29)	6 (6.4)	3 (3.2)	7 (7.5)	1 (0)	49 (52.7)	20 (21.6)	10 (10.7)	10 (10.7)	9 (9.7)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접수 비율과 유사
- 2018년 처리 사건 중 장교 49%, 군무원 17%, 준·부사관 15%, 병 9%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장교 사건 처리 비율 증가, 준·부사관, 군무원 및 병 사건 소폭 감소

6. 2018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비율)	93 (100)	44 (47.3)	0 (0)	13 (13.9)	5 (5.3)	9 (9.6)	0 (0)	7 (7.5)	0 (0)	10 (10.7)	0 (0)	49 (52.7)	46 (49.5)	3 (3.2)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61 (100)	246 (53.3)	0 (0)	57 (12.3)	64 (13.8)	57 (12.3)	13 (2.8)	23 (4.9)	1 (0.2)	31 (6.7)	0 (0)	215 (46.7)	198 (43)	17 (3.7)
2014년	명 (비율)	94 (100)	50 (53.2)	0 (0)	3 (3.1)	19 (20.2)	13 (13.8)	8 (8.5)	1 (1)	0 (0)	6 (6.3)	0 (0)	44 (46.8)	38 (40.4)	6 (6.3)
2015년	명 (비율)	84 (100)	51 (60.7)	0 (0)	16 (19)	17 (20.2)	9 (10.7)	1 (1.1)	6 (7.1)	0 (0)	2 (2.3)	0 (0)	33 (39.3)	30 (35.7)	3 (3.5)
2016년	명 (비율)	92 (100)	46 (50)	0 (0)	14 (15.3)	12 (13.1)	11 (11.9)	3 (3.3)	1 (1)	1 (1)	4 (4.4)	0 (0)	46 (50)	43 (46.8)	3 (3.2)
2017년	명 (비율)	98 (100)	55 (56.1)	0 (0)	11 (11.2)	11 (11.2)	15 (15.3)	1 (1)	8 (8.1)	0 (0)	9 (9.1)	0 (0)	43 (43.8)	41 (41.8)	2 (2)
2018년	명 (비율)	93 (100)	44 (47.3)	0 (0)	13 (13.9)	5 (5.3)	9 (9.6)	0 (0)	7 (7.5)	0 (0)	10 (10.7)	0 (0)	49 (52.7)	46 (49.5)	3 (3.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 처리 비율 중 공판사건이 소폭 많음,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 26%, 자유형 및 재산형 23%, 무죄 9%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의 처리 비율 계속 변동,
공판 사건 중 무죄 증가, 선고유예 감소 추세
- 2018년 공판 사건 중 자유형 30%, 재산형 20%, 무죄 16%, 집행유예 11%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공판 사건 중 실형 증가, 집행유예 감소

7. 2018년 형사사건 범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예	재산형	선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93	44		15	3	9		7		10		49	46	3
군형법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1	1							1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등)	2	2		1				1					
	기타	1	1						1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6	6		3					3				
	문서인장죄	3	3		1	1			1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1	1				1							
	절도강도의죄	1										1		1
	사기공갈죄	5	3				2			1		2	2	
	횡령배임죄	3	2						2			1	1	
교통범죄	종속에관한죄													
	교통법위반	5										5	5	
	도교법위반	4	1				1					3	3	
	도교법위반(음주)	20										20	20	
성범죄	특가법위반(도주)													
	형법위반	3	1				1					2	2	
	성폭법위반	2	1				1					1	1	
	아청법위반	1	1				1							
폭력범죄	성매매특별법위반													
	상해폭행의죄	10	3				2			1		7	7	
	상해등치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폭처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3	3		2				1					
기타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22	15		8		2		1		4	7	5	2

○ 분석

- 교통범죄 31%, 주요형법범 20%, 폭력범죄 11%, 성범죄(군형법 포함) 9% 차지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93% 차지

8. 2018년 형사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93	44		13	5	9		7		10		49	46	3
장 교	장성													
	영관	38	24	9	2	2		5		6		14	12	2
	위관	9	3			3						6	6	
준·부사관	16	6		2	1	1		1		1		10	9	1
병	13	3				1				2		10	10	
군무원	16	7		2	1	2		1		1		9	9	
민간인	1	1			1									

○ 분석

- 공판 사건의 경우 자유형 30%, 재산형은 20%, 무죄 16%, 집행유예 11% 차지
- 장교 공판 사건의 경우 자유형 33%, 무죄 19% 차지
- 준·부사관 공판 사건의 경우 자유형 33% 차지
- 군무원 공판 사건의 경우 자유형 및 재산형 각 29%

9. 2018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합계	44	8	2	7	3	13	1	2	3	2	3
구 속	7	1				6					
불구속	37	7	2	7	3	7	1	2	3	2	3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16%, 불구속 사건 84% 차지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14%, 121일 이상 210일 이내 86% 처리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43%, 121일 이상 210일 이내 30%, 211일 이상 27% 처리

10. 2018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44	27	6	3	7	1
확정	소계	3	2		1	
	유죄	3	2		1	
	무죄					
	면소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상소	소계	31	19	5	1	1
	쌍방향소	22	12	4	1	1
	피고인항소	2	2			
	군검사항소	7	5	1		1
	즉시항고					
	비약상고					
이송	10	6	1	2	1	

○ 분석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7%, 상소율 70%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100%
- 신분별 상소율 장교 70%, 준·부사관 83%, 병 33%, 군무원 71%, 민간인 100%

11. 2018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13 (100)	0 (0)	0 (0)	2 (15.4)	1 (7.7)	8 (61.5)	2 (15.4)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57 (100)	0 (0)	0 (0)	8 (14)	10 (17.5)	33 (57.8)	6 (10.5)
2014년							
명 (비율)	3 (100)	0 (0)	0 (0)	1 (33.3)	2 (66.7)	0 (0)	0 (0)
2015년							
명 (비율)	16 (100)	0 (0)	0 (0)	2 (12.5)	5 (31.3)	9 (56.2)	0 (0)
2016년							
명 (비율)	14 (100)	0 (0)	0 (0)	1 (7.1)	2 (14.3)	10 (71.5)	1 (7.1)
2017년							
명 (비율)	11 (100)	0 (0)	0 (0)	2 (18.1)	0 (0)	6 (54.5)	3 (27.2)
2018년							
명 (비율)	13 (100)	0 (0)	0 (0)	2 (15.4)	1 (7.7)	8 (61.5)	2 (15.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32%, 1년 이상 3년 미만 58%, 1년 미만 10% 차지
- 2018년 자유형 처리 중 3년 이상 23%, 1년 이상 3년 미만 62%, 1년 미만 15% 차지

12. 2018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34 (100)	6 (17.6)	2 (5.9)	4 (11.7)	28 (82.4)

※ 이송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11 (100)	51 (24.1)	7 (3.3)	44(20.8)	160 (75.8)
2014년	명 (비율)	43 (100)	20 (46.5)	0 (0)	20 (46.5)	23 (53.4)
2015년	명 (비율)	48 (100)	10 (20.8)	4 (8.3)	6 (12.5)	38 (79.1)
2016년	명 (비율)	40 (100)	9 (22.5)	0 (0)	9 (22.5)	31 (77.5)
2017년	명 (비율)	46 (100)	6 (13.1)	1 (2.2)	5 (10.9)	40 (86.9)
2018년	명 (비율)	34 (100)	6 (17.6)	2 (5.9)	4 (11.7)	28 (82.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76%,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3%
- 2018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82%, 국선변호인의 군법무관 선정률 12%
- 2018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률 소폭 감소

13. 2018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합계	5						1	1				1											1				
군형법위반	2						1					1															
형법위반	1																1										
성폭법위반	1																						1				
아청법위반	1						1																				
기타																											

13-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5년 평균	합계	40	1	4	1			1	1	4	3		1	2	1	4	5		1		5	1	3	1			1
	군형법위반	11	1					1	2				1	2	1	3					2	1					
	형법위반	10		1						1				1	1	2							1	1			1
	성폭법위반	14		3	1			1		2				1		2					2		2				
	아청법위반	5							2							1	1			1							
2014년	소계	12		1	1			1		2			2		3								1				1
	군형법위반	2													2												
	형법위반	5								1			1		1								1				1
	성폭법위반	5		1	1			1		1			1														
	아청법위반																										
2015년	소계	9	1	1					1						2	1			2		1						
	군형법위반	2	1						1																		
	형법위반	2														1							1				
	성폭법위반	4		1												1					2						
	아청법위반	1															1										
2016년	소계	8		1					2					1	1	1					2						
	군형법위반	4							1						1								2				
	형법위반	2		1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2							1							1											
2017년	소계	6		1						1					1					1	1	1					
	군형법위반	1																			1						
	형법위반																										
	성폭법위반	4		1						1						1							1				
	아청법위반	1																			1						
2018년	소계	5						1	1				1		1							1					
	군형법위반	2						1					1														
	형법위반	1																									
	성폭법위반	1														1							1				
	아청법위반	1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성폭법위반 35%, 군형법위반 28% 차지, 병 40%, 준·부사관 28%, 장교 18%, 군무원 15% 차지, 재산형 33%, 집행유예 30%, 자유형 8%, 무죄 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신분별 처리 비율 계속 변동
- 2018년 군형법위반 40%, 형법 및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각 20% 차지
- 2018년 준·부사관 60%, 병 및 군무원 각 20% 차지
- 2018년 집행유예 40%, 자유형, 재산형 각 20% 차지

14. 2018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1		1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	합계 (비율)	3 (100)	1 (33.3)	2 (66.6)	0 (0)	0 (0)	0 (0)	0 (0)
2014년	명 (비율)	—						
2015년	명 (비율)	1 (100)	0 (0)	1 (100)	0 (0)	0 (0)	0 (0)	0 (0)
2016년	명 (비율)	1 (100)	1 (100)	0 (0)	0 (0)	0 (0)	0 (0)	0 (0)
2017년	명 (비율)	—						
2018년	명 (비율)	1 (100)	0 (0)	1 (100)	0 (0)	0 (0)	0 (0)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처리 중 집행유예 67%, 자유형 33% 차지

15. 2018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명 (비율)	44 (100)	31 (70.5)	3 (6.8)	10 (22.7)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46 (100)	152 (61.7)	61 (24.7)	33 (13.4)
2014년	명 (비율)	50 (100)	17 (34)	27 (54)	6 (12)
2015년	명 (비율)	51 (100)	37 (72.5)	11 (21.6)	3 (5.9)
2016년	명 (비율)	46 (100)	31 (67.3)	10 (21.7)	5 (11)
2017년	명 (비율)	55 (100)	36 (65.5)	10 (18.2)	9 (16.3)
2018년	명 (비율)	44 (100)	31 (70.5)	3 (6.8)	10 (22.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항소 62%, 확정 25%, 이송 1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 및 이송 증가
- 2018년 항소 70%, 확정 7%, 이송 23%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항소 증가, 확정 감소

16. 2018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31 (100)	2 (6.4)	7 (22.5)	22 (70.9)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52 (100)	48 (31.5)	23 (15.1)	81 (53.2)
2014년	명 (비율)	17 (100)	5 (29.4)	1 (5.9)	11 (64.7)
2015년	명 (비율)	37 (100)	17 (46)	6 (16.2)	14 (37.8)
2016년	명 (비율)	31 (100)	14 (45.2)	0 (0)	17 (54.8)
2017년	명 (비율)	36 (100)	10 (27.7)	9 (25)	17 (47.2)
2018년	명 (비율)	31 (100)	2 (6.4)	7 (22.5)	22 (70.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85%, 군검사의 항소율 68%
- 2018년 피고인의 항소율 77%, 군검사의 항소율 93%
- 2017년 이후 군검사의 항소율 대폭 증가(무죄판결 영향)

17. 2018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명 (비율)	49 (100)	46 (93.9)	3 (6.1)	0 (0)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15 (100)	198 (92)	16 (7.5)	1 (0.5)
2014년	명 (비율)	44 (100)	38 (86.4)	6 (13.6)	0 (0)
2015년	명 (비율)	33 (100)	30 (90.9)	3 (9.1)	0 (0)
2016년	명 (비율)	46 (100)	43 (93.5)	2 (4.3)	1 (2.2)
2017년	명 (비율)	43 (100)	41 (95.3)	2 (4.7)	0 (0)
2018년	명 (비율)	49 (100)	46 (93.9)	3 (6.1)	0 (0)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92%, 공판절차 회부 7.5%
- 연도별 분석결과 약식명령 증가 추세
- 2018년 약식명령 94%, 공판절차 회부 6%, 전년 대비 공판절차 회부 소폭 증가

18. 2018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16	14	2	87.5
체포영장	1		1	0
압수·수색영장	196	178	18	90.8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을	구속영장	103	87	16	84.4
	체포영장	36	35	1	97.2
	압수·수색영장	804	764	40	95
2014년	구속영장	23	16	7	69.5
	체포영장	5	5		100
	압수·수색영장	97	89	8	92
2015년	구속영장	28	26	2	92.8
	체포영장	21	21		100
	압수·수색영장	138	137	1	99.2
2016년	구속영장	28	23	5	82
	체포영장	9	9		100
	압수·수색영장	184	180	4	97.8
2017년	구속영장	8	8		100
	체포영장				0
	압수·수색영장	189	180	9	95.2
2018년	구속영장	16	14	2	87.5
	체포영장	1		1	0
	압수·수색영장	196	178	18	90.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84%, 체포영장 97%, 압수·수색영장 95%
- 연도별 분석결과 압수·수색영장 청구건수 증가 추세
- 2018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87.5%, 압수·수색영장 91%,
전년대비 구속영장 청구건수 대폭 증가

19. 2018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발부	기각
합계	16	3	12	1	14	2
장 교	12		11	1	11	1
준·부사관	3	2	1		2	1
병						
군무원	1	1			1	
기 타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율	합계	103	28	71	4	85	18	
	장 교	60	9	49	2	55	5	
	준·부사관	11	4	7		9	2	
	병	14	12	1	1	8	6	
	군무원	15	3	11	1	12	3	
	민간인	3	0	3		1	2	
2014년	소계	23	9	14		16	7	
	장 교	10	2	8		10		
	준·부사관	1		1			1	
	병	6	6			3	3	
	군무원	3	1	2		2	1	
2015년	소계	28	7	21		26	2	
	장 교	22	3	19		20	2	
	준·부사관	2	2			2		
	병	2	2			2		
	군무원	2		2		2		
2016년	소계	28	9	16	3	21	7	
	장 교	12	4	7	1	10	2	
	준·부사관	4		4		4		
	병	6	4	1	1	3	3	
	군무원	6	1	4	1	4	2	
	민간인							
2017년	소계	8		8		8		
	장 교	4		4		4		
	준·부사관	1		1		1		
	병							
	군무원	3		3		3		
2018년	소계	16	3	12	1	14	2	
	장 교	12		11	1	11	1	
	준·부사관	3	2	1		2	1	
	병							
	군무원	1	1			1		
	민간인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중 장교 58%, 준·부사관 11%, 병 14%, 군무원 15%, 민간인 3% 차지, 발부를 장교 92%, 준·부사관 82%, 병 57%, 군무원 80%, 민간인 33%
- 2018년 전년 대비 장교사건 대폭으로 증가

20. 2018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6	2	4	33.3
구속적부심	2		2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7	7		100

※ 기타 :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등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41	19	22	46.3
	구속적부심	12	2	10	16.6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5	5	0	100
	기 타	40	27	13	
2014년	보석청구	8	6	2	75
	구속적부심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기 타	5	1	4	20
2015년	보석청구	18	9	9	50
	구속적부심	6	2	4	33.3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기 타	8	6	2	75
2016년	보석청구	6	1	5	16.7
	구속적부심	3		3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11	6	5	54.5
2017년	보석청구	3	1	2	33.3
	구속적부심	1		1	10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3	3		100
	기 타	9	7	2	77.7
2018년	보석청구	6	2	4	33.3
	구속적부심	2		2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7	7		10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46%, 구속적부심 인용률 17%, 형사보상청구 인용률 100%
- 연도별 분석결과 보석청구 허가율 감소, 구속적부심 2015년 2건 인용, 그 외 기각
- 2018년 보석청구 및 구속적부심 소폭 증가

21. 2018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68	32	12	11	13	
원판결확인	68	32	12	11	13	
원판결 확인율	100	47	17.6	16.1	19.1	
감경	1/2미만					
	1/2이상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312	141	60	42	68	
	원판결확인	312	141	60	42	68	
	원판결 확인율	312	45.1	19.2	13.4	21.7	
	감경	1/2미만					
		1/2이상					
2014년	소계	54	16	13	8	17	
	원판결확인	54	16	13	8	17	
	원판결 확인율	100	29.6	24	14.8	31.4	
	감경	1/2미만					
		1/2이상					
2015년	소계	55	29	8	8	10	
	원판결확인	55	29	8	8	10	
	원판결 확인율	100	52.7	14.5	14.5	18.1	
	감경	1/2미만					
		1/2이상					
2016년	소계	68	35	12	7	13	
	원판결확인	68	35	12	7	13	
	원판결 확인율	100	51.5	17.6	10.3	19.1	
	감경	1/2미만					
		1/2이상					
2017년	소계	67	29	15	8	15	
	원판결확인	67	29	15	8	15	
	원판결 확인율	100	43.2	22.3	11.9	22.3	
	감경	1/2미만					
		1/2이상					
2018년	소계	68	32	12	11	13	
	원판결확인	68	32	12	11	13	
	원판결 확인율	100	47	17.6	16.1	19.1	
	감경	1/2미만					
		1/2이상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22. 2018년 무죄 선고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7	5	1		1	
군형법 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등)	1		1		
	기타	1	1			
주요형법 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1			1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의죄					
	사기횡령배임죄	2	2			
풍속에관한죄						
교통 범죄	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특가법위반(도주)					
상 범 죄	형법위반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성매매특별법위반					
폭 력 법 죄	상해폭행의죄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1	1				

23. 2018년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명	결과
2018조1	원사	경범죄처벌법위반	청구기각결정
2018조2	원사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100,000원



육군 군사법원

□ 육군 군사법원

1. 2018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명 (비율)	2,096 (100)	859 (41)	1,237 (59)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2,211 (100)	5,638 (46.2)	6,573 (53.8)
2014년	명 (비율)	2,741 (100)	1,402 (51.1)	1,339 (48.9)
2015년	명 (비율)	2,644 (100)	1,270 (48)	1,374 (52)
2016년	명 (비율)	2,499 (100)	1,162 (46.4)	1,337 (53.6)
2017년	명 (비율)	2,231 (100)	945 (42.4)	1,286 (57.6)
2018년	명 (비율)	2,096 (100)	859 (41)	1,237 (5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46.2%, 약식 사건 53.8% 차지
- 17년 대비 접수사건 수 감소, 14년 이후 접수사건 감소세
- 2018년 접수 중 공판 사건 41%, 전년 대비 공판 사건 비율 다소 감소

2. 2018년 형사사건 범죄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2,096		205		590		1,241		53		7	
	859	1,237	77	128	176	414	585	656	14	39	6	1
일반 범죄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40		1		6		33				
	상관에관한죄	50		3		12		35				
	군용물관련죄	13	1			9	2	1				2
	초병에관한죄	29	5	3	1	2	3	22	1			2
	성범죄(군인등)	102		17		25		57		3		
	기타	9	10			4	2	5	8			
주요 범죄	내란소요죄											
	뇌물예관한죄	1				1						
	문서인장죄	19	7	6		4	1	9	5	1		
	살인죄	2		1				1				
	과실치사상죄	9	3	2		4	3	3				
	절도강도죄	37	37	1	2	5	6	31	29			
	사기공갈죄	70	91	2	1	10	5	55	85	3		
	횡령배임죄	6	10	1	2	3	3	2	5			
	홍측예관한죄	2	9	1		1	1	7			1	
	교통법위반	31	103	4	15	8	55	17	24	2	9	
도로교통법위반	7	36		5	1	12	6	18		1		
도교법위반(음주)	15	360	2	64	9	191	4	87		17	1	
특가법위반(도주)	18	19	1	4	6	8	11	5		2		
성범죄	형법위반	73	21	5	2	10	4	57	15	1		
	성폭법위반	49	44	4	5	9	3	33	36	2		1
	아청법위반	18	3	1		1	1	16	2			
	성매매특별법위반	4	5	1		1	3	2	2			
폭력 범죄	상해폭행의죄	81	182	6	12	16	42	58	127	1	1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35	31			1	4	34	27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138	260	14	15	29	65	92	173	2	7	1	

○ 분석

- 2018년 접수 중 교통범죄 28.1%, 주요형법법 14.5%, 성범죄(군형법 포함) 15.2%,
군기법위반 0.05%, 군형법법(성범죄 제외) 7.5%, 폭력범죄 15.7%
- 전체 사건 중 뇌물범죄 0.05%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87.9%

3. 2018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2,096 (100)	205 (9.8)	585 (27.9)	1,246 (59.4)	53 (2.5)	7 (0.3)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2,218 (100)	1,160 (9.5)	3,261 (26.7)	7,512 (61.5)	253 (2.1)	32 (0.3)
2014년	명 (비율)	2,741 (100)	250 (9.1)	688 (25.1)	1,746 (63.7)	57 (2.1)	0 (0)
2015년	명 (비율)	2,644 (100)	240 (9.1)	680 (25.7)	1,665 (63)	50 (1.9)	9 (0.3)
2016년	명 (비율)	2,506 (100)	252 (10.1)	664 (26.5)	1,528 (61)	54 (2.2)	8 (0.3)
2017년	명 (비율)	2,231 (100)	213 (9.5)	644 (28.8)	1,327 (59.4)	39 (1.7)	8 (0.3)
2018년	명 (비율)	2,096 (100)	205 (9.8)	585 (27.9)	1,246 (59.4)	53 (2.5)	7 (0.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장교 9.5%, 준·부사관 26.7%, 병 61.5% 군무원 2.1%, 민간인 0.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장교사건 비율 증가 추세/병 사건 소폭 감소 둔화
- 2018년 접수 중 장교 9.8%, 준·부사관 27.9%, 병 59.4%, 군무원 2.5%, 민간인 0.3% 차지

4. 2018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859 (100)	77 (9)	176 (20.5)	586 (68.2)	14 (1.6)	6 (0.7)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5,626 (100)	475 (8.4)	1,003 (17.8)	4,042 (71.8)	76 (1.4)	30 (0.5)
2014년	명 (비율)	1,402 (100)	102 (7.3)	211 (15)	1,066 (76)	23 (1.6)	0 (0)
2015년	명 (비율)	1,270 (100)	106 (8.3)	228 (18)	915 (72)	12 (0.9)	9 (0.7)
2016년	명 (비율)	1,150 (100)	99 (8.6)	201 (17.4)	826 (71.8)	15 (1.3)	9 (0.8)
2017년	명 (비율)	945 (100)	91 (9.6)	187 (19.7)	649 (68.6)	12 (1.2)	6 (0.6)
2018년	명 (비율)	859 (100)	77 (9)	176 (20.5)	586 (68.2)	14 (1.6)	6 (0.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병 71.8%, 장교 8.4%, 군무원 1.4%, 준·부사관 17.8%, 민간인 0.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간부사건 비율 증가세 둔화 및 병사사건 비율 감소 추세
- 2018년 접수 중 장교 9%, 준·부사관 20.5%, 병 68.2%, 군무원 1.6%, 민간인 0.7%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군무원 사건 소폭 증가, 나머지 신분 및 전체 사건 수 감소

5. 2018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1,847 (100)	624 (33.8)	53 (2.9)	119 (6.5)	442 (23.9)	6 (0.3)	4 (0.2)	1,223 (66.2)	127 (6.9)	393 (21.3)	666 (36)	37 (2)	0 (0)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1,067 (100)	4,378 (39.6)	345 (3.1)	771 (7)	3,186 (28.8)	54 (0.5)	22 (0.2)	6,689 (60.4)	715 (6.5)	2,189 (19.8)	3,612 (32.6)	170 (1.5)	3 (=0)
2014년	명 (비율)	2,470 (100)	1,098 (44.5)	70 (2.8)	158 (6.4)	851 (34.5)	19 (0.8)	0 (0)	1,372 (55.5)	161 (6.5)	444 (18)	734 (29.7)	33 (1.3)	0 (0)
2015년	명 (비율)	2,423 (100)	1,003 (41.4)	83 (3.4)	191 (7.9)	715 (29.5)	7 (0.3)	7 (0.3)	1,420 (58.6)	142 (5.9)	459 (18.9)	781 (32.2)	38 (1.6)	0 (0)
2016년	명 (비율)	2,220 (100)	838 (37.7)	63 (2.8)	148 (6.7)	609 (27.4)	12 (0.5)	6 (0.3)	1,382 (62.3)	151 (6.8)	458 (20.7)	735 (33.1)	37 (1.7)	1 (=0)
2017년	명 (비율)	2,107 (100)	815 (38.7)	76 (3.6)	155 (7.4)	569 (27)	10 (0.5)	5 (0.2)	1,292 (61.3)	134 (6.4)	435 (20.6)	696 (33)	25 (1.3)	2 (=0)
2018년	명 (비율)	1,847 (100)	624 (33.8)	53 (2.9)	119 (6.5)	442 (23.9)	6 (0.3)	4 (0.2)	1,223 (66.2)	127 (6.9)	393 (21.3)	666 (36)	37 (2)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접수 비율과 유사
- 연도별 분석결과 2014년 이후 전체사건 수 감소 추세
- 2018년 처리 사건 중 장교 9.7%, 준·부사관 27.7%, 병 60.1%, 군무원 2.3%, 민간인 0.2% 차지

6. 2018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비율)	1,847 (100)	624 (33.8)	0 (0)	39 (2.1)	205 (11.1)	208 (11.3)	36 (1.9)	26 (1.4)	12 (0.7)	98 (5.3)	0 (0)	1,223 (66.2)	1,119 (60.6)	104 (5.6)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1,067 (100)	4,378 (39.6)	0 (0)	441 (4)	1,629 (14.7)	1,192 (10.8)	356 (3.2)	222 (2)	68 (0.6)	470 (4.3)	0 (0)	6,689 (60.4)	6,048 (54.6)	641 (5.8)
2014년	명 (비율)	2,470 (100)	1,098 (44.5)	0 (0)	143 (5.8)	474 (19.2)	227 (9.2)	127 (5.1)	36 (1.5)	22 (0.9)	69 (2.8)	0 (0)	1,372 (55.5)	1,236 (50)	136 (5.5)
2015년	명 (비율)	2,423 (100)	1,003 (41.4)	0 (0)	100 (4.1)	373 (15.4)	273 (11.2)	99 (4.1)	53 (2.2)	14 (0.6)	91 (3.8)	0 (0)	1,420 (58.6)	1,276 (52.7)	144 (5.9)
2016년	명 (비율)	2,220 (100)	838 (37.7)	0 (0)	76 (3.4)	295 (13.3)	263 (11.8)	37 (1.7)	53 (2.4)	13 (0.6)	101 (4.5)	0 (0)	1,382 (62.3)	1,248 (56.2)	134 (6.1)
2017년	명 (비율)	2,107 (100)	815 (38.7)	0 (0)	83 (3.9)	282 (13.4)	221 (10.5)	57 (2.7)	54 (2.6)	7 (0.3)	111 (5.3)	0 (0)	1,292 (61.3)	1,169 (55.5)	123 (5.8)
2018년	명 (비율)	1,847 (100)	624 (33.8)	0 (0)	39 (2.1)	205 (11.1)	208 (11.3)	36 (1.9)	26 (1.4)	12 (0.7)	98 (5.3)	0 (0)	1,223 (66.2)	1,119 (60.6)	104 (5.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 처리 비율 4:6,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 37.2%, 재산형 27.2%, 자유형 10.1%, 무죄 5.1%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의 처리 비율 및 처분 유형 비율 유사
- 2018년 공판 사건 중 재산형 33.3%, 집행유예 32.9%, 자유형 6.3%, 선고유예 5.8%, 무죄 4.2%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공판 사건 중 재산형 비율만 소폭 증가, 그 외 처분 감소

7. 2018년 형사사건 범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1,847	624	0	39	205	209	36	26	12	97	0	1,223	1,119	104
균형법범	간첩이적죄	0										0		
	군무이탈죄	37	37		7	24		5			1	0		
	상관에관한죄	35	35			16		10		2	7	0		
	군용물관련죄	5	4			2	1	1				1	1	
	초병에관한죄	27	22			16	2	3			1	5	4	1
	성범죄(군인등)	68	68		4	39		3	5		17	0		
	기타	19	7			3	1		2		1	12	11	1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0										0		
	뇌물에관한죄	1	1			1						0		
	문서인장죄	20	14			5	3	4			2	6	6	
	살인의죄	1	1		1							0		
	과실치사상죄	11	6				2		1		3	5	4	1
	절도강도의죄	68	29		1	16	4		1		7	39	34	5
	사기횡령배임죄	150	51		3	19	21	1			7	99	89	10
풍속에관한죄	15	2								2	13	11	2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132	22		2	1	14			3	2	110	99	11
	도교법위반	383	18			1	13	1	1		2	365	354	11
	특가법위반(도주)	28	11		1	2	7				1	17	15	2
성범죄	형법위반	81	57		8	12	22			4	11	24	19	5
	성폭법위반	79	30		4	8	13	1		1	3	49	43	6
	아청법위반	15	13		1	2	4			2	4	2	2	
	성매매특별법위반	7	3			1	2					4	4	
폭력범죄	상해폭행의죄	241	59		2	16	25	1		1	14	182	170	12
	상해등치사	0										0		
	폭처법위반	60	29		1	7	18	1			2	31	29	2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1							0			
국가보안법위반	0										0			
기타	363	104		3	14	57	5	8	7	10	259	224	35	

○ 분석

- 교통범죄 29.4%, 성범죄(균형법 포함) 13.5%, 주요형법범 14.4%, 균형법범(성범죄 제외) 6.7% 차지
- 균형법범 중 성범죄 35.6%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90.6%
- 균형법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57.4%

8. 2018년 형사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1,847	624		39	205	208	36	26	12	98		1,223	1,119	104	
장교	장성	2	2		1	1									
	영관	33	15			4	7			2	1	1	18	15	3
	위관	145	36		2	7	16	6	3		2		109	104	5
준·부사관	512	119		7	37	47	9	10	2	7		393	372	21	
병	1,108	442		29	153	135	21	9	9	86		666	593	73	
군무원	43	6			1	2		2		1		37	35	2	
민간인	4	4			2	1				1					

○ 분석

- 장교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43.4%, 집행유예 22.6%, 선고유예 11.3%, 무죄 9.4% 차지
- 준·부사관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39.5%, 집행유예 31.1%, 무죄 8.4%, 선고유예 7.6% 차지
- 병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34.6%, 재산형 30.5%, 자유형 6.6%, 선고유예 4.8% 차지
- 군무원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및 무죄 각 33.3%, 집행유예 16.7% 차지
- 민간인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50%, 재산형 25% 차지

9. 2018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합계	654	286	202	93	38	25	10				
구 속	83	33	26	13	7	3	1				
불구속	571	253	176	80	31	22	9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12.7%, 불구속 사건 87.3%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86.7%, 121일 이상 210일 이내 13.3% 차지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89.1%, 121일 이상 210일 이내 10.9% 차지

10. 2018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624	53	119	442	6	4	
확정	소계	363	22	63	275	2	1
	유죄	346	20	60	264	1	1
	무죄	5	1	1	2	1	
	면소						
	공소기각판결	2			2		
	공소기각결정	10	1	2	7		
상소	소계	163	28	49	81	3	2
	쌍방향소	48	12	12	23	1	
	피고인항소	78	10	25	41	1	1
	군검사항소	37	6	12	17	1	1
	즉시항고						
	비약상고						
이송	98	3	7	86	1	1	

○ 분석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58.2%, 상소율 26.1%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95.3%
- 신분별 상소율 장교 52.8%, 준·부사관 41.2%, 병 18.3%, 군무원 50%, 민간인 50%

11. 2018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39 (100)	0 (0)	0 (0)	2 (5.1)	5 (12.8)	20 (51.3)	12 (30.8)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41 (100)	1 (0.2)	10 (2.3)	25 (5.7)	57 (12.9)	209 (47.4)	139 (31.5)
2014년	명 (비율)	143 (100)	1 (0.7)	7 (4.9)	7 (4.9)	12 (8.4)	72 (50.3)	44 (30.8)
2015년	명 (비율)	100 (100)	0 (0)	2 (2.0)	7 (7.0)	9 (9.0)	43 (43.0)	39 (39.0)
2016년	명 (비율)	76 (100)	0 (0)	0 (0)	5 (6.6)	15 (19.7)	34 (44.7)	22 (28.9)
2017년	명 (비율)	83 (100)	0 (0)	1 (1.2)	4 (4.8)	16 (19.3)	40 (48.2)	22 (26.5)
2018년	명 (비율)	39 (100)	0 (0)	0 (0)	2 (5.1)	5 (12.8)	20 (51.3)	12 (30.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21.1%, 1년 이상 3년 미만 47.4%, 1년 미만 31.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14년 이후, 단기자유형 감소 추세
- 2018년 3년 이상 17.9%, 1년 이상 3년 미만 51.3%, 1년 미만 30.8% 차지

12. 2018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511 (100)	384 (75.1)	87 (17)	297 (58.1)	127 (24.9)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3,699 (100)	2,893 (78.2)	406 (11)	2,487 (67.2)	805 (21.8)
2014년	명 (비율)	984 (100)	798 (81.1)	95 (9.7)	703 (71.4)	186 (18.9)
2015년	명 (비율)	871 (100)	702 (80.6)	87 (10)	615 (70.6)	169 (19.4)
2016년	명 (비율)	678 (100)	530 (78.2)	73 (10.8)	457 (67.4)	148 (21.8)
2017년	명 (비율)	655 (100)	479 (73.1)	64 (9.8)	415 (63.4)	175 (26.7)
2018년	명 (비율)	511 (100)	384 (75.1)	87 (17)	297 (58.1)	127 (24.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21.8%,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14%
- 연도별 분석결과 사선변호인 선임률 증가 추세이나 2018년 소폭 감소
- 2018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24.9%, 국선변호인의 군법무관 선정률 77.3%
- 2018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률 감소, 민간 국선변호인 선정률 증가

13. 2018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승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승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승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계	171	1	7	5	3			2	7	11	3	2	1	1	14	48	25	1	5			34						
군형법위반	68	1	7		2			2	7	11	3	2	1	1	3	25	1	1				16						
형법위반	57			2	1			2	7		1				6	12	13		2			11						
성폭법위반	30			2					2	1		1			4	8	9					3						
아청법위반	13		1						1						1	2	2		2			4						
기타	3								1						1	1												

13-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승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승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승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승
5년 평균율	합계	1,260	21	34	36	12	7		2	27	77	55	16	13	2	8	120	401	170	49	32	1	174						
	군형법위반	487	14	26		7	4		2	9	60		12	5	1	2	29	212		27	4		71		1			1	
	형법위반	350	3	5	12	2	2			7	10	22	1	7		1	33	89	72	9	13		62						
	성폭법위반	282	4	2	18	3				8	5	22	2	1	1	3	40	58	74	9	8	1	22			1			
	아청법위반	129			6		1			3	2	10	1			2	18	39	18	4	7		18						
	기타	12		1								1						3	6				1						
2014년	소계	279	6	3	5	5			9	16	10	6	2			36	105	37	13	1		24		1				1	
	군형법위반	104	4	3		1			4	11		5	1			9	54		5			6		1					
	형법위반	74	1		2	2			1	2	3		1			8	23	11	4	1		15							
	성폭법위반	68	1		2	2			3	2	5					10	17	21	3			2							
	아청법위반	30			1				1	1	2	1				9	10	3	1			1							
	기타	3															1	2											
2015년	소계	292	6	5	11	3	2	1	7	19	17	5	1	2	2	27	83	47	18	10	1	26			1				
	군형법위반	102	5	2	2	2		1	4	14		3				8	40		10			11							
	형법위반	79	1	2	3				1	2	6	1	1			6	19	22	2	4		9							
	성폭법위반	70			6	1			2	2	8	1			1	11	9	18	4	3	1	2			1				
	아청법위반	39			2					1	3				1	2	15	6	2	3		4							
	기타	2		1													1												
2016년	소계	277	3	12	5		2		5	20	12	2	4	1	1	20	87	39	10	10		44							
	군형법위반	117	2	8					1	17		2	2	1		6	51		8	1		18							
	형법위반	79	3	2		1			2	3	4		2			5	16	18	1	5		17							
	성폭법위반	59	1	1	2				1		6					6	14	18		3		7							
	아청법위반	22			1	1			1	2					1	3	6	3	1	1		2							
	기타																												
2017년	소계	241	5	7	10	4		1	4	15	5		4	4	4	23	78	22	7	6		46							
	군형법위반	96	2	6		4		1		11			1	1	1	3	42		3	2		20							
	형법위반	61	1		3				1	3	2		2		1	8	19	8	2	1		10							
	성폭법위반	55	2	1	6				2	1	1	1	1		2	9	10	8	2	2		8							
	아청법위반	25			1				1		2					3	6	4		1		7							
	기타	4														1	2					1							
2018년	소계	171	1	7	5		3		2	7	11	3	2	1	1	14	48	25	1	5		34						1	
	군형법위반	68	1	7			2			7		2	1		1	3	25		1	1		16						1	
	형법위반	57			2		1			2		7		1		6	12	13		2		11							
	성폭법위반	30			2					2	1		1			4	8	9				3							
	아청법위반	13			1					1						1	2	2		2		4							
	기타	3										1				1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군형법위반 38.7%, 아청법위반 10.2% 차지,
병 75.2%, 준·부사관 15.7%, 장교 8.9%, 군무원 0.2% 차지,
집행유예 40.7%, 재산형 20.8%, 자유형 13.3%, 무죄 4.2%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실행률 지속감소
- 2018년 군형법위반 39.8%, 아청법위반 7.6% 차지
- 2018년 병 74.3%, 준·부사관 15.8%, 장교 9.4% 차지
- 2018년 집행유예 36.3%, 재산형 24%, 자유형 9.9% 차지,
전년 대비 재산형 비율 증가, 자유형 및 집행유예 비율 감소

14. 2018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4 (100)	0 (0)	2 (50)	0 (0)	1 (25)	0 (0)	1 (25)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 (100)	1 (4.5)	16 (72.7)	1 (4.5)	1 (4.5)	2 (9.1)	1 (4.5)
2014년	명 (비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5년	명 (비율)	7 (100)	0 (0)	6 (85.7)	1(14.3)	0 (0)	0 (0)	0 (0)
2016년	명 (비율)	6 (100)	1 (16.7)	3 (50)	0 (0)	0 (0)	2 (33.3)	0 (0)
2017년	명 (비율)	5 (100)	0 (0)	5 (100)	0 (0)	0 (0)	0 (0)	0 (0)
2018년	명 (비율)	4 (100)	0 (0)	2 (50)	0 (0)	1 (25)	0 (0)	1 (2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처리 중 집행유예 72.7%, 자유형 4.5% 차지
- 2018년 민간인 처리 4명(집행유예 2명, 벌금 1명, 이송 1명)

15. 2018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명 (비율)	624 (100)	163 (26.1)	363 (58.2)	98 (15.7)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291 (100)	1,129 (26.3)	2,692 (62.7)	470 (11)
2014년	명 (비율)	1,085 (100)	296 (27.3)	720 (66.4)	69 (6.4)
2015년	명 (비율)	978 (100)	242 (24.7)	645 (66.0)	91 (9.3)
2016년	명 (비율)	819 (100)	223 (27.2)	495 (60.4)	101 (12.3)
2017년	명 (비율)	785 (100)	205 (26.1)	469 (59.7)	111 (14.1)
2018년	명 (비율)	624 (100)	163 (26.1)	363 (58.2)	98 (15.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항소 26.3%, 확정 62.7%, 이송 11%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 및 이송 증가 추세
- 2018년 항소 26.1%, 확정 58.2%, 이송 15.7%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확정 비율 감소, 이송 비율 증가

16. 2018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163 (100)	78 (47.9)	37 (22.7)	48 (29.4)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129 (100)	590 (52.3)	229 (20.3)	310 (27.5)
2014년	명 (비율)	296 (100)	151 (51)	62 (20.9)	83 (28)
2015년	명 (비율)	242 (100)	132 (54.5)	45 (18.6)	65 (26.9)
2016년	명 (비율)	223 (100)	110 (49.3)	51 (22.9)	62 (27.8)
2017년	명 (비율)	205 (100)	119 (58)	34 (16.6)	52 (25.4)
2018년	명 (비율)	163 (100)	78 (47.9)	37 (22.7)	48 (29.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79.8%, 군검사의 항소율 47.8%
- 2018년 피고인의 항소율 77.3%, 군검사의 항소율 52.1%
- 2018년 전년 대비 피고인 항소율 감소, 군검사 항소율 증가

17. 2018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명 (비율)	1,223 (100)	1,119 (91.5)	63 (5.1)	41 (3.4)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6,689 (100)	6,048 (90.4)	463 (6.9)	178 (2.7)
2014년	명 (비율)	1,372 (100)	1,236 (90.1)	101 (7.4)	35 (2.6)
2015년	명 (비율)	1,420 (100)	1,276 (89.9)	116 (8.1)	28 (2)
2016년	명 (비율)	1,382 (100)	1,248 (90.3)	100 (7.2)	34 (2.5)
2017년	명 (비율)	1,292 (100)	1,169 (90.5)	83 (6.4)	40 (3.1)
2018년	명 (비율)	1,223 (100)	1,119 (91.5)	63 (5.1)	41 (3.4)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90.4%, 공판절차 회부 6.9%
- 2018년 약식명령 91.5%, 공판절차 회부 5.1%

18. 2018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164	114	38	69.5
체포영장	27	24	3	88.9
압수·수색영장	283	267	16	94.3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을	구속영장	2,252	1,792	439	79.6
	체포영장	396	355	41	89.6
	압수·수색영장	2,207	2,044	163	92.6
2014년	구속영장	926	756	170	81.6
	체포영장	153	138	15	90.2
	압수·수색영장	632	586	46	92.7
2015년	구속영장	515	412	103	80
	체포영장	109	99	10	90.8
	압수·수색영장	569	530	39	93.1
2016년	구속영장	375	297	78	79.2
	체포영장	64	57	7	89.1
	압수·수색영장	432	397	35	91.9
2017년	구속영장	272	213	50	78.3
	체포영장	43	37	6	86
	압수·수색영장	291	264	27	90.7
2018년	구속영장	164	114	38	69.5
	체포영장	27	24	3	88.9
	압수·수색영장	283	267	16	94.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79.6%, 체포영장 89.6%, 압수·수색영장 92.6%
- 연도별 분석결과 각종 영장 청구 건수는 감소 추세,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만 감소 추세, 그 외 영장은 계속 변동
- 2018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69.5%, 체포영장 88.9%, 압수·수색영장 94.3%,
전년 대비 구속영장 발부율 감소,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증가

19. 2018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청구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합계	164	131	9	24	114	38	
장 교	14	11	2	1	8	5	
준·부사관	30	24	2	4	13	16	
병	119	95	5	19	92	17	
군무원	1	1			1		
기 타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청구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율	합계	2,279	1,893	232	154	1,795	440	
	장 교	150	119	23	8	110	38	
	준·부사관	353	301	36	16	259	86	
	병	1,758	1,463	167	128	1,415	309	
	군무원	11	6	4	1	7	4	
	민간인	5	4	1	0	2	3	
2014년	소계	933	790	118	25	759	171	
	장 교	40	25	14	1	32	8	
	준·부사관	137	124	12	1	116	20	
	병	750	637	91	22	608	140	
	군무원	4	2	1	1	2	2	
	민간인	2	2			1	1	
2015년	소계	522	444	43	35	412	103	
	장 교	30	29	1		18	12	
	준·부사관	76	65	6	5	56	19	
	병	409	347	32	30	334	69	
	군무원	4	1	3		3	1	
	민간인	3	2	1		1	2	
2016년	소계	388	315	37	36	297	78	
	장 교	38	32	3	3	31	6	
	준·부사관	61	49	9	3	43	16	
	병	287	234	24	29	221	56	
	군무원	2		1	1	2		
	민간인							
2017년	소계	272	213	25	34	213	50	
	장 교	28	22	3	3	21	7	
	준·부사관	49	39	7	3	31	15	
	병	193	150	15	28	160	27	
	군무원	2	2			1	1	
	민간인							
2018년	소계	164	131	9	24	114	38	
	장 교	14	11	2	1	8	5	
	준·부사관	30	24	2	4	13	16	
	병	119	95	5	19	92	17	
	군무원	1	1			1		
	민간인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중 장교 6.6%, 준·부사관 15.5%, 병 77.1% 차지,
발부율 장교 73%, 준·부사관 73%, 병 80%, 군무원 64%, 민간인 40%
- 연도별 분석결과 구속영장 발부율 지속 감소(단, 장교 발부율은 증가)
- 2018년 영장 발부율 70%로 민간법원(법원행정처 발행 2018 사법연감 기준 구속영장 발부율 80.9%)
보다 구속영장 엄격 심사

20. 2018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5	1	4	20
구속적부심	11	1	10	9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2	1		50
기 타	27	4	18	14.8

※ 기타 :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등

※ 청구= 인용+기각-기타(이송 등)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139	66	72	47.5
	구속적부심	165	26	133	15.8
	구속집행정지	5	3	2	60
	구속취소	1	1	0	100
	형사보상청구	9	4	0	44.4
	기 타	178	70	72	39.3
2014년	보석청구	52	30	22	57.7
	구속적부심	56	9	44	16.1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2015년	기 타	41	21	8	51.2
	보석청구	41	12	28	29.3
	구속적부심	38	8	30	21.1
	구속집행정지	2	1	1	50
	구속취소	1	1		100
	형사보상청구				
2016년	기 타	38	14	20	36.8
	보석청구	21	12	9	57.1
	구속적부심	35	6	28	17.1
	구속집행정지	2	1	1	50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4	1		25
2017년	기 타	44	26	12	59.1
	보석청구	20	11	9	55
	구속적부심	25	2	21	8
	구속집행정지	1	1		100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3	2		66.6
2018년	기 타	28	5	14	17.9
	보석청구	5	1	4	20
	구속적부심	11	1	10	9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2	1		50
기 타	27	4	18	14.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47.5%, 구속적부심 인용률 15.8%
- 연도별 분석결과 보석청구 및 구속적부심 감소 추세
- 2018년 보석청구 허가율 20%, 전년 대비 보석청구 허가율 감소

21. 2018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117	12	33	68	4	
원판결확인	117	12	33	68	4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717	72	227	401	17	
	원판결확인	716	72	227	400	17	
	원판결 확인율	99.8	100	100	99.8	100	
	감경	1/2미만	1		1		
		1/2이상					
2014년	소계	157	15	51	89	2	
	원판결확인	156	15	51	88	2	
	원판결 확인율	99.4	100	100	98.9	100	
	감경	1/2미만	1		1		
		1/2이상					
2015년	소계	194	24	63	103	4	
	원판결확인	194	24	63	103	4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6년	소계	115	8	37	67	3	
	원판결확인	115	8	37	67	3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7년	소계	134	13	43	74	4	
	원판결확인	134	13	43	74	4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8년	소계	117	12	33	68	4	
	원판결확인	117	12	33	68	4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99.9%

22. 2018년 무죄 선고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26	5	10	9	2	
간첩·양면 면역범죄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2		1	1	
	군용물관련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등)	5	2	1	1	1
	기타	2		2		
주요 면역범죄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1		1		
	절도강도의죄	1	1			
	사기형량배임죄					
풍속에관한죄						
교통 면역범죄	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1		1		
	특가법위반(도주)					
성 면역 범죄	형법위반	4	1	1	2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2			2	
	성매매특별법위반					
폭력 면역 범죄	상해폭행의죄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8	1	3	3	1	

23. 2018년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명	결과
2018-001	이병	절도방조	청구기각결정
2018-001	중사	모욕	벌금 100,000원
2018-001	일병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50,000원
2018-001	중사	절도	벌금 200,000원
2018-002	일병(상근)	사기	청구기각결정
2018-001	일병(상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벌금 50,000원



해군 군사법원

□ 해군 군사법원

1. 2018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명 (비율)	393 (100)	115 (29.3)	278 (70.7)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156 (100)	766 (35.5)	1,390 (64.5)
2014년	명 (비율)	404 (100)	157 (38.9)	247 (61.1)
2015년	명 (비율)	391 (100)	139 (35.5)	252 (64.5)
2016년	명 (비율)	474 (100)	171 (36.1)	303 (63.9)
2017년	명 (비율)	494 (100)	184 (37)	310 (63)
2018년	명 (비율)	393 (100)	115 (29.3)	278 (70.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35.5%, 약식 사건 64.5% 차지
- 전년도 대비 2018년 사건 수 감소

2. 2018년 형사사건 범죄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총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393		38		173		170		11		1	
범죄별	115	278	13	25	38	135	61	109	2	9	1	
군무이탈죄	4				2		2					
상관에관한죄	4				1		3					
군용물관련죄	4				1		2				1	
초병에관한죄	5						5					
성범죄(군인 대상)	13		3		4		5		1			
기타	4	16	1		1	5	2	11				
주요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4	3		1	2	1	2	1				
풍속에관한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의죄	7	7			1	3	6	4				
사기공갈죄	8	11			3	2	5	9				
횡령배임죄		1				1						
기타	4	22	1		1	9	2	12		1		
교통범죄	7	19	1	5	3	11	3	1		2		
도교법위반		6				5		1				
도교법위반(울주)	4	119	1	18	2	77	1	19		5		
특가법위반(도주)	1	1	1			1						
성범죄	15	6	1		6		8	5		1		
성폭법위반	5	6			4	1	1	5				
아청법위반	1	1				1	1					
성매매		1				1						
폭력범죄	15	38	2	1	3	10	9	27	1			
형법위반	1	6					1	6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8	15	1		4	7	3	8				

○ 분석

- 2018년 접수 중 교통범죄 39.9%, 주요형법범 17%, 폭력범죄 15.3%, 성범죄(군형법 포함) 12.2%,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9.4% 차지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92.4%

3. 2018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393 (100)	38 (9.7)	173 (44.0)	170 (43.3)	11 (2.8)	1 (0.2)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156 (100)	216 (10)	1,025 (47.6)	848 (39.3)	64 (3)	3 (0.1)
2014년	명 (비율)	404 (100)	46 (11.4)	168 (41.6)	180 (44.6)	10 (2.4)	
2015년	명 (비율)	391 (100)	34 (8.7)	180 (46)	162 (41.4)	14 (3.6)	1 (0.3)
2016년	명 (비율)	474 (100)	49 (10.3)	245 (51.7)	163 (34.4)	17 (3.6)	
2017년	명 (비율)	494 (100)	49 (9.9)	259 (52.5)	173 (35.1)	12 (2.4)	1 (0.1)
2018년	명 (비율)	393 (100)	38 (9.7)	173 (44)	170 (43.3)	11 (2.8)	1 (0.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준·부사관 47.6%, 병 39.3%, 장교 10%, 군무원 3% 차지
- 2018년 접수 중 준·부사관 44%, 병 43.3%, 장교 9.7%, 군무원 2.8% 차지

4. 2018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계	115 (100)	13 (11.3)	38 (33)	61 (53.1)	2 (1.7)	1 (0.9)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766 (100)	72 (9.4)	275 (35.9)	401 (52.3)	15 (2.0)	3 (0.4)
2014년	명 (비율)	157 (100)	20 (12.7)	45 (28.7)	91 (58)	1 (0.6)	
2015년	명 (비율)	139 (100)	10 (7.3)	41 (29.5)	85 (61.1)	2 (1.4)	1 (0.7)
2016년	명 (비율)	171 (100)	15 (8.8)	68 (39.8)	82 (48)	6 (3.4)	
2017년	명 (비율)	184 (100)	14 (7.6)	83 (45.1)	82 (44.6)	4 (2.2)	1 (0.5)
2018년	명 (비율)	115 (100)	13 (11.3)	38 (33)	61 (53.1)	2 (1.7)	1 (0.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병 52.4%, 준·부사관 35.9%, 장교 9.4%, 군무원 2% 차지
- 2018년 접수 중 병 53.1%, 준·부사관 33.0%, 장교 11.3%, 군무원 1.7%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민간인을 제외한 전 신분별 사건 감소

5. 2018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386 (100)	121 (31.3)	15 (3.9)	41 (10.6)	62 (16.1)	2 (0.5)	1 (0.2)	265 (68.7)	27 (7)	126 (32.7)	103 (26.7)	9 (2.3)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229 (100)	748 (33.6)	73 (3.3)	265 (12)	391 (17.5)	16 (0.7)	3 (0.1)	1,481 (66.4)	161 (7.2)	765 (34.3)	504 (22.6)	51 (2.3)
2014년	명 (비율)	397 (100)	159 (40.1)	19 (4.8)	43 (10.9)	95 (23.9)	2 (0.5)		238 (59.9)	26 (6.5)	120 (30.2)	86 (21.7)	6 (1.5)
2015년	명 (비율)	407 (100)	136 (33.4)	11 (2.7)	44 (10.8)	78 (19.2)	2 (0.5)	1 (0.2)	271 (66.6)	27 (6.6)	142 (34.9)	90 (22.1)	12 (3)
2016년	명 (비율)	530 (100)	168 (31.7)	14 (2.6)	64 (12.1)	84 (15.9)	6 (1.1)		362 (68.3)	41 (7.7)	194 (36.6)	112 (21.2)	15 (2.8)
2017년	명 (비율)	509 (100)	164 (32.2)	14 (2.8)	73 (14.3)	72 (14.1)	4 (0.8)	1 (0.2)	345 (67.8)	40 (7.8)	183 (36)	113 (22.2)	9 (1.8)
2018년	명 (비율)	386 (100)	121 (31.3)	15 (3.9)	41 (10.6)	62 (16.1)	2 (0.5)	1 (0.2)	265 (68.7)	27 (7)	126 (32.7)	103 (26.7)	9 (2.3)

○ 분석

- 2018년 처리 사건 중 장교 10.9%, 준·부사관 43.3%, 병 42.8%, 군무원 2.8% 차지

6. 2018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비율)	386 (100)	121 (31.3)		14 (3.6)	42 (10.9)	47 (12.2)	5 (1.3)	8 (2)	3 (0.8)	2 (0.5)		265 (68.7)	251 (65)	14 (3.7)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229 (100)	748 (33.6)		59 (2.7)	201 (9)	273 (12.2)	117 (5.3)	37 (1.7)	18 (0.8)	43 (1.9)	1,481 (66.4)	1,345 (60.3)	136 (6.1)
2014년	명 (비율)	397 (100)	159 (40.1)		10 (2.5)	46 (11.6)	48 (12.1)	37 (9.3)	4 (1)	3 (0.8)	11 (2.8)	238 (59.9)	226 (56.9)	12 (3)
2015년	명 (비율)	407 (100)	136 (33.4)		9 (2.2)	46 (11.3)	37 (9.1)	27 (6.6)	9 (2.2)	1 (0.3)	7 (1.7)	271 (66.6)	260 (63.9)	11 (2.7)
2016년	명 (비율)	530 (100)	168 (31.7)		18 (3.4)	23 (4.3)	73 (13.8)	28 (5.3)	9 (1.7)	6 (1.1)	11 (2.1)	362 (68.3)	314 (59.2)	48 (9.1)
2017년	명 (비율)	509 (100)	164 (32.2)		8 (1.6)	44 (8.4)	68 (13.4)	20 (3.9)	7 (1.4)	5 (1)	12 (2.3)	345 (67.8)	294 (57.8)	51 (10)
2018년	명 (비율)	386 (100)	121 (31.3)		14 (3.6)	42 (10.9)	47 (12.2)	5 (1.3)	8 (2)	3 (0.8)	2 (0.5)	265 (68.7)	251 (65)	14 (3.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33.6%, 약식 사건 66.4% 처리,
공판 사건 중 재산형 36.5%, 집행유예 26.9%, 자유형 7.9%, 무죄 4.9%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의 처리 비율 계속 변동, 공판 사건 중 선고유예 감소 추세
- 2018년 공판 사건 중 재산형 38.8%, 집행유예 34.7%, 자유형 11.6%, 선고유예 4.1%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자유형 증가, 재산형·선고유예 감소

7. 2018년 형사사건 범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계	386	121		14	42	47	5	8	3	2		265	251	14
민간범죄	군무이탈죄	5	5		1	3		1						
	상관에관한죄	4	4		1	1		1	1					
	군용물관련죄	6	6		1	4		1						
	초병에관한죄	5	5			5								
	성범죄(군인대상)	11	11		3	8								
	기타	16	3			1	1		1			13	11	2
주요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6	4			2	1	1				2	2	
	종속에관한죄													
	살인의죄	1	1		1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의죄	15	7		2	3	2					8	7	1
	사기공갈죄	18	8		1	1	5		1			10	10	
	횡령배임죄	3	2		1	1						1	1	
	기타	24	6			1	5					18	18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25	5		1	1	2		1			20	19	1
	도교법위반	6										6	5	1
	도교법위반(음주)	116	5			2	1		2			111	109	2
	특가법위반(도주)	2	1				1					1	1	
성범죄	형법위반	17	11		2	2	6		1			6	5	1
	성폭법위반	10	5				4		1			5	5	
	아청법위반	4	3			2	1					1	1	
	성매매	1										1	1	
폭력범죄	형법위반	60	21			4	12	1	1	1	2	39	37	2
	폭처법위반	7	1				1					6	6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1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23	6				5			1		17	13	4	

○ 분석

- 교통범죄 38.6%, 주요형법범 17.4%, 성범죄(군형법 포함) 11.1%,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9.3% 차지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92.6%
- 군형법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72.7% 차지

8. 2018년 형사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386	121		14	42	47	5	8	3	2		265	251	14
장 교	장성	1	1	1										
	영관	13	6	2		1		2	1			7	5	2
	위관	28	8		2	4	1		1			20	18	2
준·부사관	167	41		5	10	19	1	5	1			126	123	3
병	165	62		6	29	22	2	1		2		103	96	7
군무원	11	2			1	1						9	9	
민간인	1	1					1							

○ 분석

- 장교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33.3%, 자유형 20% 차지
- 준·부사관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46.3%, 집행유예 24.4% 차지
- 병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46.8%, 재산형 35.5% 차지

9. 2018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합계	121	66	24	12	7	6	3		3		
구 속	24	16	2	2	2	1	1				
불구속	97	50	22	10	5	5	2		3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19.8%, 불구속 사건 80.2% 차지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83.3%, 121일 이상 16.7% 차지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84.5%, 121일 이상 120일 이내 15.5% 차지

10. 2018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121	15	41	62	2	1	
확정	소계	88	7	29	50	1	1
	유죄	83	5	27	49	1	1
	무죄	3		2	1		
	면소						
	공소기각판결	1	1				
	공소기각결정	1	1				
상소	소계	31	8	12	10	1	
	쌍방향소	11	2	5	3	1	
	피고인항소	14	4	5	5		
	군검사항소	6	2	2	2		
	즉시항고						
	비약상고						
이송	2			2			

○ 분석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72.7%, 상소율 25.6%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94.3%
- 신분별 상소율 장교 25.8%, 준·부사관 38.7%, 병 32.3%, 군무원 3.2%

11. 2018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14 (100)		1 (7.1)	2 (14.3)	2 (14.3)	6 (42.9)	3 (21.4)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59 (100)		2 (3.4)	3 (5.1)	11 (18.6)	27 (45.8)	16 (27.1)
2014년 명 (비율)	10 (100)				1 (10)	7 (63)	2 (27)
2015년 명 (비율)	9 (100)			1 (11)	4 (45)	1 (11)	3 (33)
2016년 명 (비율)	18 (100)				2 (15)	10 (55)	6 (30)
2017년 명 (비율)	8 (100)		1 (11.1)		2 (33.3)	3 (33.3)	2 (22.3)
2018년 명 (비율)	14 (100)		1 (7.1)	2 (14.3)	2 (14.3)	6 (42.9)	3 (21.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27.1%, 1년 이상 3년 미만 45.8%, 1년 미만 27.1% 차지
- 2018년 징역 5년 이상 3명(징역 10년 1명, 징역 8년 2명)

12. 2018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85 (100)	58 (68.2)	6 (7)	52 (61.2)	27 (31.8)

※ 이송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720 (100)	494 (68.6)	110 (15.3)	384 (53.3)	226 (31.4)
2014년	명 (비율)	162 (100)	120 (74)	33 (20)	87 (54)	42 (26)
2015년	명 (비율)	144 (100)	100 (69)	20 (14)	80 (55)	44 (31)
2016년	명 (비율)	169 (100)	111 (65.7)	25 (14.8)	86 (50.9)	58 (34.3)
2017년	명 (비율)	160 (100)	105 (65.6)	26 (16.3)	79 (49.3)	55 (34.4)
2018년	명 (비율)	85 (100)	58 (68.2)	6 (7)	52 (61.2)	27 (31.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31.4%, 국선변호인 중 민간변호사 선정률 15.3%
- 2018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31.8%, 국선변호인 중 군법무관 선정률 89.7%
- 2018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률 감소, 국선변호인 중 민간변호사 선정률 감소

13. 2018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계	30	3	1					2	7		2			1	9	5							
군형법위반	11	3	1					2							5								
형법위반	11								3		1			1	2	4							
성폭법위반	5								3		1					1							
아청법위반	3								1						2								
기타																							

13-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5년 평균	합계	187	6	9	6	2	6	0	1	4	17	29	4	7	1	1	7	38	27	7	2	0	10	0	0	3	0	0	0	0	
	군형법위반	53	3	4	1		2				8		3				1	23	1	3											
	형법위반	65	1				3		1	1	4	9	1	5		1	4	9	19	2	1						1				
	성폭법위반	58	2	5	5	2	1			3	5	14		2	1		1	4	7	2	1						2				
	아청법위반	11										6					1	2													
	기타																														
2014년	소계	33	1	3	1	1	2		1	4	1	1	2	1			7	3	2				3								
	군형법위반	12					1			1		1					7		1				1								
	형법위반	8					1		1		1		2					1	1				1								
	성폭법위반	13	1	3	1	1				3				1				2					1								
	아청법위반																														
	기타																														
2015년	소계	34		2	1	1	2			1	3	5	1				2	8	3	3			2								
	군형법위반	10		1			1			1	1	1						4	1	1			1								
	형법위반	11					1		1		2						1	3	2	1											
	성폭법위반	11		1	1	1					2	2					1	1	1	1											
	아청법위반	2									1												1								
	기타																														
2016년	소계	52	1	2	2	1				4	13	1	1		1	1	4	14	1	1		4			1						
	군형법위반	5		1						1							1	1				1									
	형법위반	25	1				1			3	2	1			1	1	2	11				2									
	성폭법위반	18		1	2						8		1				1	2	1	1						1					
	아청법위반	4									3											1									
	기타																														
2017년	소계	38	1	1	2	1			3	4	3	1	2			3	10	2	1	1		1			2						
	군형법위반	15		1	1					3		1					1	6		1		1									
	형법위반	10								1	1	1	2				1	2	1	1						1					
	성폭법위반	11	1		1	1			3		1						2	1								1					
	아청법위반	2									1						1														
	기타																														
2018년	소계	30	3	1						2	7		2			1	9	5													
	군형법위반	11	3	1						2							5														
	형법위반	11									3		1			1	2	4													
	성폭법위반	5									3		1					1													
	아청법위반	3									1						2														
	기타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일반형법위반 34.8%, 성폭법위반 31%, 군형법위반 28.3% 차지, 병 48.7%, 준·부사관 33.7%, 장교 16%, 군무원 1.6% 차지, 재산형 34.7%, 집행유예 34.2%, 자유형 9.1%, 무죄 8%, 선고유예 6.9% 차지
- 2018년 군형법위반 36.7%, 성폭법위반 16.7% 차지, 전년 대비 군형법위반 감소
- 2018년 병 50%, 준·부사관 36.7%, 장교 13.3% 차지
- 2018년 집행유예 및 재산형 각 40%, 자유형 13% 차지

14. 2018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1 (100)			1 (100)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 분		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3 (100)		2 (66.7)	1 (33.3)			
2014년	명 (비율)							
2015년	명 (비율)	1 (100)		1 (100)				
2016년	명 (비율)							
2017년	명 (비율)	1 (100)		1 (100)				
2018년	명 (비율)	1 (100)			1 (100)			

○ 분석

- 최근 5년 민간인 처리 3건
 - * 2015년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 2년
 - * 2017년 초병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 2년(예비역)
 - * 2018년 군용물손괴로 선고유예(예비역)

15. 2018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명 (비율)	121 (100)	31 (25.6)	88 (72.7)	2 (1.7)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748 (100)	233 (31.1)	472 (63.1)	43 (5.8)
2014년	명 (비율)	159 (100)	33 (20.8)	115 (72.3)	11 (6.9)
2015년	명 (비율)	136 (100)	41 (30.1)	88 (64.7)	7 (5.2)
2016년	명 (비율)	168 (100)	63 (37.5)	94 (56)	11 (6.5)
2017년	명 (비율)	164 (100)	65 (39.6)	87 (53.1)	12 (7.3)
2018년	명 (비율)	121 (100)	31 (25.6)	88 (72.7)	2 (1.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항소 31.1%, 확정 63.1%, 이송 5.8% 차지
- 2018년 항소 25.6%, 확정 72.7%, 이송 1.7%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항소 감소

16. 2018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31 (100)	14 (45.2)	6 (19.3)	11 (35.5)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33 (100)	117 (50.2)	52 (22.3)	64 (27.5)
2014년	명 (비율)	33 (100)	17 (52)	10 (30)	6 (18)
2015년	명 (비율)	41 (100)	26 (63)	9 (22)	6 (15)
2016년	명 (비율)	63 (100)	27 (42.9)	14 (22.2)	22 (34.9)
2017년	명 (비율)	65 (100)	33 (50.8)	13 (20)	19 (29.2)
2018년	명 (비율)	31 (100)	14 (45.2)	6 (19.3)	11 (35.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항소 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77.7%, 군검사의 항소율 49.8% 차지
- 2018년 피고인의 항소율 80.7%, 군검사의 항소율 54.8%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피고인의 항소율 유사, 군검사의 항소율 증가

17. 2018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명 (비율)	265 (100)	251 (94.7)	8 (3)	6 (2.3)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481 (100)	1,345 (90.8)	94 (6.4)	42 (2.8)
2014년	명 (비율)	238 (100)	226 (95)	10 (4.2)	2 (0.8)
2015년	명 (비율)	271 (100)	260 (96)	7 (2.5)	4 (1.5)
2016년	명 (비율)	362 (100)	314 (86.8)	29 (8)	19 (5.2)
2017년	명 (비율)	345 (100)	294 (85.2)	40 (11.6)	11 (3.2)
2018년	명 (비율)	265 (100)	251 (94.7)	8 (3)	6 (2.3)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90.8%, 공판절차 회부 6.4%
- 연도별 분석결과 약식명령률 증가, 공판절차 회부 감소
- 2018년 약식명령 94.7%, 공판절차 회부 3%, 전년 대비 약식명령률 증가, 공판절차 회부 감소

18. 2018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34	24	10	70.6
체포영장	5	5		100
압수·수색영장	102	98	4	96.1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을	구속영장	264	219	45	83
	체포영장	40	34	6	85
	압수·수색영장	384	353	31	92
2014년	구속영장	84	68	16	81
	체포영장	6	6		100
	압수·수색영장	58	53	5	90
2015년	구속영장	64	58	6	91
	체포영장	14	11	3	79
	압수·수색영장	63	63		100
2016년	구속영장	46	38	8	83
	체포영장	10	7	3	70
	압수·수색영장	64	54	10	84
2017년	구속영장	36	31	5	86
	체포영장	5	5		100
	압수·수색영장	97	85	12	87
2018년	구속영장	34	24	10	70.6
	체포영장	5	5		100
	압수·수색영장	102	98	4	96.1

○ 분석

- 연도별 분석결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증가, 구속영장 청구 감소
- 2018년 전년대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증가

19. 2018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합계	34	24	10
장 교	4	4	
준·부사관	12	9	3
병	18	11	7
군무원			
기 타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5년 평균율	합 계	264	219	45
	장 교	26	21	5
	준·부사관	86	74	12
	병	149	121	28
	군무원	3	3	
2014년	민간인			
	소계	84	68	16
	장 교	7	7	
	준·부사관	23	20	3
	병	54	41	13
2015년	군무원			
	민간인			
	소계	64	58	6
	장 교	4	2	2
	준·부사관	27	25	2
2016년	병	33	31	2
	군무원			
	민간인			
	소계	46	38	8
	장 교	4	3	1
2017년	준·부사관	13	10	3
	병	26	22	4
	군무원	3	3	
	민간인			
	소계	36	31	5
2018년	장 교	7	5	2
	준·부사관	11	10	1
	병	18	16	2
	군무원			
	민간인			
2018년	소계	34	24	10
	장 교	4	4	
	준·부사관	12	9	3
	병	18	11	7
	군무원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중 장교 10%, 준·부사관 33%, 병 56%, 군무원 1% 차지, 발부율 장교 81%, 준·부사관 86%, 병 81%, 군무원 100%
- 구속영장 청구건수 및 발부율 감소 추세

20. 2018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1		1	0
구속적부심	2		2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1		1	0
형사보상청구	3	1	2	33.3
기 타	3	1	2	33.3

※ 기타 : 회피 및 기피신청 등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13	7	6	54
	구속적부심	12	2	10	17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1		1	0
	형사보상청구	7	4	3	57
	기 타	6	3	3	50
2014년	보석청구	3		3	0
	구속적부심	4	2	2	5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2015년	보석청구	2	1	1	50
	구속적부심	1		1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기 타				
2016년	보석청구	5	5		100
	구속적부심	1		1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2017년	보석청구	2	1	1	50
	구속적부심	4		4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2	1	1	50
	기 타	3	2	1	66
2018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2		2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1		1	0
	형사보상청구	3	1	2	33
	기 타	3	1	2	3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54%, 구속적부심 인용률 17%
- 2018년 신청사건 중 전체적으로 허가율 감소 추세

21. 2018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305	29	143	124	9	
원판결확인	305	29	143	124	9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총계	1,722	175	902	587	58	
	원판결확인	1,716	175	901	582	58	
	원판결 확인율	99.7	100	99.9	99.1	100	
	감경	1/2미만	6		1	5	
		1/2이상					
2014년	총계	321	35	148	127	11	
	원판결확인	318	35	148	124	11	
	원판결 확인율	99	100	100	97	100	
	감경	1/2미만	3			3	
		1/2이상					
2015년	총계	300	28	160	99	13	
	원판결확인	297	28	159	97	13	
	원판결 확인율	99	100	99	99	100	
	감경	1/2미만	3		1	2	
		1/2이상					
2016년	총계	390	38	221	118	13	
	원판결확인	390	38	221	118	13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7년	총계	406	45	230	119	12	
	원판결확인	406	45	230	119	12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8년	총계	305	29	143	124	9	
	원판결확인	305	29	143	124	9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99.7%
- 2016년 이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원판결확인 100%

22. 2018년 무죄 선고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3	1	2			
군형법 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2	1	1		
	군용물관련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대상)					
	기타					
주요 형법 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의죄					
	사기횡령배임죄					
	풍속에관한죄					
교통 범죄	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1		1		
	특가법위반(도주)					
성 범죄	형법위반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성매매특별법위반					
폭 력 범 죄	상해폭행의죄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23. 2018년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명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공군 군사법원

□ 공군 군사법원

1. 2018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사건	약식사건
명 (비율)	186 (100)	97 (52)	89 (48)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사건	약식사건
5년 평균을	934 (100)	407 (44)	527 (56)
2014년	151 (100)	69 (46)	82 (54)
2015년	166 (100)	75 (45)	91 (55)
2016년	238 (100)	92 (39)	146 (61)
2017년	193 (100)	74 (38)	119 (62)
2018년	186 (100)	97 (52)	89 (4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44%, 약식사건 56%
- 전년도 대비 전체 형사사건 4% 감소
- 전년도 대비 공판사건(31%) 증가 및 약식사건(25%) 감소

2. 2018년 형사사건 범죄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97	89	16	13	39	47	35	24	5	5	2	
간접행위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14		1			13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2	1		1	1	1					
	초병에관한죄	2				1						1
	성범죄(군인등)	14		4		5		3		2		
기타	2				1						1	
주요행위	뇌물에관한죄	1			1							
	문서인장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3				2	1					
	절도강도의죄		3				1	1		1		
	사기공갈죄	1	2			1	1	1				
범죄예방	횡령배임죄	3	2	1	1	2				1		
	풍속에관한죄											
	기타	8	11	2		3	8	2	3	1		
	교통법위반	7	8	3	1	3	4	1	1		2	
	도교법위반		2		1		1					
	도교법위반(음주)	4	32	1	8	1	20	2	3		1	
범죄예방	특가법위반(도주)	1				1						
	형법위반	4	2			1	1	2	1	1		
	성폭법위반	11	3			8	1	3	2			
	아청법위반	2	1	1		1		1				
범죄예방	성매매특별법위반											
	상해폭행의죄	14	13	2	1	5	5	6	7	1		
	상해등치사	1				1						
	폭처법위반	1	4	1			3		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2	5			1	2	1	3				

○ 분석

- 2018년 접수 중 교통범죄 29%, 성범죄(군형법 포함) 20%, 폭력범죄 18%, 주요형법법 18%, 군형법법(성범죄 제외) 11%
- 교통범죄 중 약식사건 78%

3. 2018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186 (100)	29 (16)	86 (46)	59 (32)	10 (5)	2 (1)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920 (100)	139 (15)	432 (47)	292 (32)	50 (5)	7 (1)
2014년	명 (비율)	146 (100)	16 (11)	70 (48)	51 (35)	7 (5)	2 (1)
2015년	명 (비율)	163 (100)	29 (18)	68 (42)	57 (35)	9 (5)	
2016년	명 (비율)	232 (100)	37 (16)	112 (48)	67 (29)	15 (6)	1 (1)
2017년	명 (비율)	193 (100)	28 (15)	96 (50)	58 (30)	9 (4)	2 (1)
2018년	명 (비율)	186 (100)	29 (16)	86 (46)	59 (32)	10 (5)	2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준·부사관 47%, 병 32%, 장교 15%, 군무원 5%
- 연도별 분석결과 2016년도 이후 사건 감소 추세
- 2018년 접수 중 준·부사관 46%, 병 32%, 장교 16%, 군무원 5%
- 2018년도 전년 대비 사건 감소

4. 2018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97 (100)	16 (17)	39 (40)	35 (36)	5 (5)	2 (2)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31 (100)	67 (15)	172 (40)	166 (39)	20 (5)	6 (1)
2014년	명 (비율)	77 (100)	10 (13)	29 (37)	34 (44)	2 (3)	2 (3)
2015년	명 (비율)	82 (100)	15 (18)	32 (39)	31 (38)	4 (5)	
2016년	명 (비율)	101 (100)	19 (19)	37 (37)	41 (40)	4 (4)	
2017년	명 (비율)	74 (100)	7 (9)	35 (47)	25 (34)	5 (7)	2 (3)
2018년	명 (비율)	97 (100)	16 (17)	39 (40)	35 (36)	5 (5)	2 (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준·부사관 40%, 병 39%, 장교 15%, 군무원 5%
- 연도별 분석결과 2017년도 대비 2018년 장교사건 증가
- 2018년 접수 중 준·부사관 40%, 병 36%, 장교 17%, 군무원 5%
- 2018년도 전년 대비 사건 증가

5. 2018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214 (100)	110 (51)	18 (8)	46 (22)	39 (18)	5 (2)	2 (1)	104 (49)	18 (8)	52 (24)	28 (13)	6 (3)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985 (100)	434 (44)	69 (7)	175 (18)	167 (17)	19 (2)	4 (=0)	551 (56)	86 (9)	283 (29)	145 (15)	36 (3)	1 (=0)
2014년	명 (비율)	161 (100)	77 (48)	10 (6)	29 (18)	34 (22)	2 (1)	2 (1)	84 (52)	10 (6)	46 (29)	21 (13)	7 (4)	
2015년	명 (비율)	172 (100)	81 (47)	15 (9)	32 (19)	30 (17)	4 (2)		91 (53)	17 (10)	38 (22)	30 (18)	6 (3)	
2016년	명 (비율)	251 (100)	101 (40)	19 (7)	37 (15)	41 (16)	4 (2)		150 (60)	22 (9)	79 (31)	36 (14)	12 (5)	1 (1)
2017년	명 (비율)	187 (100)	65 (35)	7 (4)	31 (17)	23 (12)	4 (2)		122 (65)	19 (10)	68 (36)	30 (17)	5 (2)	
2018년	명 (비율)	214 (100)	110 (52)	18 (8)	46 (22)	39 (19)	5 (2)	2 (1)	104 (49)	18 (8)	52 (24)	28 (13)	6 (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준·부사관 46%, 병 32%, 장교 16%, 군무원 6%
- 2018년 처리 중 준·부사관 46%, 병 31%, 장교 17%, 군무원 5%
- 2018년 전년 대비 공판사건 증가, 약식사건 감소

6. 2018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비율)	214 (100)	110 (51)		4 (2)	41 (19)	37 (17)	11 (5)	5 (2)			6 (3)	6 (3)	104 (49)	99 (47)	5 (2)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985 (100)	434 (44)		19 (2)	142 (14)	144 (15)	52 (5)	24 (2)	5 (1)	33 (3)	15 (2)	551 (56)	506 (51)	45 (5)
2014년	명 (비율)	161 (100)	77 (48)		1 (1)	30 (19)	28 (17)	9 (5)	3 (2)		6 (4)		84 (52)	77 (48)	7 (4)
2015년	명 (비율)	172 (100)	81 (47)		6 (3)	20 (12)	33 (19)	11 (6)	3 (2)	2 (1)	5 (3)	1 (1)	91 (53)	84 (49)	7 (4)
2016년	명 (비율)	251 (100)	101 (40)		6 (2)	35 (15)	24 (10)	14 (5)	7 (3)	3 (1)	6 (2)	6 (2)	150 (60)	134 (54)	16 (6)
2017년	명 (비율)	187 (100)	65 (35)		2 (1)	16 (9)	22 (12)	7 (4)	6 (3)		10 (5)	2 (1)	122 (65)	112 (60)	10 (5)
2018년	명 (비율)	214 (100)	110 (51)		4 (2)	41 (19)	37 (17)	11 (5)	5 (2)		6 (3)	6 (3)	104 (49)	99 (47)	5 (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44%, 약식사건 56%,
공판사건 중 재산형 33%, 집행유예 32%, 선고유예 12%, 무죄 6% 차지
- 2018년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 37%, 재산형 34%, 선고유예 10%, 자유형 5% 차지
- 2018년 전년 대비 공판사건 중 집행유예 대폭 증가

7. 2018년 형사사건 범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214	110	0	4	41	36	12	5	0	6	6	104	99	5	
군형법범	간첩이적죄	0	0									0			
	군무이탈죄	14	14		9	1	4					0			
	상관에관한죄	1	1				1					0			
	군용물관련죄	3	2		2							1	1		
	초병에관한죄	3	3		1		2					0			
	성범죄(군인등)	23	23		1	17		3			1	1	0		
	기타	4	4				3	1				0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0	0									0			
	뇌물에관한죄	0	0									0			
	문서인장죄	0	0									0			
	살인의죄	0	0									0			
	과실치사상죄	3	3				2		1			0			
	절도강도의죄	3	0									3	3		
	사기공갈죄	4	2				1				1	2	2		
	횡령배임죄	5	3			1	1			1		2	2		
기타	20	7			1	3		1	2		13	11	2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18	8			1	7					10	10		
	도교법위반	2	0									2	2		
	도교법위반(음주)	39	4			1	2			1		35	34	1	
	특가법위반(도주)	2	2				2					0			
성범죄	형법위반	8	5		1	2	1		1			3	3		
	성폭법위반	12	10		1	5	3				1	2	2		
	아청법위반	4	3				2			1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1	1				1					0			
폭력범죄	상해폭행의죄	26	9			1	4	1	2			1	17	16	1
	상해등치사	1	1		1							0			
	폭처법위반	6	1								1	5	4	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0	0									0				
국가보안법위반	0	0									0				
기타	12	4				3					1	8	8		

○ 분석

- 교통범죄 29%, 성범죄(군형법 포함) 22%, 주요형법범 16%, 폭력범죄 15%,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2%
- 군형법범 중 성범죄 48%
- 교통범죄 중 약식사건 77%
- 군형법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74%, 선고유예 13%

8. 2018년 형사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214	110	0	4	41	36	12	5	0	6	6	104	99	5
장 교	장성	0	0									0		
	영관	9	5		2	1	1				1	4	4	
	위관	25	11		2	4	1			3	1	14	11	3
준·부사관	98	46		3	14	18	4	5		1	1	52	52	
병	67	39		1	17	12	4			2	3	28	27	1
군무원	11	5			3	1	1					6	5	1
기타	4	4			3		1					0		

○ 분석

- 장교 공판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25%, 재산형 31%, 선고유예 13%
- 준·부사관 공판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30%, 재산형 39%, 무죄 11%, 자유형 7%, 선고유예 9%
- 병 공판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44%, 재산형 31%, 선고유예 10%, 자유형 3%
- 군무원 공판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60%, 재산형 및 선고유예 각 20%

9. 2018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합계	110	41	21	15	13	6	7	3	2	2	
구 속	14	13	1								
불구속	96	28	20	15	13	6	7	3	2	2	

○ 분석

- 공판사건 중 구속사건 13%, 불구속 사건 87%
- 구속사건 중 120일 이내 100%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66%, 121일 이상 34%

10. 2018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 계	110	18	46	39	5	2	
확 정	소계	56	6	21	26	1	2
	유죄	55	6	20	26	1	2
	무죄	1		1			
	면소	0					
	공소기각판결	0					
	공소기각결정	0					
상 소	소계	48	9	24	11	4	
	쌍방향소	30	7	12	8	3	
	피고인항소	10	2	5	2	1	
	군검사항소	8		7	1		
	즉시항고	0					
	비약상고	0					
이송	6	3	1	2			

○ 분석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51%, 상소율 44%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98%
- 신분별 상소율 장교 50%, 준·부사관 52%, 병 28%, 군무원 80%

11. 2018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4 (100)				3 (75)	1 (25)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5 (100)			3 (12)	4 (16)	13 (52)	5 (20)
2014년	명 (비율)	7 (100)			1 (14)		6 (86)	
2015년	명 (비율)	6 (100)				1 (17)	2 (33)	3 (50)
2016년	명 (비율)	6 (100)			1 (17)		3 (50)	2 (33)
2017년	명 (비율)	2 (100)			1 (50)		1 (50)	
2018년	명 (비율)	4 (100)				3 (75)	1 (2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28%, 1년 이상 3년 미만 52%, 1년 미만 20%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계속 변동
- 2018년 3년 이상 75%, 1년 이상 3년 미만 25% 차지

12. 2018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91 (100)	44 (48)	18 (20)	26 (28)	47 (52)

※ 이송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13 (100)	229 (55)	75 (18)	154 (37)	184 (45)
2014년	명 (비율)	76 (100)	47 (62)	10 (13)	37 (49)	29 (38)
2015년	명 (비율)	82 (100)	53 (64)	20 (24)	33 (40)	29 (36)
2016년	명 (비율)	108 (100)	53 (49)	11 (10)	42 (39)	55 (51)
2017년	명 (비율)	56 (100)	32 (57)	16 (28.5)	16 (28.5)	24 (43)
2018년	명 (비율)	91 (100)	44 (48)	18 (20)	26 (28)	47 (5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45%, 민간국선변호사 선정률 18%
- 연도별 분석결과 2014년도 이후 군법무관 선정률 계속 감소,
민간국선변호사 및 사선변호인 선임률 계속 변동
- 2018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52%, 민간국선변호사 선정률 20%, 군법무관 선정률 28%
- 2018년 전년 대비 국선변호인 선정률 감소, 사선변호인 선임률 증가

13. 2018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예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예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예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예
계	42	0	5	1	1	0	0	0	2	9	4	1	1	0	1	1	7	2	0	0	0	0	3	0	3	0	1	0	0
군형법위반	23		5		1				1	5		1				5						2		2		1			
형법위반	5											1				1	1	1						1					
성폭법위반	10								1	4	2					1	1					1							
아청법위반	3			1							1																		
기타	1										1																		

13-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예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예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예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예	
5년 평균	합계	165	6	8	5	1	4	0	0	5	29	17	6	3	0	5	7	26	20	7	1	1	9	0	4	0	1	0	0	0
	군형법위반	77	4	7	0	1	0	0	0	1	22	0	6	2	0	3	0	16	0	7	0	0	4	0	3	0	1	0	0	0
	형법위반	25	2	1	2	0	2	0	0	1	1	0	0	1	0	0	3	3	6	0	1	0	1	0	1	0	0	0	0	0
	성폭법위반	47	0	0	2	0	1	0	0	3	6	11	0	0	0	1	1	4	14	0	0	1	3	0	0	0	0	0	0	0
	아청법위반	15	0	0	1	0	1	0	0	0	0	5	0	0	0	1	3	3	0	0	0	0	1	0	0	0	0	0	0	0
	기타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4년	소계	15	1	1	1	0	0	0	2	3	0	0	0	0	0	2	2	2	1	0	0	0	0	0	0	0	0	0	0	0
	군형법위반	5								3							1		1											
	형법위반	5	1	1	1											1	1													
	성폭법위반	5							2							1	2													
	아청법위반	0																												
	기타	0																												
2015년	소계	30	3	1	1	0	1	0	0	2	6	4	0	0	0	0	3	8	0	0	0	1	0	0	0	0	0	0	0	0
	군형법위반	10	2	1					1	1	4					2														
	형법위반	5	1													1	3					1								
	성폭법위반	13			1	1			1	4						1	5					1								
	아청법위반	2								2																				
	기타	0																												
2016년	소계	53	1	1	2	0	2	0	1	11	4	1	1	0	4	2	9	6	3	0	1	3	0	1	0	0	0	0	0	
	군형법위반	26	1	1					9		1	1			3	5	5	3				1		1						
	형법위반	6			1	1			1	1					1	1														
	성폭법위반	15			1				1	3					1	2	5				1	1								
	아청법위반	6				1				1					1	2						1								
	기타	0																												
2017년	소계	25	1	0	0	0	1	0	0	4	3	0	1	0	0	2	5	2	3	1	0	2	0	0	0	0	0	0	0	
	군형법위반	13	1						4			1				3		3				1								
	형법위반	4				1											1		1		1	1								
	성폭법위반	4							2							1	1													
	아청법위반	4							1							2	1													
	기타	0																												
2018년	소계	42	0	5	1	1	0	0	0	2	9	4	1	1	0	1	1	7	2	0	0	0	3	0	3	0	1	0	0	
	군형법위반	23		5		1				1	5		1				5					2		2		1				
	형법위반	5											1				1	1	1					1						
	성폭법위반	10							1	4	2						1	1				1								
	아청법위반	3			1						1					1														
	기타	1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군형법위반 47%, 성폭법위반 28%, 형법위반 15%, 아청법위반 9%
병 43%, 준·부사관 39%, 장교 15%, 군무원 3%,
집행유예 41%, 재산형 25%, 자유형 11%, 선고유예 9%, 무죄 5%
- 연도별 분석결과 전체 성범죄 사건 수 계속 변동
- 전년도 대비 2018년도 군형법위반 및 성폭법위반 성범죄 사건 대폭 증가
- 2018년 군형법위반 55%, 성폭법위반 24%, 형법위반 12%, 아청법위반 7%, 기타 2%
- 2018년 병 31%, 준·부사관 43%, 장교 17%, 군무원 9%
- 2018년 집행유예 57%, 재산형 17%, 기타 10%, 선고유예 및 자유형 각 7%, 무죄 2%

14. 2018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2 (100)		1 (50)	1 (50)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 (100)		2 (50)	2 (50)			
2014년	명 (비율)	2 (100)		1 (50)	1 (50)			
2015년	명 (비율)	0						
2016년	명 (비율)	0						
2017년	명 (비율)	0						
2018년	명 (비율)	2 (100)		1 (50)	1 (5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사건 처리 중 집행유예 50%, 선고유예 50%
- 연도별 분석결과 최근 5년간 민간인 사건 처리는 총 4건으로 처리 실적이 거의 없음
- 2018년 민간인 재판 2건

15. 2018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명 (비율)	110 (100)	48 (44)	56 (50)	6 (6)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44 (100)	165 (37)	247 (56)	32 (7)
2014년	명 (비율)	77 (100)	24 (31)	49 (64)	4 (5)
2015년	명 (비율)	82 (100)	27 (33)	50 (61)	5 (6)
2016년	명 (비율)	100 (100)	39 (39)	54 (54)	7 (7)
2017년	명 (비율)	75 (100)	27 (36)	38 (51)	10 (13)
2018년	명 (비율)	110 (100)	48 (44)	56 (50)	6 (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확정 56%, 항소 37%, 이송 7%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 확정, 이송 사건 수 각 계속 변동
- 2018년 확정 50%, 항소 44%, 이송 6%
- 2018년 전년 대비 항소사건 비율 증가

16. 2018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48 (100)	10 (21)	8 (17)	30 (62)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65 (100)	44 (27)	37 (22)	84 (51)
2014년	명 (비율)	24 (100)	15 (63)	2 (8)	7 (29)
2015년	명 (비율)	27 (100)	5 (18)	7 (26)	15 (56)
2016년	명 (비율)	39 (100)	9 (23)	10 (26)	20 (51)
2017년	명 (비율)	27 (100)	5 (19)	10 (37)	12 (44)
2018년	명 (비율)	48 (100)	10 (21)	8 (17)	30 (6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피고인 항소율 78%, 군검사 항소율 73%
- 2018년 피고인 항소율 83%, 군검사 항소율 79%

17. 2018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명 (비율)	104 (100)	99 (95)	5 (5)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5년 평균	합계 (비율)	551 (100)	506 (92)	42 (7)	3 (1)
2014년	명 (비율)	84 (100)	77 (92)	7 (8)	
2015년	명 (비율)	91 (100)	84 (92)	7 (8)	
2016년	명 (비율)	150 (100)	134 (89)	15 (10)	1 (1)
2017년	명 (비율)	122 (100)	112 (92)	8 (6)	2 (2)
2018년	명 (비율)	104 (100)	99 (95)	5 (5)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92%, 공판절차 회부 7%
- 2018년 약식명령 95%, 공판절차 회부 5%
- 전년 대비 약식명령 비율 증가, 공판절차 회부 비율 감소

18. 2018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15	14	1	93
체포영장	5	5	0	100
압수·수색영장	29	27	2	93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	구속영장	87	71	16	82
	체포영장	21	19	2	90
	압수·수색영장	175	164	11	94
2014년	구속영장	21	17	4	81
	체포영장	2	2		100
	압수·수색영장	39	37	2	95
2015년	구속영장	17	14	3	82
	체포영장	7	7		100
	압수·수색영장	27	25	2	93
2016년	구속영장	23	19	4	83
	체포영장	6	4	2	67
	압수·수색영장	55	51	4	93
2017년	구속영장	11	7	4	64
	체포영장	1	1	0	100
	압수·수색영장	25	24	1	96
2018년	구속영장	15	14	1	93
	체포영장	5	5	0	100
	압수·수색영장	29	27	2	9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82%, 체포영장 90%, 압수·수색영장 94%
- 연도별 분석결과 각종 영장 청구율 및 발부율 계속 변동
- 2018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93%, 체포영장 100%, 압수·수색영장 93%
- 2018년 전년도 대비 구속·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 모두 증가

19. 2018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청구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합계	15	13	1	1		14	1
장 교	3	2	1			3	
준·부사관	5	4		1		4	1
병	7	7				7	
군무원							
기 타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청구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율	합 계	90	80	4	6	74	16
	장 교	20	17	1	2	14	6
	준·부사관	27	22	1	4	25	2
	병	41	39	2	0	33	8
	군무원	2	2	0	0	2	0
	민간인	0	0	0	0	0	0
2014년	소계	21	20	1	0	17	4
	장 교	5	5			2	3
	준·부사관	7	6	1		7	
	병	9	9			8	1
	군무원						
2015년	소계	17	15	0	2	14	3
	장 교	5	4		1	4	1
	준·부사관	4	3		1	4	
	병	8	8			6	2
	군무원						
2016년	소계	26	22	1	3	22	4
	장 교	4	3		1	3	1
	준·부사관	7	5		2	7	
	병	13	12	1		10	3
	군무원	2	2			2	
2017년	소계	11	10	1	0	7	4
	장 교	3	3			2	1
	준·부사관	4	4			3	1
	병	4	3	1		2	2
	군무원						
2018년	소계	15	13	1	1	14	1
	장 교	3	2	1		3	
	준·부사관	5	4		1	4	1
	병	7	7			7	
	군무원						
	민간인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중 병 46%, 준·부사관 30%, 장교 22%, 군무원 2% 차지, 발부율 장교 70%, 준·부사관 93%, 병 80%, 군무원 100%
- 2018년 청구율 중 병 47%, 준·부사관 33%, 장교 20% 차지, 발부율 장교 100%, 병 100%, 준·부사관 80%

20. 2018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1		1	0
구속적부심	1	1		10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기 타	3		3	0

※ 기타 :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등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7	1	6	14
	구속적부심	8	2	6	25
	구속집행정지	0	0	0	
	구속취소	1	0	1	0
	형사보상청구	0	0	0	
	기 타	3	0	3	0
2014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2		2	0
	구속집행정지	0			
	구속취소	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0			
2015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0			
	구속집행정지	0			
	구속취소	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0			
2016년	보석청구	3	1	2	33
	구속적부심	4		4	0
	구속집행정지	0			
	구속취소	1		1	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0			
2017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1	1		100
	구속집행정지	0			
	구속취소	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0			
2018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1	1		100
	구속집행정지	0			
	구속취소	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3		3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구속적부심 허가율 25%, 보석청구 허가율 14%
- 2018년도 구속적부심 허가율 100%

21. 2018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140	21	73	40	6	
원판결확인	140	21	73	40	6	
원판결 확인율	100	15	52	29	4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654	103	337	174	40	0
	원판결확인	654	103	337	174	40	0
	원판결 확인율	100	16	51	27	6	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4년	소계	98	12	54	26	6	
	원판결확인	98	12	54	26	6	
	원판결 확인율	100	12	55	27	6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5년	소계	118	23	49	37	9	
	원판결확인	118	23	49	37	9	
	원판결 확인율	100	19	42	31	8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6년	소계	162	25	85	39	13	
	원판결확인	162	25	85	39	13	
	원판결 확인율	100	15	53	24	8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7년	소계	136	22	76	32	6	
	원판결확인	136	22	76	32	6	
	원판결 확인율	100	16	56	24	4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8년	소계	140	21	73	40	6	
	원판결확인	140	21	73	40	6	
	원판결 확인율	100	15	52	29	4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22. 2018년 무죄 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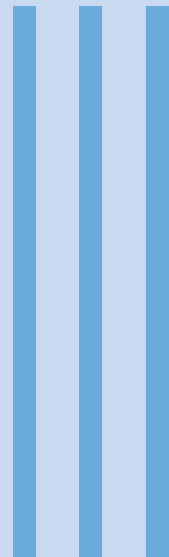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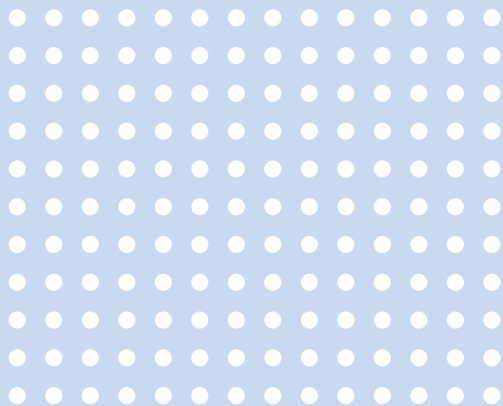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5		5			
군형법범죄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대상)						
	기타						
주요형법범죄	내란소요죄						
	뇌물예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1		1			
	절도강도의죄						
	사기횡령배임죄						
풍속에관한죄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특가법위반(도주)						
상법범죄	형법위반	1		1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성매매특별법위반						
폭력범죄	상해폭행의죄	2		2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1		1			

23.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 명	결 과
기동사 2018조1	일병	절도	벌금 50,000원
전투사 2018조1	9급	재물손괴	과료 10,000원
유도탄사 2018조1	상병	절도	벌금 100,000원
전투사 2018조2	상병	절도	벌금 50,000원
전투사 2018조3	상병	도박	벌금 100,000원
전투사 2018조4	일병	모욕	벌금 100,000원
기동사 2018조2	일병	사기	벌금 50,000원
전투사 2018조5	하사	절도	벌금 100,000원
전투사 2018조6	하사	절도	벌금 100,000원
전투사 2018조7	하사	절도	벌금 100,000원
기동사 2018조3	일병	절도미수	벌금 50,000원
전투사 2018조8	대위(진)	절도	청구기각결정
전투사 2018조9	상병	경범죄위반(음주소란등), (거짓신고)	벌금 200,000원
유도탄사 2018조2	상사	재물손괴	벌금 200,000원
작사 2018조1	하사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 200,000원
전투사 2018조10	상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벌금 150,000원
작사 2018조2	하사	경범죄위반(음주소란등)	벌금 50,000원
기동사 2018조4	일병	절도	선고유예
전투사 2018조11	하사	절도	벌금 100,000원



2018년
주요 판례





2018년 주요 판례

□ 고등군사법원

○ 2017노2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18. 1. 16.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상근))은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안내를 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벌금 10,000,000원)

항소심은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의 결정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군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고, 양형부당의 판단은 생략한 채, 다시 판결하여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다수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은 A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정해진 일당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지휘관과 부대 간부들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에 입대한 이후 무기관리병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군 복무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부친도 피고인에 대한 교육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함.

○ 2017노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8. 1. 18.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상병)은 ① 공범 A,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와 소외 1이 싸우는 것을 보고 공범 A, B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공범 A를 때리자 화가 나 공범 A, B, C 및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좌슬염좌 및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가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공범 A, B, C에 대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판단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공범 A,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했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무죄)

항소심은 ① 피해자는 공범들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최초 신○○와 김○○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목격자 김○○은 피고인들이 공범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하였던 이○○은 공범 A의 일행의 숫자에 대하여 “5~6명 정도”라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람은 “그 일행들 3~4명”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을 제외한 공범 A의 나머지 일행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오히려 싸움을 말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⑤ 피고인들은 최초 수사 기관에서부터 당시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

○ 2017노351 군무이탈 [2018. 1. 24.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은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자로 2017. 7. 29. 1박 2일 외박 허락을 받고, 2017. 7. 30. 24:00까지 소속대로 복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PC방에 머물다가 2017. 7. 31. 00:17경 헌병대에 자수함.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7. 31. 00:02경 중대장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소속대 간부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을 데리러 온 간부와 함께 00:17경 부대에 복귀 하였으므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저히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 군무이탈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무죄)

항소심은 ① 피고인의 중대장이 2017. 7. 30. 19:35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어디에 있다고 물었고, 피고인은 차비가 없어서 부대에 갈 수 없다고 답한 점, ② 중대장이 다시 23:18경 어디냐고 물으며 피고인을 데리러 간다고 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은 23:53경 군생활이 너무 하기 싫다는 취지로 답한 점, ③ 그러자 중대장은 "진짜 걱정하지 말고 아무 탈 없이 복귀만하면 내가 다 처리했으니 빨리 전역할 수 있게 도와줄게", "밥 먹었나"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를 보고 피고인은 PC방 계산대로 가서 PC방 주소를 묻고, 2017. 7. 31. 00:02경 중대장에게 그 주소를 보낸 점, ④ 근처에서 피고인을 찾고 있던 소속부대 군수보급관은 연락을 받고 00:08경 위 PC방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00:17경 부대에 복귀한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중대장이 밥은 먹었다고 걱정하면서 주소를 알려주면 데리러 갈 테니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하여 중대장에게 PC방 주소를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당시 법정에서 PC방 계산대에 가서 주소를 알아오는데 약 5분 정도는 걸린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판결함.

○ 2017노320 가. 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나. 모욕 다. 폭행 [2018. 2. 1.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은 피해자(하사, 여, 22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로 다가가 전투화발로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강제로 추행하는 등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하고, 중대 간부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너 하비다(하체비만)'라고 말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모욕을 하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소위, 22세)에게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관절부위를 약 7초간 세게 눌러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 내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양형이 정상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징역 10월, 일부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무죄)

항소심은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나, 2016. 10. 하순경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온 군인인 피해자(하사, 여, 22세)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고인의 어깨부분이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 판단을 함. 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했던 상황은 피고인이 중대 간부 회식이 끝난 직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밖으로 나오는 중대원들을 대상으로 어깨동무를 했던 것으로, 특별히 피해자에게만 다가가서 은밀히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접촉한 신체부위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였는데, 피해자는 "그 때 당시에는 하자마자 제가 엉덩이를 뒤로 빼서 피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접촉의 시간은 매우 짧은 순간이었던 점, ③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한 바 없고, 이후 제2차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부분을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느낌이 수치스러웠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러웠다."라고 진술한 다른 피해사실과는 달리 그 수치스러움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표현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2017노213 군인등강제추행 [2018. 2. 13.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위(진))이 피해자(병장)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하의속옷 뒤쪽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손가락으로 엉덩이 골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15회에 걸쳐 5명의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①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③ 피해자들 진술을 신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이 위법함과 동시에 양형이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군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가지 공소사실을 추행행위로 볼 수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일부 군인등강제추행죄 유죄)**

항소심은 ① 피고인의 병사들에 대한 신체접촉행위에 대하여 병사들은 직접적으로 거부의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몸을 피하거나 밀치는 등 어느 정도 싫은 티를 내었던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성적인 신체접촉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친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장난을 한다는 생각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일부러 닿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귀여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허벅지를 문지른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군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있는데 이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하고, 따라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다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2017노2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 2. 21.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은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 타인 명의의 3장의 체크카드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보관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벌금 7,000,000원, 보호관찰법특례규정 적용)**

항소심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법 적용대상자가 되었으므로, 당심으로서 보호관찰법이 정한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법상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없어 원심판결에는 파기사유가 발생하였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다시 판결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 2017노289 사기 [2018. 2. 26.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사)은 소외 A로부터 투자금을 구해오면 월 1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는 곳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수익률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빚을 내어 소외 A에게 투자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투자금과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66,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무죄 판단을 하였으나, 군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6,6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공소장변경-무죄)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송금 받은 후 각 송금 받은 당일에 바로 소외 A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로부터 소외 A에게 투자를 하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서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외 A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소외 A로부터 그 중 일부를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④ 비록 그 이후 피고인이 소외 A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6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 2017노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8. 3. 8.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은 피해자 A(남, 17세)이 빈 소주병으로 소외 1의 입 부분을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소외 1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소외 2, 소외 3, 소외 4 와 함께 피해자 A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공동하여 폭행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군검사 항소기각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측 일행과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측 일행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폭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측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④ 피해자 역시 엎드린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2017노3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2018. 3. 9.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소외 1이 심의를 받지 않은 '바다의 여신'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물 화면에 거북이가 나오면 3점, 상어는 10점, 고래는 50점, 용은 100점을 각 득점하면 1점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영업을 하는 곳의 종업원으로 시급 10,000원을 받고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소외 1의 환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몰랐으므로 정범의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고,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양형이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피고인 항소기각**

항소심은 ① 소외 2는 손님들의 게임기를 확인하고 가지고 있던 수첩에 자리번호, 점수, 그에 따른 환전 금액을 적어 놓았는데, 피고인은 소외 2가 자리를 비우면 점수를 외워두었다가 소외 2에게 말해주거나 직접 소외 2의 수첩에 점수를 적었던 사실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손님들을 위해 5만원권 지폐를 1만원권 지폐로 교환해 주기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③ 손님들은 몇 만원씩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④ 소외 1은 게임기의 점수를 지우기 위해서 게임기를 열고 기계를 초기화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⑤ 환전행위는 소외 1이나 소외 2가 하였는데, 이들은 환전한 금원을 손님들 자리까지 가져다주기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⑥ 손님들은 소외 2나 피고인에게 환전에 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⑦ 이 사건 게임장은 'ㄷ'자 모양으로 게임기가 40대 놓여 있고, 가운데에 테이블이 있는 구조이며 밝지 않은 조명이었으나, 게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볼 수 있었던 사실이 있는 점, ⑧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7-8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청소나 담배심부름 등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 2017노309 균용물손괴 [2018. 3. 21.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원사)은 ① 장비정비체계상에는 이미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장비지시서완결 처리 및 수리부속·공구재산대장 삭제 처리한 차량 수리부속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받을 것에 부담을 느껴 소속대 병사들과 철재류는 황산에 담가 부식시키고, 전선류는 절단기로 자르고, 플라스틱류는 오함마로 내려치는 등 시가 합계 6,762,475원인 균용물인 수리부속 79개 품목 213점을 손괴하였고, ② 통신쉘터박스에 균용물인 디스크 6점을 넣고 나사못으로 출입구를 봉쇄한 것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2,617,616원인 균용물인 수리부속 18개 품목 66점을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고, ③ 차량 적재함에 균용물인 공기식 소음기 1점을 신고 적재함을 비닐 커버로 덮어놓게 하여 시가 합계 1,978,542원 상당의 균용물인 수리부속 10개 품목 12점을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단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휘검열을 피하기 위하여 잉여 수리부속들을 기존 보관창고와 불과 5미터 떨어진 수송부 차고지로 잠시 장소적 이동을 시켜놓은 행위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은닉에 의한 균용물손괴 부분 무죄)**

항소심은 손괴로 인한 균용물손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은닉에 의한 균용물손괴에 관하여는 ① 은닉한 균용물이 장비정보체계상 이미 수리에 사용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 정상적인 반납처리가 어려웠던 점, ② 검열만 피하려고 일단 숨겨놓은 것이고, 이 사건 은닉물품은 검열이 끝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 ③ 은닉물품의 보관장소가 반드시 본래 소재하고 있던 소속대 창고내여야 한다는 사정은 그 증거가 없다는 점, ④ 소속대 내 어느 장소로도 이동이 용이한 통상품인 이 사건 은닉물품을 피고인이 창고에서 꺼내어 차고지 등으로 옮긴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은닉물품들을 은닉하여 그 발견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소속대 차량정비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정비 계획에 차질이 생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 2017노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 [2018. 3. 29.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찜질방에 있는 영화관에서 피고인의 우측 옆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여, 17세)의 왼쪽 가슴을 빨고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고, 쿡쿡 찔렀으며, 피해자의 왼손을 끌어당겨 손가락지를 끼는 등 약 20분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추행 당시 또는 그 이후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로서 일반적인 행동이라 보기 어렵고, ② 피해자 진술은 여러 부분이 반복되어 믿을 수 없다며 주장하고, 동시에 양형이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피고인 항소기각

항소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대체로 일관되는 점, ②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본 것이 아니라 추행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껴 달리 반항하지 못하고 남자친구를 깨우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반응으로 특이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을 겪은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행동이 당시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로서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추행행위에 대하여 사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사과를 유도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들통 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술에 취하여 실수한 것이라고 둘러대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 2017노27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8. 3. 29.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은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주행하다 우측 차선으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차주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A(남, 53세), 피해자 B(남, 2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며, 양형이 정상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무죄)

항소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바,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태도, 진술의 낱말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관된 변소를 선뜻 거짓으로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에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있는데, 이것은 형사가 시켜서 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바 없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역시도 병원에서 진단서만 받았을 뿐 별도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오자 미안하다는 표시로 자신의 차량 비상등을 켜기까지 했는데, 이는 사고 발생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의 범의를 가진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2017노429 업무상과실치상 [2018. 4. 19.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위)은 소속 대대 가설소대장으로서 통신선로 신설, 보수 등을 업무로 하고 있는 자로 당시 작업 간에는 사다리를 이용한 공중 선로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었고, 지붕이 하중으로 인해 무너지기 쉬운 슬레이트로, 노후하기까지 하여 그 위에 올라갈 경우 붕괴로 인한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미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도 않고, 작업 투입 전 안전모 및 방탄모 등 안전장구류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선로 단선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피해자가 지붕 위에 올라가 선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다가 지붕이 붕괴되어 차량주차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기간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차량주차고 위로 올라갈 것을 예견하거나, 추락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그 상해의 결과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무죄)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각 주의규정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피해자가 이 사건 지붕위로 올라가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설령 군에서는 가설작업 간 안전모를 대신하여 항시 방탄모 착용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설병들에게 방탄모를 미착용하게 한 행위는 안전모를 대신하여 낙하물질 등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범위내에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뿐, 처음부터 용사들의 작업내용에 없었던 가공작업 간 추락사고를 염려하여 안전장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2017노362 군인등강제추행 [2018. 4. 19.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은 피해자(여, 31세)와 소외 1과 함께 노래방에서 유희를 즐기던 중, 소외 1이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손을 잡고 기습적으로 1회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희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피고인 항소기각

항소심은 ① 소외 1이 원심법정에서 추행 당시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손을 잡더니 머리 위로 양팔을 올려 반주에 맞추어 좌우로 드는 장면을 본 사실이 있으며, 자신이 화장실에 갈 때의 장면은 피해자가 앉아서 노래를 부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있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해자가 귀가하고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소외 1이 화장실에 간 사이 왼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손을 잡고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여 불쾌해 소외 1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노래방을 나와 숙소로 복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이 사건 당일 있었던 행적에 대한 진술에 불과한 바, 사람의 기억의 한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 ③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희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희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2017노420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2018. 4. 26.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병)은 훈련병일 때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피고인의 관물대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접힌 상태 길이 51cm, 총 길이 71cm 가량)의 외피를 벗긴 후 야전삽을 펼치고 손잡이를 손으로 잡은 다음, 일어서 상태에서 야전삽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세계 1회 친 후, 이를 말리는 소외 1을 무시한 채 같은 방법으로 모포를 덮은 채 누워서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를 3회 더 내리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인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만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심은 ① 피고인은 최초 헌병조사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죽인다는 표현은 정말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고, 죽일 의도는 없었다.”,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 반복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라는 점, ②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야전삽은 총기나 칼과는 달리 즉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는 아니라는 점, ③ 최초 이마를 가격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모포를 덮은 채 방어하면서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재차 공격한 부위는 그 때마다 달라져서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부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나 의도가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점, ⑤ 당시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2017노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8. 5. 3.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하사)은 봉고차를 운전하면서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도로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A(45세)의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전면부분을 위 봉고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A에게 약 12주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중앙선 침범”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으나, 군검사는 노면이 광범위하게 결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속 41.7km로 운행한 과실이 있고, 사고지점이 경사로나 굽은 도로가 아닌 데도 차량이 갑작스럽게 미끄러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운전 조작을 한 과실이 있음에도 공소기각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 항소심의 판단 ⇨ 군검사 항소기각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노면에 내린 눈으로 결빙되었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이하로 줄여 운행하였다면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광범위하게 노면이 얼어붙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온 것일 뿐 눈이 20mm 이상 쌓여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며, 따라서 군검사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에게 시속 30km 이하로 감속운행하였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선행차량과 2~3초 간격으로 주행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는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은 시속 48km 이하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인 운전조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중앙선 침범은 제동 구간에서의 부분적인 도로 결빙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이유로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2017노37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8. 5. 3.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은 중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중대장으로 중대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 범인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전날 불침번 근무자였던 소외 1, 2, 3, 4를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하여 “옷 벗어”, “팬티까지 다 벗어” 등의 취지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탈의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팬티를 포함한 모든 활동복을 벗고 나체 상태로 조사를 받게 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팬티를 벗도록 지시한 행위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가사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군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피고인 및 군검사 항소기각

항소심은 ① 피고인의 행위는 병영생활 과정에서의 병영생활지도 또는 징계조사 명목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중대장의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원칙적으로 신체의 수색은 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지만 피해자들의 팬티까지 모두 벗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2017노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18. 5. 24.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72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도로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3년)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할 당시 피해자는 집 앞의 경계석 아래 도로 가장자리에서 있었는데, 위와 같이 별도의 시설물 없이 흰색 실선만으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는 곳에 사람이 서 있는 경우라면 그 앞을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사람이 차도로 들어올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해가 지기 전으로 날씨도 맑았으므로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로서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21m 떨어진 지점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발견한 것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처음 서있던 곳에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인 중앙선 부근까지는 약 6.5m에 달하며, 피해자는 72세의 고령으로 양팔을 위 아래로 흔들며 도로에 들어온 것으로 충격지점에 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11m 떨어진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에는 피해자가 막 도로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거리를 중앙선 방향으로 진행한 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피해자를 보고 바로 속도를 줄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로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순간 소외 1이 놀라서 다급하게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군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2017노436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2018. 5. 24.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은 피해자 A, B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총 2,2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C, D에게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휴대폰,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총 6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2,582회에 걸쳐 1,027,723,119원을 입금하여 도박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를 하면서 4년 2개월 동안 총 2,582회에 걸쳐 약 10억 2,000만 원에 상응하는 액수의 도박을 하였고, 나아가 위 도박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자신과 인적 신뢰 관계가 있는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각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횡수,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② 피고인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도박에 빠져 있음으로써 '국가방위와 국민보호'라는 군인으로서의 기본사명과 본분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군 전투력 강화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군 내부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와 화합까지도 저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군검사의 항소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2017노40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8. 6. 8.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소위)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뒤 휴대폰 1대당 50만 원, 총 150만 원을 받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에 넘겨준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3대를 대리점 직원에게 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피고인 항소기각

항소심은 ①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당시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를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볼 때, 그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3대가 타인에게 사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제출한 반성문에는 자신의 범행 동기나 이유 및 경위까지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점, ③ 피고인이 당시 법정에서 위 반성문을 부인하면서 선처를 바라면서 작성하였고, 작성은 아버지의 글씨로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반성문은 자필이 아니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있고, 작성 명의를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위 반성문을 제출하기 이전에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휴대전화 모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 직원에게 그대로 맡겨 두었고,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위와 같이 방치할 경우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예상됨에도 이를 즉시 해지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추인할 수 있는 외부적 사정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2018노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추행 [2018. 6. 15.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은 ① 본인 소유의 핸드폰으로 남탕 탈의실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를 4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 ② 상병 소외 1과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 ③ 상병 소외 2와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 ④ 성명을 알 수 없는 병사와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범죄사실 ①, ④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균형법 제92조의6은 위헌조항이고, 위계나 위력 등을 이용하였을 때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공범들의 각 진술은 미란다원칙,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을 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군검사는 원심이 임의제출 받은 핸드폰에서 추행의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수집한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영장주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성관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기록을 캡처한 사진을 보강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도 함께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피고인 및 군검사 항소기각

항소심은 ① 반드시 균형법상 추행죄의 행위태양이 위계나 위력을 수반하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한다거나, 영내에서 또는 근무시간 내에 행해지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②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각 조서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임의로 진술하였다면, 그들의 법정 증언은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추행죄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은 정보 저장매체인 핸드폰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저장된 특정 범위의 전자정보로 봄이 상당하고, 위 동영상 파일은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전자정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임의제출 의사 확인이나 영장의 집행이 없는 한 곧바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④ 범죄사실 ④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성관계의 상대방과 대화내용을 담은 메시지는 '탈게요' 밖에 없는데, 이것은 피고인이 상대방과 만났을 것이라는 추정일 뿐, 상대방이 군인의 신분을 가진 사실 및 추행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군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2017노422 공연음란 [2018. 6. 15.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은 버스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한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목격자가 만취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성기부근에 놓고 다리를 떠는 모습을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모습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무죄)

항소심은 ① 목격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성기부근에 놓고 다리를 떨고 있는 모습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목격자 1명 외 다른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조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다면 팬티나 바지에 묻을 가능성이 있는 정액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한다거나, 피복 등을 확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목격자는 소주 1병 반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커피를 마시고 버스를 기다렸다가 첫 차를 탔다는 진술을 하는 바, 당시 목격자가 마신 술의 양, 목격자의 귀가 시간까지의 행적 등을 고려하면 목격자가 평상시 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당시 버스 안의 조명이 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세에서 피고인 바지 지퍼의 위치, 앞좌석 의자의 그림자 등을 고려하면 버스 안의 조명 빛이 피고인의 바지아래 부분까지 밝게 비추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⑤ 목격자는 피고인의 모습을 부피가 큰 카메라가 아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찍었음에도, 피고인의 전체 실루엣이 아닌 다리 부위까지만 찍었을 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 판결함.

○ 2018노23 공무상비밀누설 [2018. 6. 21.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5급)은 국방부 시설본부 감사실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며 국방부 시설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하던 자로 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소외 1과 관련된 민원이 그 민원의 대상자인 소외 1에게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②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분류되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 총 12장을 출력하여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시설공사 브로커 소외 2에게 전송하였으며, ③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분류되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문서 1장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소외 3에게 전송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범죄사실 ①과 관련하여 소외 1에게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정도의 내용만 말해준 것으로 이것은 직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양형 부당을 주장함, 군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민원접수사실 누설 부분 무죄)

항소심은 ① 이 사건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방부 시설본부 내부에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누설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처리 업무를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민원 담당자가 작성한 메모보고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에서 진행 중인 총 76건의 민원 내용이 제목 형태로 정리되어 있어 메모보고의 수신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민원에 대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그 민원과 관련된 사람이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감사 등에 대비하여 자료를 인멸,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방시설본부의 민원업무처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국방시설본부 감사실 소속으로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국방시설사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관련 업체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의 수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죄사실 ①을 무죄로 선고함.

○ 2017노43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8. 7. 5.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로서, 피고인의 차량 앞 2차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화물차가 도로 중앙분리대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피고인 항소기각

항소심은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사고현장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과 부딪치면서 그 충격으로 두 차량 모두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어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부터 피해차량의 앞에서 진행하였는데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한 후 다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러는 것 같아 피해자는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차량에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의 진술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범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 2018노34 강간(인정된 죄명 강간미수) [2018. 7. 5.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모델로 함께 들어간 피해자(여, 23세)가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를 꺼안아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팔을 잡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내고 거부의 의사를 계속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강간미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고, 목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하지 못한 것에 불구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군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1회 삽입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강간미수죄만 인정한 것에 대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징역 1년 6월)

항소심은 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판결의 이유와 그 채택증거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였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가 아닌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삽입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됨으로써 피해자가 이에 아파하면서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군검사의 사실오인의 위법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으나,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 성관계를 주장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군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군검사의 항소를 받아 들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2018노55 가. 공무상 비밀누설 나.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2018. 7. 12.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준위)은 ① 추후 불용품 등 매각 사무와 관련하여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소외 1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휴대폰 기기 값과 사용요금을 소외 1이 대신 납부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뒤, 아래 2항과 같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② 소외 1에게, 불용품 매각 계약 입찰에서 입찰조건이 입찰공고일 이전에는 실질적인 비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불용품 매각 일반경쟁계약 입찰공고일 3개월 전에 입찰참가조건을 알려주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 집행유예 2년, 추징 1,408,910원을 선고하고, 범죄사실 ②의 점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비밀누설과 수수금품 간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누설한 비밀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채택 증거 중 군사법경찰관의 동석 없이 군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및 수사권한 없는 소외 2(상사)가 참여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소외 2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군검사는 입찰참가조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000원, 추징 1,408,910원,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무죄)

항소심은 ①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는 참여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② 당시 소외 2는 송무배상서기의 직책이나 검찰수사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법무부사관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심채택 증거는 적법하며, ③ 피고인은 불용장비처리장교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소외 1과 이해관계 있는 불용품 매각 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피고인의 담당 직무에 속한다는 점, ④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 언제든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제공받아 이용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한 바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그 이익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 ⑤ 피고인이 누설한 예정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가격은 예정가격과 달리 법령상 명백히 비밀로 규정하지 않고, 감정가를 알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입찰공고에서 계약물량이 공개되는 이상 상당한 이익이 되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⑥ 입찰참가조건 중 폐기물수집·운반허가 업체라는 입찰참가자격은 이미 소외 1이 가지고 있었고 크게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고함.

○ 2018노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8. 7. 19.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병)은 서울 중구 소재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가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12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①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 위법하고 이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하였으며 ②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고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벌금 8,000,000원)

항소심은 ①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이 사건 휴대전화가 사법경찰관과 그를 보좌하는 사법경찰리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이후 수집된 동영상들은 모두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점, ② 피고인이 초범인 점, ③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촬영된 동영상으로 유발되는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의 지휘관이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함.

○ 2017노330 무단이탈 [2018. 7. 25.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위)은 특임대 비상대기 명령을 받아 지정된 장소인 제D사령부 영내를 이탈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D사령부 정문을 나가 포천시 E에 있는 F포차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지정장소를 이탈하고 약 3시간 26분 후에 돌아옴.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영내대기 명령이 적법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무죄)

항소심은 ① 군인복무기본법 제12조에는 근무시간 외 지휘관의 명령에 의한 영내대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점, ② 대테러 초동조치반은 30분 출동 대기 부대로 상시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총기 등이 완비된 상태로 출동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것일 뿐,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24시간 내내 영내에서 근무할 것까지 임무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소속부대는 2016. 11.경 이루어진 부대 개편 전에도 합참 작전계획에 근거한 대테러 초동 조치반에 속하여 비상대기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영내대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장성급 지휘관에 의하여 영내대기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그 밖에 근무'로서 '특별근무'로 이루어진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무죄 판결함.

○ 2018노163 살인미수 [2018. 8. 16.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자신의 친부의 동거녀의 아들인 피해자와 성격차이로 인해 만날 때마다 잦은 다툼이 있었고, 하루는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마주쳤으며 피해자가 말을 걸자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고 느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바로 주방에서 일본식 사시미칼, 식칼 그리고 과도 총 3개의 칼을 오른손으로 한꺼번에 움켜잡아 들고 피고인을 따라 들어온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뺏으며, 피고인이 다시 손에 쥐 칼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본 친부의 동거녀가 “경찰, 경찰!” 이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칼을 바닥에 던지고 현관문 밖으로 나갔음.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징역 2년)

항소심은 ①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았을 때 원심판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번 찌르는데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2018노88 강간(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변경된 죄명: 준강간) [2018. 9. 13.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상근))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처가 먼저 잠이 들고 이어 피해자도 안방을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안방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함으로써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함.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않아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목시적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고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징역 2년)

항소심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상적인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③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함.

○ 2018노9 명예훼손 [2018. 9. 19. 선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은 소속부대에서 휴대폰으로 C대학교 법학과 회원 약 200명으로 구성되어 회원들이 볼 수 있는 네이버밴드에 접속하여 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작년에도 A라는 학우가 학생회비를 내지 않고 회장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을 지양했으면 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함.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C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출마와 자격조건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는 게시물에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원심의 판결의 형량이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고함.

• 항소심의 판단 ⇨ 피고인 항소기각

항소심은 ① 이 사건 댓글이 작성된 경위와 그 표현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댓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성격 보다 피해자를 비방하는 목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②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함.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2018고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8. 7. 26.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대령)은 조사본부장 백○○, 수사본부장 권○○과 공모하여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사건이 대선 개입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정○○의 이○○에 대한 영장신청을 방해하고, 대선개입 진술을 확보한 선○○ 수사관을 수사선상에서 배제시키고, 민○○ 등 수사관들에게 대선개입이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이 담긴 조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여 수사관들의 수사권을 방해 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피고인은 백○○, 권○○과 공모하여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사건 수사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9.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군내·외의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헌병수사단장이 영장신청서류에 결재 후 영장신청을 막은 행위가 수사관의 수사권을 방해한 것인지 여부**

1심은 피고인이 2013. 12. 11. 당시 이○○가 퇴직을 앞두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비추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이 작성한 영장신청 서류에 서명하여 결재 하였음에도, 이○○가 "내가 다 한거냐, 장관 가만 안두겠다"는 등의 말을 한다는 첩보를 인식하고, 김○○ 장관 등의 개입이 폭로되는 것을 우려한 상부에서 조사본부장인 백○○에게 불구속수사를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전달받은 피고인이 2013. 12. 12. 조사본부 6층 수사단장 사무실에서 정○○에게 이○○를 불구속 송치하도록 지시하여 군사법경찰관인 정○○의 영장신청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백○○ 등으로부터 불구속수사의 지시를 받아 정○○에게 불구속수사 지시를 하게 된 이유가 '피고인이 이○○를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의 구속으로 인하여 사건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결국 피고인이 외형상 자신이 영장신청 결재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법경찰관인 정○○의 영장신청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불구속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 항소심은 위 부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부분 파기, 징역10월 선고, 상고심 진행 중

○ 2018고6, 7, 15 공공기록물관리예 관한법률위반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8. 9. 19.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중령)과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배○○, 참모장 이○○ 등은 구체적 직무범위를 넘어 국정운영 지원, 통수권자 보필 등을 위한 군 첩보 수집·작성 및 처리를 명목으로, 사이버첩보분석과 대북첩보계원 및 국군기무사령부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으로 하여금 인터넷상에 대통령·청와대·정부정책 등에 대한 비난 글이 많아지는 이슈나 홍보가 필요한 이슈(이하 '대응이슈')가 발생한 경우 트위터를 통하여 대통령·청와대·정부정책 등에 대한 지지 글의 비율이 인터넷상 늘어나도록 하거나 대통령·청와대·정부정책 등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글들을 인터넷상 늘어나도록 하는 등 인터넷상 여론 조작 활동(이하 '대응활동')을 수행시키기로 국군기무사령부 지휘체계에 따라 순차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관련자는 국군기무사령부에 대응이슈를 전달하였고, 사령관 배○○, 참모장 이○○ 등은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대응이슈와 국군기무사령부 자체적으로 대응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대응이슈를 피고인에게 구두로 전달하거나 언론기사, 논설, 트윗 등을 특정하여 출력물 형태 등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활동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응활동 지시를 하달 받으면 이를 이○○ 등 대북첩보계원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게 하달하였다. 위와 같이 대응활동 지시를 하달 받은 대북첩보계원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은 인터넷상에서 트윗·리트윗 등을 게시하는 등 대응활동을 하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국군기무사령부 사이버첩보분석과 대북첩보계원 이○○은 '종북, 좌익세 활동' 등에 관한 인터넷 모니터링 활동을 하던 중 ID(닉네임) 'n○○t'를 사용하는 사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게시한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사찰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민간인 사찰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 등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7. 위와 같이 인터넷상에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제기 글 등이 게시되고 있으므로 해당 ID(닉네임) 사용자를 색출하겠다는 내용의 「사이버상 우리부대 비방여론 조장 네티즌 조치 필요」문서를 사이버첩보분석과장 이○○에게 보고하였고, 이○○은 사령관 배○○의 승인을 받은 뒤 피고인에게 위 ID(닉네임) 사용자들에 대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과 이○○은 수사담당관 최○○에게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18개의 ID(닉네임)를 전달하면서, (주)○○커뮤니케이션에 요청하여 위 ID(닉네임)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 일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상관의 정당한 명령으로 인식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심은 ① 피고인의 정치관여 글 게시 등 대응활동 지시에 따라 대북첩보계원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은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으로 행세하면서 익명으로 대응활동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사이버첩보분석과장 박○○ 및 이○○ 등으로부터 하달 받은 대응이슈가 정치 또는 정부정책 홍보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익명으로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직접·간접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트윗·리트윗 등을 한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북첩보계원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게 대응활동을 지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상관의 지시에 의하여 대북첩보계원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게 대응활동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대북첩보계원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의 대응활동으로 인하여 인터넷상 일반 시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의 자유, 나아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대북첩보계원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 대한 대응활동 지시가 위법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 항소심 진행 중

□ 육군 군사법원

○ 육군본부 2018고14 군인등강제추행 [2018. 11. 21.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소장)은 2018. 1. 2.부터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여군)는 피고인을 보좌하는 실무자로 근무하며 피고인과 지시·복종관계에 있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7. 21. 16:54경 피해자가 있는 부역으로 가서 갑자기 피고인의 두 팔을 벌린 채 “안아보자”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두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어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오른 쪽 볼 부위로 가져가 2회 입맞춤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같은 날 17:19경 피해자가 있는 거실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로 손을 가져가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공소사실 1.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행위와 관련, 최초 피고인이 “안아보자.”라고 했을 때 피해자는 격려차원의 포옹은 괜찮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의 가슴 부위나 피고인의 배 부분이 서로에게 닿고, 이를 서로 느껴 피해자가 ‘이건 조금 아니 것 같다’고 생각하며 피고인을 밀쳐낸 점 및 피고인의 행정지원관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밀접한 신체접촉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격려 차원의 행위를 넘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유형력의 행사로 기습추행행위라고 판단함.

② 공소사실 1.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한 행위와 관련, 피고인의 “뽀뽀 한 번 하자.”라는 말에 피해자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아닙니다.”라는 말과 함께 얼굴을 왼쪽으로 돌리고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이 “왜?, 왜?”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바로 뽀뽀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바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③ 공소사실 2. 관련, 피고인은 거실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쳤다가, 이를 피해 부역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 왼쪽 허리에 대어 만졌는바,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기존과는 다르게 허리부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만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부분을 만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습성을 인정함.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제1야전군사령부 2018고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18. 12. 1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령)은 2016. 12. 5.부터 2017. 12. 7. ○○단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부대 행정예규에 따르면 교육생 병영생활우수 상장 수여는 학생중대장의 병영생활 평가성적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7. 3. 7.경 ○○ 단장 집무실에서 '○○(부대명)를 사랑하는 가족모임(야사모)' 회장 현○○으로부터 상장을 받을 교육생을 추천받고, 행정과장 대위 한○○에게 "기수당 200~250여명 되는데, 1명 정도는 병영생활우수로 상장을 주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지시하였고 한○○이 다시 학생대장 김○○에게 "기수당 1명 정도는 병영생활우수로 학생대장 명의의 상장을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 말해, 결국 김○○에게 현○○이 추천하는 교육생에게 병영생활우수 상장을 발급토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현○○이 요구한 교육생들이 병영생활성과 무관하게 상장을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학생대장 및 학생중대장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3. 11.경 ○○ 단장 집무실에서 탄약고에 출입하여 탄약점검을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탄약고 점검을 실시하였다는 탄약고 출입대장을 작성·비치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단장 스스로 2017. 3. 10. 11:20에 탄약고에 들어가 같은 날 11:40에 나오는 방법으로 탄약고 점검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탄약고 출입대장에 서명하는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각 서명하여, 공문서인 제1야전수송교육단 명의로 된 탄약고 출입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1.경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탄약고 출입대장을 탄약고 앞에 비치하는 등 총 34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탄약고 출입대장을 탄약고 앞에 비치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사실 인정 및 고의 유무 인정 여부

① 공소사실 1. 관련, 피고인은 2017. 3.경 집무실에서 현○○으로부터 "자신이 추천하는 교육생에 대한 상장을 발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요구를 거절한바 있고, 이후 현○○과 별도 면담 후 다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기수당 200~250여명 되는데, 1명 정도는 병영생활우수로 상장을 주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경 김○○에게 야사모에서 요구하는 상장 발급을 줄이라고 지시했고, 2017. 7.경 현○○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 것을 부하 간부들에게 지시했으며, 피고인이 야사모에게서 어떠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스스로 문제되지 않도록 병영생활우수로 인한 상장 발급과 관련하여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발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나아가 야사모에서 부적절한 상장 발급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고 일체의 상장 발급을 거부할 것을 지시한 사정에 비추면, 애초에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② 공소사실 2. 3. 관련, 육군규정 탄약규정에 따르면 지휘관 또는 군수과장이 주 1회 이상 탄약고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탄약고 출입대장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군수과장 송○○은 탄약집중점검은 주로 본인이 실시하고 피고인은 월 1회만 실시하면 된다고 보고했고, 실제 피고인은 대략 월 1회 순찰을 함. 그러나 탄약고 출입대장에는 피고인이 매주 탄약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위 출입대장은 탄약점검 실시 일자별로 실시자에 대한 기재 부분과 이를 확인하는 결재란 부분으로 구분되고, 각 부분은 독립적으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탄약점검은 반드시 피고인이 아니라도 송○○이 실시하면 족하고, 출입대장에 탄약점검 실시자를 송○○ 외에 피고인까지 기재한다고 하여 위 탄약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탄약고 출입대장에 반복적·기계적으로 서명을 해왔다면, 결국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에 무죄를 선고함.

○ 제2작전사령부 2018고44 살인, 사체유기 [2018. 8. 8.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살인]

피고인(대위)은 피해자 최○○(1세)의 아버지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사기, 폭행 등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으며,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아내가 자신을 상습상해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3. 창원시 소재 자가에서 바람을 씌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마산, 거제, 통영 지역 등을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피의사건, 이혼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지만 대안이 떠오르지 않자 '죽으려면 번개탄을 피워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도로변에 있는 상호불상 낚시용품 판매 휴게소에서 번개탄을 4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 20:40경 경남 고성군 소재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이혼소송 중인 아내는 피해자 양육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이 죽으면 어린 피해자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결국 피해자도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위 공터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을 목적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번개탄을 두고 불을 붙였다.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번개탄에 의한 유독가스로 칭얼거리며 기침을 하자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안은 다음 피해자가 유독가스를 마시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날 시간불상 경 일산화탄소 중독 및 저산소증으로 질식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2018. 2. 23. 23: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공터에서 북측 방향으로 약 430m 떨어진 농수로(너비 약 57cm, 깊이 약 112cm)에 피해자의 사체를 두고 떠나 사체를 유기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사체유기의 고의 유무

①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② 피고인은 번개탄 유독가스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약 20~30분 동안 유독가스에 노출된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는 자신이 죽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안고 승용차 밖으로 나와 위 사건 현장에서 약 330m정도 이동하였고, 전봇대가 보이자 근처 바닥에 피해자를 놓아두고 자신은 그 전봇대에 머리를 수십 회 들이박아 자살을 시도한 사실, 전봇대에 머리를 수십 회 박아도 자살에 실패하자 피고인은 목을 매어 죽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밧줄을 찾으러 인근 봉동리 마을 쪽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을로 이동하는 중에 있는 농수로(위 전봇대와 약 100m 이격)에 두었음에도, 전봇대 뒤 농수로에 두고 왔다고 착각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찾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보이자 구조되었다고 생각하고 인근 야산, 봉동리 마을 폐가, 마을 회관 등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③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농수로에 두고 떠난 행위는 인정되나, 유독가스를 흡입한 상태에서 전봇대에 머리를 수차례 들이박아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피고인이 야간에 초행길이었던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놓아 둔 곳을 착각하여 다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다는 의사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결국 살인죄만을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사체유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 제3군사령부 2017고19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인정된 죄명: 직무유기)
[2018. 6. 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령)은 제○군단사령부 검찰참모로서 사령부 및 그 예하부대에 대한 감사, 검열, 직무감찰 및 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고양시 소재 검찰참모실에서 전세금 대부 업무 담당부서장인 인사근무과장 중령 홍○○으로부터 대위 전△△가 전세대부금을 유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조사를 요청받았고, 2017. 3. 29.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육군본부 검찰실장 명의의 '전세금 대부사업 점검결과 보고(지시)' 전자공문을 접수하여 제○군단사령부 내의 전세금 대부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검찰참모로서는 대위 전△△의 전세대부금 유용 여부를 포함하여 군단 내에서 전세금 대부사업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위 전자공문에 첨부된 '전세금 대부사업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전세대부금 유용 등 전세금 대부 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대부금 회수 및 징계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위 전△△의 전세대부금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군단 내 전세금 대부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제로 하지 않고 인사근무과에서 실시한 전세현황 전수조사 결과만 확인하여 마치 전세금 대부 사업 점검결과인 것처럼 보고한 후 대위 전△△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리면서 대위 전△△의 전세대부금 유용 의혹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사실의 인정 여부

①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전자기록의 위작에는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허위의 정보는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② 사단급 이상 부대 검찰부서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전세금 대부 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한 위 육군본부 검찰실장 명의의 '전세금 대부사업 점검결과 보고(지시)'에 의하면 점검 결과를 첨부된 보고양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위 전△△가 전세대부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그 소유명의를 자신의 친형으로 명의신탁한 후 친형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대부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전세금 대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점검 결과 보고양식에 적시된 위규 유형에 명의신탁 방식의 자가 구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위규자가 없는 것으로 기입된 보고양식의 총괄현황에는 전세금 대부 사업 점검을 통해 파악하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실과는 다른 거짓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 ③ 그러므로 피고인이 대위 전△△의 전세대부금 유용을 위 점검결과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보고대상인 사실관계를 진실에 반하도록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죄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성립되지 않음

④ 다만 피고인이 전세대부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사 대상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묵인한 것은 군인의 청렴의무 위반 행위이자 군 감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공적인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검찰참모로서 검찰업무 계통으로 하달된 지시사항이 적극적으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전세금 대부 사업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인사업무 분야에서 실시된 전세현황 전수조사 결과만 확인하여 마치 전세금 대부 사업 점검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점을 고려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함.

결국 예비적 공소사실인 직무유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함.

○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 2018고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일부 공소취소) [2018. 7. 11.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은 개인적으로 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있을 뿐, 금융업에 종사한 경험이나,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내지 11.경 소속부대 등지에서, 피해자 한○○에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원금은 보장이 되고, 매월 3%의 복리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투자금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으더라도 그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비슷한) 방법 등으로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친척 동생과 함께 2014. 10. 경부터 2017. 10.경 까지 전국 각지에서 군인 및 민간인 합계 18명을 상대로 피고인 스스로 투자회사 운영자 행세를 하며 투자 명목, 대출 명목, 대여 명목 등으로 합계 20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사기죄에서 이르는 사기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르는 상습사기죄란 사기의 습벽이 있는 자가 사기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는데, ② 국방부 검찰단 작성의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과 등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특정 시점부터는 피고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 피해자들의 추궁에 떠밀려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습벽을 인정할 수 없음.

이에 사기만을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

□ 해군 군사법원

○ 해병대사령부 2017고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 의한추행) [2018. 6. 1.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원사)은 2015. 7. 13.부터 2016. 12. 13.까지 소속부대 병기/탄약담당이고, 군무원으로서 소속부대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피해자(9급, 26세)에 대하여 업무상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9. 19:00경 피해자와 돌이서 카페로 가서 음료 2잔을 주문한 후 강제로 자신이 먹던 빨대로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하고, 위 카페 바로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량 내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 10분간 주물럭거리며 놓아주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 소속부대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 뒤편으로 피해자가 지나가려 하던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 다가가 자신의 바지 위 사타구니 부분을 피해자의 바지 위 엉덩이 부위에 3초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 1심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성,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사람의 기억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소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 및 피고인과 함께 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주요한 부분에 있어 그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1회, 제2회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한 부분을 하루만에 갑자기 진술을 변경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 및 기타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전부 무죄를 선고함.

○ 해군작전사령부 2018고10 강제추행 [2018. 4. 26. 선고]

•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하사)은 2017. 6. 12. 22:3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동전노래방’에서 동행하고 있던 직별 선임 하사 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이○○(여, 21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7. 6. 13. 00: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원룸’ 승강기 안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한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 1심의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하지 못할 외부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 추행행위를 예상하고 두려움과 공포심 등의 감정을 느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도 추행행위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누구나 추행행위를 예상했다면 반드시 현장을 이탈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려움. 만약 그러한 논리가 성립된다면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결정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됨.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예상하고도 피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일부 고려사항에 해당할 뿐이고 주된 고려사항은 아니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든지 여부는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①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는 점, ② 추행행위 장소가 협소한 노래방과 엘리베이터 안이었다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남자친구의 후임이고 피해자 남자친구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더 큰 사건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여 추행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했던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해군작전사령부 2018고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8. 12. 11. 선고]

•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은 2017. 11. 18. 05:48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수대로를 시청앞사거리에서 인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운전의 포터투 화물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 1심의 판단

차량 간의 충돌 및 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이 전복될 정도의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별다른 부상을 호소한 사실은 없으나 교통사고의 특성상 사고 당시에는 긴장 및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통증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의사 역시 이러한 사례가 많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함), 이 같은 상황 하에서 행해진 사고 당시의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차량 전복사고에 비해 피해자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것은 사실이나 차트 상의 주상병란에 'Sprain and strain of cervical spine' 기재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발급 요청이 없어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의 요구가 있었다면 상해진단서(2주)가 발급되었을 사안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시점과 상해 발생시점이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거나 경추부위 등의 통증으로 인해 평소에도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였다는 등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 이외에 상해의 원인된 행위를 추단할 만한 다른 정황은 없는 점, 교통사고 발생 하루 후인 2017. 11. 19.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면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진단서 안내해 줘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서를 각서 형식으로 별도로 써야 되나요?"라고 문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후 이틀째인 2017. 11. 20.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속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합의 직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상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에 ○○의원에 내원하여 교통사고 일시·장소·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상태를 의사에게 진술하면서 경추부와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본인 부담으로 병원 진료비를 부담한 사정(의사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사실에 대한 이력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상해 발생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는 등의 중대한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함.

○ 제2해병사단 2018고4 군용물절도 [2018. 10. 12. 선고]

•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병장)은 2018. 2. 1. 15:00경 소속부대 탄약고 앞 탄약정비테이블에서 탄약정비 업무를 하던 중 위 탄약정비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군용물인 시가 3,520원 상당의 5.56mm 보통탄 10발을 피고인의 좌측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

• 1심의 판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하여 온 탄약 작업에 염증을 느끼고 일부 탄약을 숨기면 작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탄약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탄약 10개가 꽂혀있는 클립 1개를 자신의 왼쪽 주머니에 숨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 16:50경부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의도 하에 소속대 2층 공중전화 박스 위쪽에 탄약을 숨겨놓았고, 이후 2018. 2. 5. 00:58경 전화박스에 있던 탄약을 샤워장 선반 밑으로 재차 숨겨놓았다가, 같은 날 03:00경 소속대 샤워장에 던져 놓았던 탄약을 꺼내 흡연장에 있는 노래방 컨테이너 밑에 던져 놓는 등 은닉장소를 지속적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2. 1.부터 탄약이 발견된 같은 달 2. 5.까지 헌병대 조사과정 또는 간부와의 면담과정에서 충분히 탄약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탄약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3:00경부터 헌병대장과 면담을 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포병연대 본부중대 인원 에 의해 탄약 9발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좌측 건빵 주머니에 담배를 꺼내려고 하는데 우연히 자신의 주머니에 탄약 10발이 발견하였고, 이것을 소대 간부에게 갖다 주면 영창을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헌병대장의 계속된 설득에 의해 나머지 탄약 1발이 숨겨진 곳을 자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탄약 10발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인만 아는 장소에 탄약 10발을 숨김으로써 탄약의 소유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함.

□ 공군 군사법원

○ 공군 기동정찰사령부 2018고4 업무상과실치사 [2018. 9. 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하사), 피고인 B(병장)는 '17. 4. 7. 10:13경 항공기 업체호 방탄문을 폐쇄하면서 방탄문 내부와 외부인에 감시인을 각 1명씩 배치하거나 먼저 CLOSE 버튼만 눌러 방탄문을 닫아 일정 간격을 두고 방탄문이 멈추게 한 뒤, 방탄문 사이에 사람이거나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한 후 CLOSE 버튼과 OVERRIDE 버튼을 함께 누르는 방법으로 방탄문을 완전 폐쇄하여야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먼저 CLOSE 버튼을 눌러 문이 중간 정도 닫힐 무렵 CLOSE 버튼과 OVEERIDE 버튼을 함께 눌러 업체호 좌측 방탄문을 완전히 폐쇄한 업무상 과실로, 1번 업체호 방탄문 작동범위 안으로 접근하던 피해자(23세)의 머리와 흉부 등이 좌측 방탄문과 우측 방탄문 사이에 압착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 1심의 판단 및 쟁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방탄문 폐쇄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방탄문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 중인 방탄문 사이에 사람이거나 장비가 끼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같이 방탄문의 폐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여서도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며, 피고인 B가 방탄문 폐쇄절차규정을 준수하여 먼저 CLOSE 버튼만 눌러 방탄문을 닫아 방탄문이 일정 간격을 두고 멈추게 하고 나서 방탄문 사이에 사람이거나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비로소 CLOSE 버튼과 OVERRIDE 버튼을 눌러 방탄문을 완전 폐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결과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피고인들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함.

○ 공군본부 2018고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8. 10. 30.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7급) 2018. 1. 31. 19:36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쇼핑몰사이트 '위메프'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일러 배관청소서비스 업체로부터 배관청소 서비스를 받은 후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체에서 판매한 상품의 구매후기 게시판에 "보일러배관청소하랬더니 온수안나오게 고장내놓고 욕지거리나 사기꾼 여러분 이 작업판매자 완전 사기꾼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명예훼손

• 1심의 판단 및 쟁점: 위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피고인 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원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주된 동기로 하여 이 사건 구매후기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음. 벌금 50만원을 선고함.

○ 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7 준강간 [2018. 7. 2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은 '17. 10. 7. 04: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친구인 김△△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여, 26세)와 피해자의 친구인 남○○과 합석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나이트클럽에서 만취해 잠이 들자 김△△, 남○○과 함께 대구 서구에 있는 모텔 203호로 피해자를 옮기고, 피해자와 남○○은 위 203호에, 피고인과 김△△은 위 모텔 206호에 각각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203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로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준강간.

• 1심의 판단 및 쟁점: 피고인이 간음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직후 신고를 하였는데, 성관계 당시에는 무의식 상태에 있었다고 하면서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신고 시점에는 무의식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색한 점,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 등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남○○은 사건 당일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어 사건의 정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남○○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이, 자신 및 피해자가 잠을 잔 방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도 의아해하거나 놀라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피고인을 대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무죄를 선고함.

○ 공군 작전사령부 2018고1 중과실군용물손괴,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단이탈 [2018. 6. 21. 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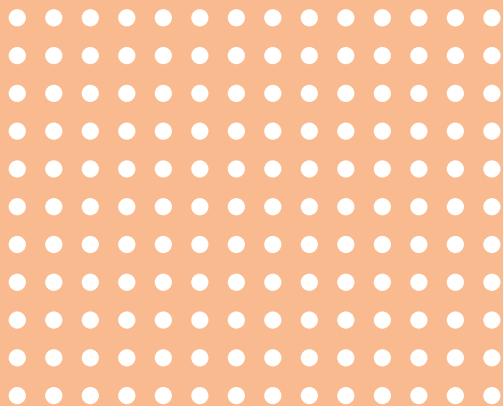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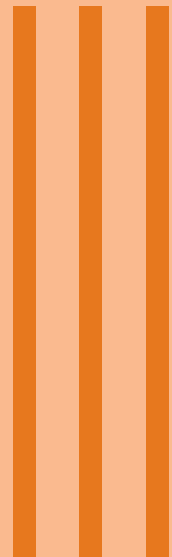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2. 18:30경부터 2018. 1. 21. 01:30경까지 4차례에 걸쳐 지휘관 전용차량을 권리자인 지휘관의 허가 없이 일시 사용하고, 2018. 1. 21. 01:30경 음주를 한 후 당직사관의 허가 없이 2호 공관을 나와 술에 취하여 운전함과 동시에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지휘관 전용차량을 약 2m 높이의 배수로에 빠뜨려 군용물인 지휘관 전용차량을 전면부 파손 등으로 수리비 18,706,840원이 들도록 손괴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① 자동차불법사용죄와 관련하여, 본 죄는 타인점유를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이 지휘관 차량을 자기점유 하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무단이탈죄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부대 내로 이탈한 것을 무단이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법원은 ① 이 사건 전용차량에 대한 지배권한, 지배의사, 사실상의 지배 및 이에 따른 점유는 지휘관에게 있고, 전용차량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말하는 일시 이탈이라 함은 시간적·장소적 개념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탈로 인하여 그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이 사건의 경우 영내 이탈이어도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보아 무단이탈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군사법 관련 법령 현황





군사법 관련 법령 현황

□ 법률

- 군사법원법(2018. 12. 18. 일부 개정)
- 군형법(2016. 5. 29. 타법개정)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2016. 1. 6. 타법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7. 12. 12. 일부개정)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2018. 12. 24. 일부개정)
-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2017. 9. 5. 타법개정)
- 군검찰사무 운영 규정(2017. 9. 5. 타법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5. 타법개정)
- 군법무관 임용법 시행령(2014. 11. 19. 타법개정)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2017. 7. 26. 타법개정)
- 군인 징계령(2017. 9. 5. 타법개정)

□ 대법원규칙

- 군사법원 사무규칙(2013. 12. 10. 전부개정)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2013. 12. 10. 일부개정)
-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2014. 9. 1. 제정)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2014. 9. 1. 개정)
-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2010. 6. 30. 제정)

□ 국방부령

-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2012. 11. 9. 일부개정)
- 군검찰 사건사무 규칙(2017. 3. 27. 일부개정)
- 군검찰 보존사무 규칙(2009. 10. 5. 제정)
- 군검찰 압수물사무 규칙(2017. 8. 1. 타법개정)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 규칙(2010. 2. 17. 제정)
-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2016. 4. 11. 타법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4. 11. 타법개정)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2016. 4. 11. 타법개정)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일부개정)
-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2016. 11. 29. 타법개정)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2018. 1. 22. 타법개정)

□ 국방부 훈령(법원)

- 군사법원 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훈령(2017. 8. 31. 개정)
-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2009. 8. 14. 제정)
-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2017. 6. 22. 일부개정)
- 군판사·검찰관·국선변호인 임명에 관한 훈령(2017. 6. 22. 일부개정)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검찰단의 조직 및 관할에 관한 훈령(2015. 6. 5. 일부개정)
- 법원정보체계 운영에 관한 훈령(2016. 3. 4. 제정)
- 군사법원 재판사무에 관한 훈령(2018. 10. 31. 제정)

□ 고등군사법원 예규

- 고등군사법원 업무분장 예규(2018. 2. 1.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군사보안업무 예규(2018. 2. 1.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재판사무 예규(2015. 10. 14.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행정사무 예규(2018. 2. 1.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예규(2012. 5. 7.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위기조치 예규(2018. 2. 1. 제정)
- 군판사의 면담 등에 관한 예규(2014. 6. 1. 제정)
- 고등군사법원 공보업무 예규(2014. 6. 1. 제정)
- 고등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2014. 7. 8. 제정)
- 고등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2014. 7. 8. 제정)
- 고등군사법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2016. 12. 2. 제정)
- 고등군사법원 동원소요 심의위원회 운영 예규(2018. 2. 1. 일부개정)

□ 육군 규정 등

- 규정: 육규181 재판사무 규정(2018. 9. 1. 부분개정)
- 예규
 - 군사법원 재판사무 예규(2017. 7. 1.)
 - 군사법원 업무분장 예규(2015. 12. 17.)
- 지침·지침서: 국선변호인 선정 및 감독에 관한 지침(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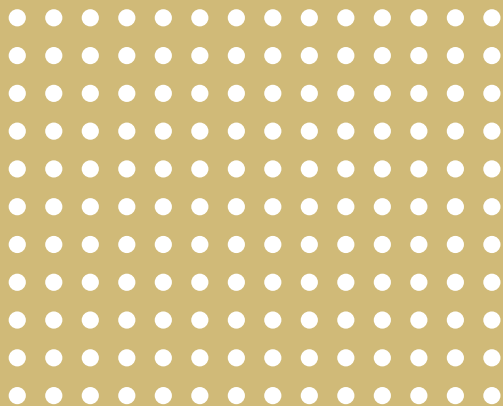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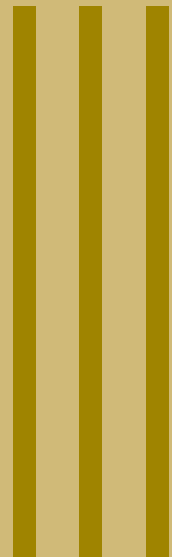
□ 해군 규정 등

- 규정: 해규15-0-1-01 해군 군사법원 규정(2018. 8. 24. 전부개정)
- 지침·지침서
 - 군사법원실무
 - 군사법원 업무처리 지시서

□ 공군 규정 등

- 규정: 공규10-02 군사법원 운영규정(2017. 7. 7. 일부개정)
- 예규
 - 재판진행절차에 관한 예규(2018. 2. 20.)
 - 국선변호업무에 관한 예규(2018. 2. 20.)
 - 군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예규(2018. 2. 20.)
 -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2018. 2. 20.)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 사건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예규(2018. 12. 11.)
 - 관할관 확인조치 업무절차에 관한 예규(2018. 2. 20.)
 - 즉결심판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2018. 2. 20.)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2018. 2. 20.)
 - 재판서 정본 등의 간인에 관한 예규(2018. 2. 20.)
 - 재판서에 기재할 성범죄 피해자 성명의 익명처리에 관한 예규(2018. 2. 20.)
 - 구속의 통지에 관한 예규(2018. 2. 20.)
 - 공군 군사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예규(2018. 2. 20.)
 - 공군 군사법원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에 관한 예규(2018. 12. 11.)
 - 공판절차에서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변호사에 관한 예규(2018. 2. 20.)

2018년 주요
개정 형사법
관계 법령





2018년 주요 개정 형사법 관계법령

법률호수	법률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포일 (시행일)
법률 제1535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범죄자의 거주지로 고지된 주소의 오류로 인해 선의의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을 경우 소관부처 및 처리부서를 명확히 하여 위하여 잘못 고지된 정보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2013헌마585)함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선고 시 취업제한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차등 부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포함함으로써 이들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2018. 1. 16. (2018. 7. 17.)
대통령령 제29539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던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벌금상당액을 정함 	2019. 2. 12. (2019. 2. 12.)
법률 제15256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법정 이득액 구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등의 입력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경우에는 그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사기죄와 같이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추가 	2017. 12. 19. (2018. 3. 20.)
법률 제15496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이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재심에서 무죄가 된 실질적 이유 고려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형사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 방지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의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2018. 3. 20. (2018. 3. 20.)

법률호수	법률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포일 (시행일)
법률 제1549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출국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도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장치 피부착 의무를 불이행한 기간도 부착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기간이므로 전자장치가 출국허가, 폐쇄병동 입원 등 적법하게 일시 분리 후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도 전자장치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추가 	2018. 3. 20. (2018. 3. 20.)
법률 제15759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에 정지 규정이 없어 '장기' 형을 선고받은 소급 부착명령 대상자의 경우 형 집행 중 부착명령의 시효(5년)가 초과될 수 있어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도입취지 및 사회방위에 배치될 우려가 있고,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은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결정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항고가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확정일을 특정할 수 없어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사건의 형·치료감호·보호감호 기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 사건의 형·치료감호·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부착명령의 집행 가능시점인 '고지일'로 함 	2018. 9. 18.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소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소년법」 제67조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7헌가7, 2018. 1. 25. 결정)취지를 반영함.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되,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2018. 9. 18. (2018. 9. 18.)
법률 제15793호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제1항)의 징역형이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간음죄임에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징역형(10년 이하)에 비하여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음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여 형의 균형을 맞춤 	2018. 10. 16. (2018. 10. 16.)
법률 제15982호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018. 12. 18. (2018. 12. 18.)

법률호수	법 른 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포일 (시행일)
<p>법률 제15792호</p>	<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대하여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 	<p>2018. 10. 16. (2018. 10. 16.)</p>
<p>법률 제15977호</p>	<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 제14조로 처벌할 수 없고 그보다 형이 낮은 음화반포죄 등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죄질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처벌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추가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 	<p>2018. 12. 18. (2018. 12. 18.)</p>
<p>법률 제15972호</p>	<p>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또한, 본 법률의 입법 계기가 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제3자에게 직접 전달된 사건에 있어서도 동 법률을 적용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시 우리 나라의 부패지수 상승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이 우려에 따라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p>2018. 12. 18. (2018. 12. 18.)</p>

법률호수	법률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포일 (시행일)
<p>법률 제15976호</p>	<p>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유출하거나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는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그러한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로 대응해야 함에 따라 「특허법」상의 특허권 전용실시권 침해 행위,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 행위 및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행위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 부여 	<p>2018. 12. 18. (2019. 3. 19.)</p>
<p>법률 제15981호</p>	<p>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기 위하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법정형을 치사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효성 제고 	<p>2018. 12. 18. (2018. 12. 18.)</p>
<p>법률 제15983호</p>	<p>군사법원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 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 •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등이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피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 •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 창설됨에 따라,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 개정 	<p>2018. 12. 18. (2018. 12. 18.) *별표 2019. 1. 1.</p>
<p>법률 제16108호</p>	<p>조세범 처벌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별인 과태료와 몰취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p>2018. 12. 31. (2019. 1. 1.)</p>

2018 군사법원 연감

발행일 2019년 4월 15일

발행처 고등군사법원 / 육·해·공군 군사법원

인 쇄 국군인쇄창 재경지원대 M190440324

병영생활고충,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 1303(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인트라넷, 인터넷, 모바일 신고/상담시 검색창에서 “국방헬프콜” 입력】

국군인쇄창 홈페이지 www.mnd.mil/user/aip 전화번호 일반 042) 553-4504~8 군 910-4504~8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